

DDA 농업 모델리티 협상안의 평가와 대응 방향

임 송 수	연구위원
김 상 현	전문연구원
임 소 영	연구원

연구 담당

임 송 수	연 구 위 원	연구총괄, 2~5장
김 상 현	전문연구원	1장, 2장, 3장, 4장
임 소 영	연 구 원	2장, 4장, 자료정리

머 리 말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 개발라운드(DDA)는 2004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목표를 정하였으나 원래의 시한을 지키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합의 시한을 거듭 연기하면서 모델리티를 도출하려 하였으나 결국 2006년 7월에 WTO 라미(Lamy) 사무총장이 DDA 협상 중단을 선언하였다.

협상에서 확정된 모델리티는 WTO 회원국들이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토대가 되고, 회원국들은 이행계획서에 따라 시장을 개방하고 보조금을 감축하므로 사실상 국내 농정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델리티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우리의 관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 전략과 타결안이 가져올 영향, 특히 타결안의 국내 이행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DDA 농업협상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타결안을 전망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을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협상이 끼칠 영향과 결과를 전망하며, 분야별 협상 전략과 국내 농정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정책 집행자들과 협상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2006.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2001년 DDA 협상이 출범한 이래 모델리티 협상은 진전과 교착 상태를 거듭해 왔다. 농업협상의 3대 분야 가운데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분야는 회원국 사이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커 DDA 협상을 지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DDA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내보조 감축, EU의 관세율 감축, 개도국의 시장접근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접근 분야에서 주된 쟁점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한 규율이다. 먼저, 민감품목의 후보군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량(TRQ)을 산출한 결과 EU·G10 공식이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와 수입량 관계를 명시한 무역이론에 맞춰, 소비량보다 수입량을 TRQ 공식에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에게 주어진 특별품목은 민감품목보다 높은 수준의 신축성이 부여되어 있어 급격한 시장 개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편이므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무역 왜곡 보조의 감축률과 새로운 블루박스에 대한 규율이 관심 사항이다. 큰 폭의 AMS 감축과 품목별 AMS 상한 설정은 우리나라 농정의 신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시장접근 분야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다양한 협상안(미국, EU, G20 제안들)을 평가하고 영향을 계측한 결과 네 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1) 미국 제안보다 G20 제안이나 EU 제안이 우리나라에 유리하다.
- 2) 민감품목을 활용하면 고관세 품목을 보호하는데 유용하지만, 민감품목에도 관세 상한이 설정될 경우에는 그 효과가 감소한다. 또한 특별품목의 수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민감품목은 그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 3) 관세 상한 150%의 적용은 큰 폭의 관세 감축 결과를 가져오지만, 관

세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품목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 상한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

- 4) 선진국 가정 아래 관세 감축률은 최대 84%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보조 분야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1) 무역 왜곡보조 총액(OTDS)의 감축 계획은 실제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이에 따라 AMS, 최소 허용보조, 블루박스 등 개별 보조의 감축이 중요하다.
- 2) 선진국 기준에 따른 감축 결과는 개도국 기준의 값에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보조 측면에서도 개도국 지위 유지가 중요하다.

현재까지의 협상 동향을 바탕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 협상 결과를 예측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최종 평균 관세율은 개도국 가정 아래 35%(관세 감축률 44%), 선진국 가정 아래 17%(관세 감축률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보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개도국 가정 아래 평균적으로 AMS는 1조 25억 원, 최소 허용보조 2조 9,518억 원, 블루박스 8,623억 원, 무역 왜곡보조 총액(OTDS) 4조 8,166억 원이다. 선진국 가정 아래 AMS의 평균은 7,590억 원, 최소 허용보조의 평균은 1조 1,180억 원, 블루박스는 8,670억 원, OTDS는 2조 7,420억 원이다.

시장접근 분야 협상에서 우선순위(개도국 지위 전제)는 충분한 수의 특별품목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또한 관세 상한의 배제가 중요하다. 관세 상한을 피할 수 없다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한 상한 면제, 관세 상한의 상향 조정 등 차선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내보조 분야 협상에서는 OTDS 감축을 경계해야 한다. OTDS가 구속력을 가지면 개별 보조 감축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개도국 가정 아래에서는 최소 허용보조가 OTDS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따라서 최소 허용보조의 충분한 수준 확보에 협상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행계획서(C/S)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은 제안에 따라서 민감품목의 수입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고추를 민감품목으로 선정해 미국 제안을 적용하면, 공식에 따라 양허한 TRQ가 일반 품목 가정 아래 수입량보다 오히려 큰 결과가 나온다. EU와 G20 제안 아래에서는 그 반대다. 따라서 어떤 제안이 모델리티에 반영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민감품목 선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DDA 농업협상은 국내 농정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면, AMS 감축은 쌀 직불제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AMS가 감축되면 허용된 한도 내에서 직불제를 운용하기 위해 목표가격을 변동시키는 등 제약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여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진 것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1)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을 선정하려면 품목 간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품목 안에서 세번별 우선순위도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우선순위 선정에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 2) 더욱 정확한 협상안의 계량 평가를 위해 품목별 수입수요 탄성치, 교차탄성치 등의 정보가 갖춰져야 한다.
- 3) 농정개혁 방향에 관한 선명한 제시가 필요하다. 논의 동향을 감안할 때, 큰 폭의 보조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장기 농정개혁 방향의 설정과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돕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 내용과 방법 2

제2장 모델리티 협상 동향과 쟁점 분석

- 1. 모델리티 협상 동향 3
- 2. 분야별 협상 쟁점 분석 5
- 3. 협상 중단에의 원인과 시사점 41

제3장 시나리오 분석과 시뮬레이션

- 1. 시장접근 분야 49
- 2. 국내보조 분야 72

제4장 모델리티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 1. 모델리티 협상 전망 83
- 2. 모델리티 협상 전략 87
- 3.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89
- 4. 국내 농정 대응 방향 92

제5장 요약 및 결론

- 1. 모델리티 협상 안의 평가와 분석 97
- 2. 모델리티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98
- 3. 연구 과제 99

부록 1 민감품목 대우에 관한 방법론 101

부록 2 DDA 농업협상 관련 용어 정의 107

Abstract	112
표·그림 차례	114
참고 문헌	118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무역을 통한 성장과 개발을 목표로 도하 개발라운드(DDA)가 출범하였다. DDA의 일환으로 농업협상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에 관한 모델리티(modality: 세부 원칙) 설정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2004년 8월에 모델리티보다 낮은 단계인 기본 골격(framework)에 합의하였다.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는 농산물 수출보조 철폐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6년 4월로 모델리티 합의 시한이 연기된 가운데 6월에는 농업협상회의 의장의 모델리티 초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관세와 보조 감축에 관한 회원국들의 견해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 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7월 말에 WTO 라미(Lamy) 사무총장은 DDA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모델리티는 관세와 보조 감축방식 등을 제시하는 지침과 원칙이다. 모델리티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행계획서(C/S)를 작성하고, 회원국들에 의해 검증된 C/S에 따라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모델리티는 사실상 국내 농정개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DDA 협상 재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각국은 자국과 다른 회원국들의 협상 제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양보안을 준비하고 있다. 협상을 타결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서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준비가

2 서론

필요하다. 모델리티 협상에서 우리의 관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 전략, 타결안에 근거한 효율적인 국내 이행대책 등이다.

이를 위해 협상 제안의 올바른 이해와 면밀한 해석, 기술적 쟁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DDA 농업협상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타결안을 전망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을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협상 전망을 제시하며, 분야별 협상 전략과 국내 농정의 대응 방향을 제안하려고 한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6년 6월에 WTO 농업협상회의 팔코너(Falconer) 의장이 제시한 모델리티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쟁점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불확실한 협상 의제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급 영향을 예측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협상 전망과 전략을 도출하고, C/S 작성 방향과 국내 농정의 조정 방향을 제안한다.

제2장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DDA 농업협상의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DDA 협상 중단의 원인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3장은 시장접근 분야와 국내보조 분야에서 주요국의 협상 제안이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와 영향을 시나리오 분석과 시뮬레이션 계측을 통해 밝힌다.

제4장은 협상 일정과 타결 방향을 전망하고, 협상 전략과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 국내 대응책은 C/S 작성 방향과 직접지불제 조정 방향 등을 포함한다. 제5장은 요약과 결론이다.

1. 모델리티 협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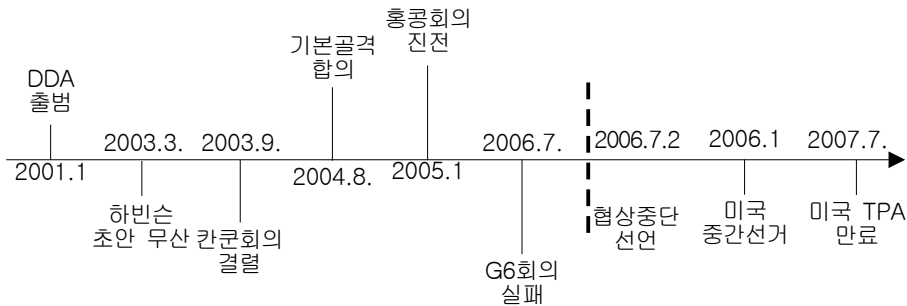
UR 협상 결과를 토대로 지속된 농정개혁을 추진하려고 2001년 11월 DDA 협상이 출범하였다<그림 2-1>. 2003년 3월 하빈슨(Harbinson) 농업 협상 의장은 완전한 형태의 모델리티를 확정하려 하였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다.

2003년 9월에 열린 칸쿤(Cancun) 각료회의는 모델리티보다 낮은 단계인 기본 골격(framework)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2004년 초 WTO는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해 2004년 7월까지 기본 골격 타결을 목표로 밀도 있는 협상을 진행시켰다. 그 결과 2004년 8월 1일에 WTO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는 기본 골격에 합의함으로써 모델리티의 접근방식과 원칙을 제시할 수 있었다.

2005년 9월 후에 WTO는 사무총장에 라미(Lamy), 농업협상회의 의장에 팔코너(Falconer)를 새로 임명하면서 협상 진용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쟁점 사항을 해결하려고 WTO가 위치한 제네바(Geneva)에서 수시로 협상을 소집함으로써 회원국 간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4 모델리티 협상 동향과 쟁점 분석

그림 2-1. DDA 농업협상의 흐름



그러나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제6차 WTO 각료회의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놓지 못하였다. 미국, EU, G20(주요 수출 개도국 그룹) 등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무관세와 무쿼터 수입을 허용하고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06년 4월까지 농업과 비농산물(NAMA) 분야의 모델리티를 확정하며, 2006년 7월까지 이행 계획서(C/S)를 제출하는 일정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협상이 지연되면서 2006년 4월로 정한 모델리티 합의 시한은 다시 연기되었다. 6월 말에는 팔코너 의장은 모델리티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7월 24일 주요 6개국(G6: 미국, EU, 인도, 브라질, 호주, 일본)은 마라톤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끝내 쟁점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였다.¹ 이에 라미 사무총장은 무기한 DDA 협상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이로써 2006년 10월 말 현재 DDA 협상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한 채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¹ 모두 74쪽으로 구성된 의장 초안은 쟁점별 회원국 간 견해 차이를 비교적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합의되지 못한 사항으로 표기된 팔호가 738개에 달해, 모델리티 타결에 회의적인 의견도 많았다(임송수 2006).

2. 분야별 협상 쟁점 분석

2.1. 시장접근 분야

시장접근 분야의 주요 쟁점은 관세 감축 구간과 감축률,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 특별품목의 수와 대우, 특별 수입구제조치(SSM), 관세 상한 등이다. 시장접근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쟁점별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협상 타결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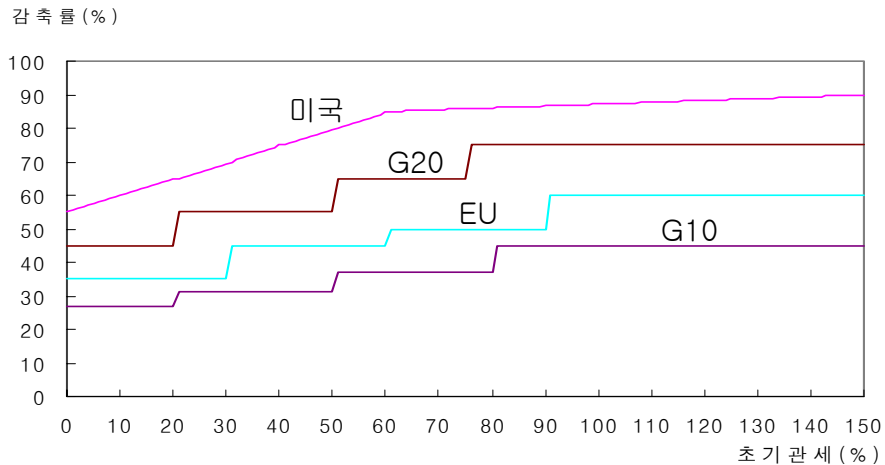
2.1.1. 주요 협상 쟁점

가. 관세 감축 구간과 감축률

관세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허관세율은, 그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관세율이 높을수록 더 크게 감축한다. 주요국이 제안한 감축 구간과 구간별 감축률을 비교하면 <그림 2-2, 2-3>과 같다.

6 모델리티 협상 동향과 쟁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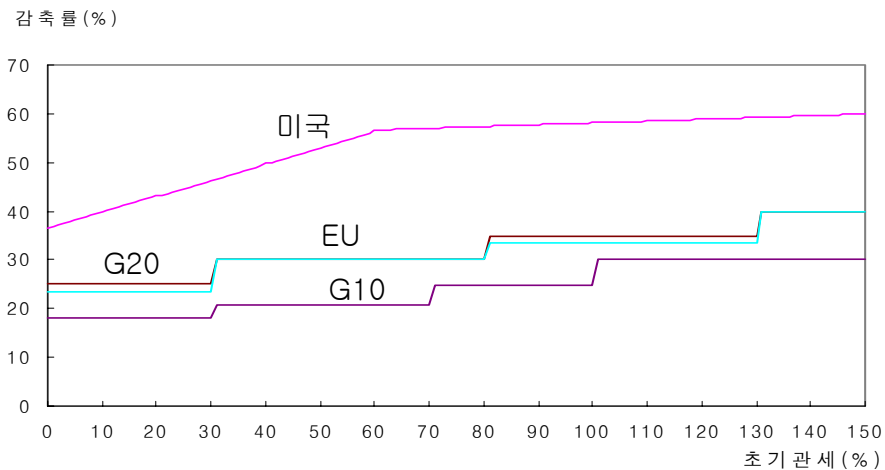
그림 2-2. 구간별 관세 감축 제안: 선진국 적용



주: EU와 G10의 감축률은 평균을 적용함.

자료: USTR(2005), ICTSD(2005a; 2005b; 2005c)

그림 2-3. 구간별 관세 감축 제안: 개도국 적용



주: 미국은 개도국의 감축률에 관해 제안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진국 감축률의 2/3를 가정함.

자료: USTR(2005), ICTSD(2005a; 2005b; 2005c)

나.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에는 일반 품목의 관세 감축률(이제부터 ‘일반 감축률’로 부름)보다 낮은 감축률(이제부터 ‘민감 감축률’로 부름)이 적용된다. 민감품목에는 일반 품목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대가로 관세할당(Tariff-Rate Quota; TRQ)을 늘려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이루게 된다.

민감품목의 수로 미국과 G20은 전체 세번(HS 세번 기준)의 1%를 제안하였다. EU는 전체 세번의 8%까지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EU는 8%에서 양보하여 4%까지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속한 수입국 그룹인 G10은 전체 세번의 10~15%를 주장하고 있다. 민감 감축률과 TRQ 증량 방식에 관한 주요국의 제안을 요약,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민감품목에 관한 주요국 제안의 비교

회원국	민감 감축률	TRQ 증량 기준과 산출 공식
EU G10	일반 감축률의 33~66%	<산출 공식> $x(\%) = \left(\frac{n-s}{100+t} \right) \times 0.8 \times e$ n: 일반 감축률(%), s: 민감 감축률(%), t: 양허 관세율(%), e: 탄성치 단, t는 200을 초과할 수 없음. ① 현행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5%보다 적을 경우 증량 기준은 국내 소비량의 5% $x(\%) = \left(\frac{n-s}{100+t} \right) \times e_1$ ② 쿼터 내 수입 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5~10% 인 경우 증량 기준은 현행 수입량 $x(\%) = \left(\frac{n-s}{100+t} \right) \times e_2$ ③ 전체 수입 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5~10%인 경우 증량 기준은 현행 수입량 $x(\%) = \left(\frac{n-s}{100+t} \right) \times e_3$ 단, $e_1 > e_2 > e_3$ ④ 현행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②의 증량폭에 다음과 같은 조정계수를 곱함. i)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10~30% 인 경우: a ii)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b 단, $1 > a > b$

8 모델리티 협상 동향과 쟁점 분석

<표 2-1> 계속

회원국	민감 감축률	TRQ 증량 기준과 산출 공식																				
미국	<TRQ 품목> ① 쿼터 밖 관세(Out-of-quota Tariff Rate)를 수준별로 30%, 35%, 40%, 45% 감축 ② 쿼터 내 관세(In-quota Tariff Rate)는 철폐	<기준> 국내 소비량 <산출 공식> $x(\%) = base(\%) \times c + (n - s) \times d$ base: 국내 소비량의 3%, n: 일반 감축률(%); s: 민감 감축률(%); d: 구간별 조정계수; c: 시장접근 조정계수 - 시장접근 조정계수(c) <table><tr><th>$\frac{TRQ}{Cons}$ 나 $\frac{Import}{Cons}$ 중 큰 값</th><th>조정계수)</th></tr><tr><td>< 5%</td><td>1</td></tr><tr><td>5% < 10%</td><td>0.8</td></tr><tr><td>10% < 30%</td><td>0.6</td></tr><tr><td>> 30%</td><td>0.4</td></tr></table> - 구간별 조정계수(d) <table><tr><th>관세 감축 구간</th><th>조정계수</th></tr><tr><td>제1구간</td><td>0.1</td></tr><tr><td>제2구간</td><td>0.15</td></tr><tr><td>제3구간</td><td>0.2</td></tr><tr><td>제4구간</td><td>0.25</td></tr></table>	$\frac{TRQ}{Cons}$ 나 $\frac{Import}{Cons}$ 중 큰 값	조정계수)	< 5%	1	5% < 10%	0.8	10% < 30%	0.6	> 30%	0.4	관세 감축 구간	조정계수	제1구간	0.1	제2구간	0.15	제3구간	0.2	제4구간	0.25
	$\frac{TRQ}{Cons}$ 나 $\frac{Import}{Cons}$ 중 큰 값	조정계수)																				
	< 5%	1																				
	5% < 10%	0.8																				
10% < 30%	0.6																					
> 30%	0.4																					
관세 감축 구간	조정계수																					
제1구간	0.1																					
제2구간	0.15																					
제3구간	0.2																					
제4구간	0.25																					
	<TRQ 이외 품목> TRQ 증량 면제																					
G20	<선진국> TRQ 품목만 지정 일반 감축률의 70% 이상	<기준> 최근 3개년 국내 소비량 <산출 공식> 선진국: 최근 3개년 국내 소비량의 6% 증량																				
	<개도국> TRQ 품목의 경우 일반 감축률보다 낮은 수준	개도국(TRQ 품목): 최근 3개년 국내 소비량의 4% 증량(국내 소비량 안정시 생계농 자가 소비량은 제외) 개도국(TRQ 이외 품목): ① 일반 감축률보다 낮은 수준 ② 일반 감축률 대비 최대 45% 일탈 + back-loading ③ 이행 기간 연장 ④ TRQ 신설 등																				

주: WTO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제안들을 정리한 것임. EU와 G10의 공동 제안은 공식 배포되지 않았으나, 내부에서 협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ICTSD(2005d; 2006a)

다. 관세 상한의 설정

고율 관세를 없애기 위한 관세 상한으로 미국은 75%, EU와 G20은 각각 100%를 제안하였다. 반면 관세 상한을 반대하는 회원국은 G10과 ACP(Africa, the Caribbean and Pacific) 국가(71개국 연합)이다. 특히 수입국에다 전체 세번 중 고율 관세의 비율이 높은 G10은 관세 상한 저지를 가장 중요한 협상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다. <표 2-2>에서 보듯이, 스위스와 노르웨이의 고관세 비율은 20%가 넘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9%에 가깝다. 반면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EU는 고관세 비율이 3%에 불과해 관세 상한 설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EU가 관세 상한 설정에 찬성함으로써 수입국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라.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의 수와 대우

특별품목은 DDA가 추구하는 개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써 개도국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수입개방을 완화시킴으로써 식량안보, 농촌개발, 생계유지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별품목을 주장하는 개도국 모임인 G33은 신축적인 특별품목 설정과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G33은 특별품목 수로 전체 세번의 20%, 그 감축률은 최대 10%로 제안하고, TRQ 증량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표 2-2. 주요 수입국의 고관세 현황

회원국	고관세의 수(개)	고관세의 비율(%)
EU	74	3.4
일본	119	8.9
스위스	508	20.8
노르웨이	264	24.7
한국	126	8.8

주: 1. 고율 관세는 100% 이상을 말함.

2. 한국의 고율 관세에는 쌀이 포함되지 않음.

농업협상회의 팔코너 의장은 2006년 5월에 배포한 참고문서(reference papers)에서 전체 세번의 20%가 전체 수입액의 98.4%에 해당하는 사례를 들며, DDA 협상의 목적 중 하나인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품목 수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WTO 2006a).

마. 특별 수입구제 조치(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SSM은 수입 급증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UR이 도입한 긴급 수입구제조치(Special Safeguard; SSG)와 일맥상통한다. SSM은 특별품목과 마찬가지로 개도국만 사용할 수 있다. G33이 제안한 SSM 발동 요건과 추가 관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SSM의 발동 기준과 추가 관세: G33 제안

발동 기준	발동 요건		추가 관세
물량기준	당해 연도 수입량 수준	최근 3개년 평균 수입	없음
		$105\% \leq 110\%$	양허세율의 50% 또는 40% 포인트 증가 중 높은 수준
		$110\% \leq 130\%$	양허세율의 75% 또는 50% 포인트 증가 중 높은 수준
		$130\% <$	양허세율의 100% 또는 60% 포인트 증가 중 높은 수준
가격기준	수입가격이 최근 3년간 월평균 수입가격(발동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선적기준: 선적분의 수입가격과 발동기준가격과의 차이보다 낮은 수준 ·종가세 기준: 해당 선적분의 수입가격과 발동기준가격과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보다 낮은 수준

2.1.2. 협상안의 분석과 평가

가. 관세 감축

관세 감축과 관련하여 주된 쟁점은 관세가 가장 높은 제4구간의 경계를 결정하는 일이다. 관세가 높은 구간에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게 되므로 육류, 낙농품, 곡물 등 주요 품목이 관세율 60~90%에 놓인 EU는 이 구간 이상으로 제4구간을 설정하도록 제안하였다<표 2-4>. 반면에 미국, G20 등 수출국들은 EU의 관세율 60% 이상인 품목들의 개방을 겨냥하고 있어 제4구간의 경계를 최대한 낮추려는 입장이다.

표 2-4. 주요 수출국의 수출 품목과 주요 수입국의 관세율

품목명 (HS번호)	주요 수출국	관세율(%)			
		EU	일본	스위스	한국
쇠고기 (0201;0202)	미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77~142	50	182~522	40
돼지고기 (0203)	미국, 브라질	0~66	0~252	1~369	22.5~25
닭고기 (020710)	미국, 브라질, 중국, 태국	6~65	3~12	146~1019	18~20
탈지분유 (040210)	호주, 뉴질랜드	57~80	218~226	-	176
전지분유 (040221)	호주, 아르헨티나	45~87	109~365	152.5	176
차(0902)	중국, 인도	0~3	0~17	0	60.7~513
밀(100110)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인도	81.9	247.8	2~221	1.8~9
옥수수(1005)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0~73	0~87	0~157	328
쌀(1006)	태국, 중국, 인도	7~94	568~778	0~126	-
대두(1201)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0	0	7~139	487
설탕(1701)	호주, 태국, 인도, 브라질	114.9	311.4	-	18
잎담배(2401)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3~31	0	0~40	54

주: 1999-2003년 평균 수출액의 상위 품목임.

자료: FAOSTAT(www.fao.org).

12 모델리티 협상 동향과 쟁점 분석

우리나라는 130% 이상의 고관세 품목이 있지만 제4구간의 경계가 130% 아래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최상위 구간의 경계에 따라 하위 구간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율 40%인 쇠고기와 45%인 사과, 포도, 배 등 저율관세를 가진 주요 품목들이 관세 감축률이 낮은 구간에 속하도록 관세구간 경계와 관련된 논의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관세 감축률에 관한 주요국들의 제안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미국 제안에 따를 때 감축 후 평균 관세율은 28%로 가장 낮은 반면에 G10 제안은 47%로 가장 높다. 그러나 관세 감축률과 관련된 논의는 미국 제안과 G20 제안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감축 후 평균 관세율은 28~41%가 될 가능성이 높다.

표 2-5. 주요국 제안별 관세 감축 결과 비교

구 분	초기 관세율(%) (2004년)	감축 후 관세율(%)		
		미국	G20	G10
평균 관세율	63	28	41	47
평균 감축률	24	47	28	20
최고 관세율	887	350	532	621

주:1. 쌀은 계산에서 제외함.

2. 미국은 개도국 관세 감축률을 제안하지 않았으나 선진국의 2/3 규정을 적용함.

3. EU의 관세 감축률은 G20과 거의 비슷하므로 따로 표기하지 않음.

4. 초기 관세율의 평균 감축률은 UR 때의 값임.

5. 관세 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은 반영하지 않음.

나. 민감품목

선진국의 민감품목 비율이 4%로 결정되면 개도국의 비율은, 선진국의 2/3 규칙을 적용하면 6%가 된다. 우리나라의 세번을 관세율 수준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민감품목 비율 6%는 관세율 270%와 맞닿는다. 고관세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의 관세구조를 감안하면, 6% 비율은 충분

한 수준이 아니다.²

민감품목에는 일반 감축률보다 낮은 민감 감축률을 적용하는 대가로 TRQ 증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민감품목의 효과는 관세 감축에 따른 수입 증량과 TRQ 증량 폭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관세 감축률과 동등한 TRQ를 산출하려면, 수입량을 결정하는 무역이론을 기초로 탄성치를 활용해야 한다<부록 1>.

또한 이론에서 도출한 공식에다 주요국의 제안을 접목해 TRQ 증량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 대상은 29개 품목으로 관세화 유예 대상인 쌀은 제외하였으며 국내 소비량과 현행 수입량은 1999~2001년 실제치의 평균이다.³

① 수입수요 탄성치별 TRQ 증량 수준 산출

TRQ 산출을 위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TRQ 대상이 아닌 품목은 TRQ를 신설한다.⁴ 둘째, 품목별 수입수요 탄성치는 각각 0.8, 1.0, 1.2이다.⁵ 셋째, 구간별 관세 감축률은 G20의 개도국 제안을 따른다. 넷째, 민감 감축률은 일반 감축률의 50%이다. 다섯째, 관세 상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어진 가정을 부록 1의 <식 4>에 적용해 TRQ 증량 수준을 산출하면 <표 2-6>과 같다.

수입수요 탄성치별 TRQ 증량 수준 산출 결과, 이론대로 수입수요 탄성치가 높을수록 TRQ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추의 양허 관세율은 360%이므로 일반 감축률(제4구간)은 40%다. 여기에 민감 감축률인 20%를 적용하면 TRQ 수입량은 889~1,333톤이 된다. 이는 2004년 양허 TRQ인 7,185톤에서 12~19% 늘어난 수준이다. 제3구간에 놓인 오렌

² 서진교 등(2005a)은 민감품목 관련 가공품까지 포함하면 전체 세번의 10% 안팎으로 민감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수입 농산물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으로 한정하면, 전체 세번의 3%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³ 분석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민감품목 후보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⁴ 민감품목에 대한 TRQ 신설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⁵ 품목별 수입수요 탄성치는 계측된 결과가 없거나 다양하므로 세 가지 값으로 가정하였다.

14 모델리티 협상 동향과 쟁점 분석

지의 TRQ는 양허수준보다 5~8% 늘어난 2,965~4,447톤으로 산출된다. TRQ 증량 수준은 수입수요 탄성치가 클수록, 현행 수입량이 많을수록, 일반 감축률과 민감 감축률이 확대될수록 커진다.

표 2-6. 수입수요 탄성치별 TRQ 증량 수준

품 목	수입수요 탄성치별 TRQ 증량 수준(톤)		
	0.8	1.0	1.2
감귤	22	27	33
감자(기타)	1,336	1,670	2,004
감자(종자)	14	18	21
고구마	11	14	17
고추	889	1,111	1,333
닭고기	1,063	1,328	1,594
대두박용대두	148,991	186,239	223,486
돼지고기	2,399	2,999	3,599
마늘	1,867	2,333	2,800
맥주보리	-	-	-
무당연유	2	2	3
밤	18	22	27
배	1	2	2
버터	64	80	96
사과	3	3	4
쇠고기	6,812	8,515	10,218
양파	1,669	2,086	2,503
오렌지	2,965	3,706	4,447
옥수수	1,036,925	1,296,156	1,555,387
유당	560	700	840
유장분말	1,432	1,790	2,148
인삼	48	60	72
일반가공대두	40,768	50,959	61,151
일반보리	2,700	3,375	4,050
전지분유	95	119	143
참깨	9,594	11,992	14,391
천연꿀	42	53	64
탈지분유	374	468	561
포도	257	321	385

② G20 감축률에 기초한 TRQ 증량 수준

G20이 제시한 관세 감축률과 미국, EU·G10, G20이 각각 제시한 민감품목 TRQ 증량 공식을 이용해 TRQ 증량 수준을 산출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TRQ 증량 수준은, 소비량 기준을 채택한 미국 공식 아래 가장 크게 나타난다. 대두, 오렌지, 옥수수, 유당, 유장분말, 참깨 등의 경우 이론(수입

표 2-7. G20 감축률과 주요국 제안별 TRQ 증량 수준

품목	수입수요 탄성치 1.0	미국(톤)	EU·G10(톤)	G20(톤)
감귤	27	38,805	1,590	19,403
감자(기타)	1,670	53,862	1,795	26,931
감자(종자)	18	632	25	372
고구마	14	27,430	988	14,827
고추	1,111	10,765	406	5,819
닭고기	1,328	9,760	5,313	12,800
대두박용대두	186,239	69,589	59,862	44,896
돼지고기	2,999	23,817	9,596	31,236
마늘	2,333	29,349	978	14,675
맥주보리	0	11,284	4,041	7,280
무당연유	2	250	14	154
밤	22	5,191	173	2,596
배	2	17,068	1,345	13,004
버터	80	228	72	172
사과	3	24,059	1,896	18,331
쇠고기	8,515	13,560	17,030	15,722
양파	2,086	64,287	2,736	32,143
오렌지	3,706	2,557	5,929	2,965
옥수수	1,296,156	528,470	451,002	340,948
유당	700	486	1,132	564
유장분말	1,790	1,243	2,892	1,441
인삼	60	894	30	447
일반가공대두	50,959	19,041	16,380	12,285
일반보리	3,375	15,598	1,178	9,175
전지분유	119	358	54	210
참깨	11,992	6,090	3,706	3,929
천연꿀	53	1,372	46	686
탈지분유	468	1,521	213	895
포도	321	24,844	1,958	18,929

수요 탄성치 1.0)에 기초한 TRQ 증량 수준은 미국 공식의 산출 결과보다 높다. 이는 위 품목들의 소비량과 수입량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G20은 감축률의 격차를 반영한 TRQ 증량 공식을 제시하지 않고, 개도국의 경우 국내 소비량의 4%를 단순히 증량하도록 요구하였다. EU와 G10의 TRQ 증량 공식은 이론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지닌다. 공식이 수입수요 탄성치, 수입량, 관세 감축률의 격차 등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이론에서 도출한 공식과 EU·G10 제안 사이의 차이점은, 전자가 수입량을 기준으로 삼은 반면에 후자는 수입량과 소비량을 비교하여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작다면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점이다. 소비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TRQ는 수입량 기준의 결과보다 큰 것이 보통이다. EU와 G10의 공식에 의한 TRQ 증량 수준이 이론에 따른 결과보다 큰 품목은 모두 17개였다.

G20이 제시한 관세 감축률 아래 우리나라가 TRQ 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안은 EU·G10 제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주요국 감축률과 제안별 TRQ 증량 수준

주요국이 제안한 관세 감축 구간, 구간별 감축률, TRQ 증량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가 <표 2-8>이다. G20 제안 아래 산출된 TRQ 증량 수준은 위의 ②와 같다. G20 공식이 소비량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오렌지, 유당, 유장분말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품목에서 미국 제안 아래 TRQ 증량 수준이 EU·G10 제안보다 크게 나왔다.

지금까지 분석을 종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RQ 증량 수준을 최소화하는 제안은 EU·G10, G20, 미국 순이다. 둘째, TRQ 증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은 1999~2001년 이외의 기준기간 설정, 일반 감축률과 민감 감축률 사이의 격차 허용 범위, 다양한 조정계수의 변화 등이 될 것이다. 셋째, 관세 감축과 TRQ 증량의 관계에 관한 무역이론에 가장 근접한 공식은 EU·G10 제안이다. 따라서 이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EU·G10 제안이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식이 포함하는 품목별 수입수요 탄성치가 계측되지 않거나 불안정한 추정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불완전하나마 EU의 제안처럼 고정된 값(예: 1.0)으로 가정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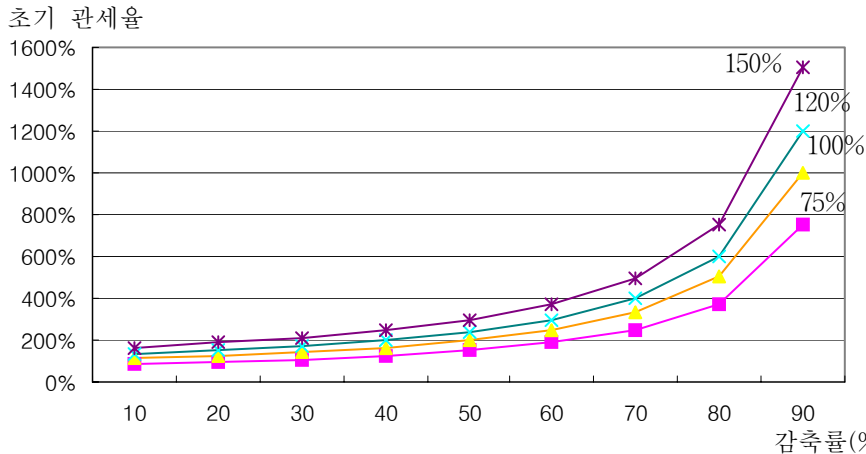
표 2-8. 주요국 감축률과 제안별 TRQ 증량 수준

품목	단위: 톤		
	미국	EU · G10	G20
감귤	50,932	1,590	19,403
감자(기타)	70,694	1,795	26,931
감자(종자)	865	25	372
고구마	36,697	988	14,827
고추	14,402	406	5,819
닭고기	16,960	4,959	12,800
대두박용대두	97,649	59,862	44,896
돼지고기	41,387	8,957	31,236
마늘	38,521	978	14,675
맥주보리	15,833	4,041	7,280
무당연유	404	14	154
밤	6,814	173	2,596
배	27,093	1,345	13,004
버터	401	69	172
사과	38,190	1,896	18,331
쇠고기	25,679	17,030	15,722
양과	84,377	2,736	32,143
오렌지	4,842	5,929	2,965
옥수수	741,562	451,002	340,948
유당	921	1132	564
유장분말	2,354	2,892	1,441
인삼	1,173	30	447
일반가공대두	26,719	16,380	12,285
일반보리	21,332	1,178	9,175
전지분유	489	54	210
참깨	8,545	3,706	3,929
천연꿀	1,800	46	686
탈지분유	2,080	213	895
포도	39,436	1,958	18,929

다. 관세 상한

관세 상한이 설정되면 감축 후 관세율은 언제나 관세 상한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관세 감축률과 관세 상한 사이의 증가곡선으로 정의하고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관세 감축률과 관세 상한 사이의 등가곡선



미국 제안대로 관세 상한 75%를 설정한다고 가정하면 관세 상한 75%는 초기 관세율 75%에다 제4구간 관세 감축률 90%를 적용한 결과와 같다. 미국은 최상위 구간에 관세 감축률 90%를 제안하였으므로 관세 상한 75%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 상한이 구속력을 지니고 다른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관세 감축률을 제안한 수준보다 낮춰야 할 것이다.

EU나 G20의 제안대로 관세 상한 100%가 설정되면,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고관세 민감품목이 많은 수입국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표 2-9>.

개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관세 상한 150%를 받게 된다면, 관세율 250%가 넘는 고추, 마늘, 보리, 감자, 고구마, 녹차, 참깨, 홍삼, 대두, 옥수수 등 고관세 품목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쌀을 뺀 1,436개 품목(HS 10단위 기준) 가운데 관세율 250% 이상인 품목이 94개(전체 세번의 6.3%)에 이르는 현실에서 150% 이하로 관세 상한이 설정되면 우리나라의 관세 감축 폭은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

특히 민감품목에도 관세 상한이 적용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수입국들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G10에 속한 일본은 650% 이상의 고

을 관세율 품목인 쌀에 관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ACP 국가도 관세 상한이 민감품목의 설정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관세 상한을 반대하고 있다.

표 2-9. 주요 수입국의 고관세 품목 현황

관세율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한국
100~200%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밀크와 크림, 조란, 감자, 일부 과채류, 포도, 사과, 배, 밀, 보리, 옥수수, 쌀, 기타 곡물, 맥아, 매니옥전분, 대두, 종실유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밀크와 크림, 버터밀크, 버터, 치즈, 조란, 천연꿀, 일부, 과채류, 보리, 옥수수, 밀, 감자, 대두, 종실유, 사탕무, 동식물성 유지	돼지고기, 밀크와 크림, 유장, 보리, 사탕수수당, 쌀 가공품, 조제분유	양파, 감귤, 분유
200~300%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절화류, 토마토, 일부 채소, 밀, 보리, 기타 곡물, 감자, 맥아, 종실유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버터밀크, 유장, 조란, 일부 채소, 옥수수, 감자, 기타 곡물	돼지고기, 밀크와 크림, 버터밀크, 유장, 버터, 콩, 밀, 보리,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육가공품, 조제분유, 생사	밤, 백삼, 땅콩, 메밀, 꿀, 맥아, 고추, 쌀보리
300~400%	쇠고기, 돼지고기, 버터밀크, 버터, 수목류, 절화류, 조란, 상추, 무, 매일부채소, 호밀, 맥아, 사탕무, 식물성 유지, 담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 조란, 상추, 무, 매니옥 전분, 빵류	돼지고기, 밀크와 크림, 버터밀크, 유장, 버터, 기타 낙농품, 밀전분, 사탕수수	감자, 옥수수, 마늘, 고구마
400~500%	닭고기, 돼지고기, 버터, 수목류, 토마토, 양파, 무, 호밀, 옥수수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육가공품	밀크와 크림, 버터밀크, 버터, 팥, 밀, 누에고치	팥, 감자전분, 대두
500%<	쇠고기, 닭고기, 버터, 수목류, 일부채소, 옥수수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밀크와 크림, 난황, 콩, 육/설육의 조분	버터밀크, 유장, 버터, 쌀, 보리, 매니옥 전분, 땅콩	녹차, 맥주맥, 귀리, 잣, 녹두, 대추, 팥콘용 옥수수, 참깨, 홍삼, 수수, 가공곡물, 매니옥

자료: 서진교 등(2005b).

라. 특별품목

특별품목의 수와 대우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특별품목이 많을수록 특혜적인 대우는 줄어든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일반 품목, 민감품목, 특별품목이 오름차순으로 신축성이 향상되는 상황(accumulation of flexibility) 아래, 각각의 대상 품목 수는 내림차순으로 적은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민감품목 비율이 4%이면 2/3 규칙에 따라 개도국의 민감품목 비율은 6%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위 관계에 따라 특별품목의 비율은 민감품목의 비율 6%보다 작은 것이 논리에 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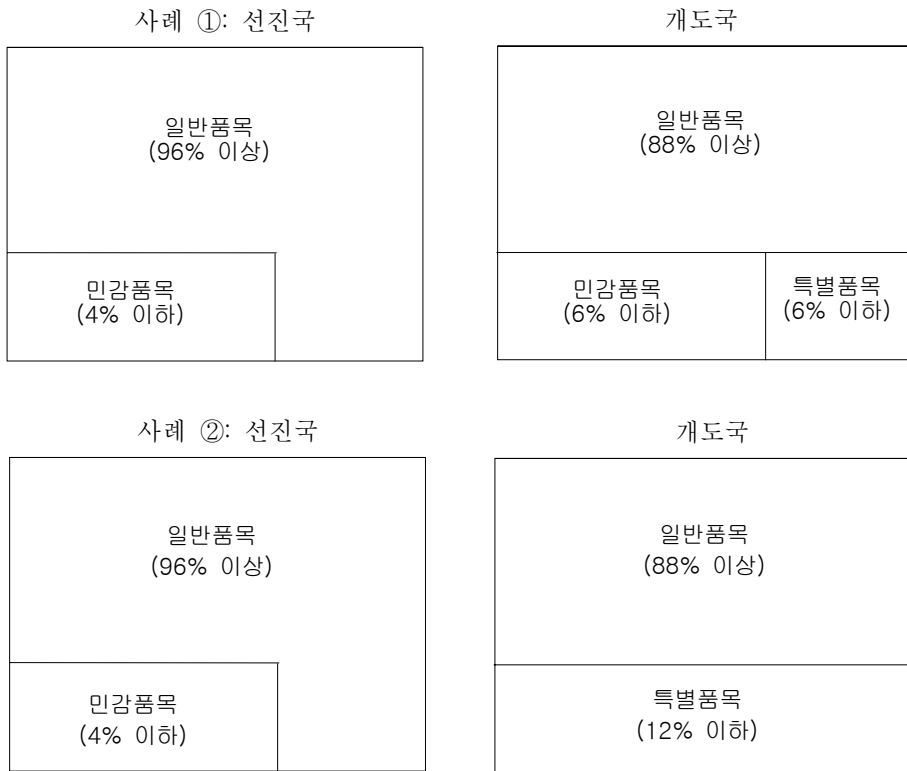
<그림 2-5>에서 사례 ①은 개도국에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모두 사용할 권한이 생기면, 특별품목 수가 민감품목의 수보다 적을 가능성(예: 6% 이하)을 나타낸다. 사례 ②는 개도국이 민감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품목에 관한 특권만 가진다면, 민감품목의 비율이 더해진 수준(예: 12% 이하)까지 특별품목의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을 묘사한다.

개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전체 세번의 12%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면, 관세율 67% 이상의 품목 172개의 관세 감축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특별품목에 관한 대우는 호혜주의(reciprocity) 원칙 아래 최소한의 관세 감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 앞에서 예시한 점진적 신축성 관계를 감안하면 TRQ 증량이 배제된 낮은 감축(예: 특별 감축률<민감 감축률<일반 감축률)이 특별품목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특별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일반 감축률의 50%로 민감 감축률이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특별 감축률은 민감 감축률의 $x\%$ 식으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품목 대우 측면에서 관세 상한은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민감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보상으로 더 많은 특별품목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2-5. 일반 품목, 민감품목, 특별품목 수의 관계



2.2. 국내보조 분야

구간별 감축 방식과 조화의 원칙에 따라, 보조 규모가 클수록 감축률도 큰 방식이 채택되었다. 또한 회원국의 장기 농정개혁에 맞추어 개별 보조 감축과 함께 전체 보조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2.2.1. 주요 협상 쟁점

가. 감축 대상 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AMS는 조화 원칙에 따라 보조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감축해야 하는 구간별 감축방식(tiered approach)이 적용된다. 보조 구간은 3개로 나누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AMS 규모가 250억 달러를 초과하는 EU와 일본은 상위 구간에, 150~250억 달러에 속하는 미국은 중위 구간에, 150억 달러 이하의 기타 회원국들은 하위 구간에 속한다<표 2-10>. 우리나라의 AMS 양허수준은 전체의 1% 미만으로 9위이며, 하위구간에 속한다.

표 2-10. AMS 양허수준에 따른 구간 배분

단위: 백만 달러, %

회원국	AMS 양허수준	총액 대비 비중	1999-2001년 평균 농업생산액 대비 비중	구간
EU(15)	598.3	42.4	26.7	상위
일 본	359.5	25.5	45.4	
미 국	191.0	13.5	10.0	중위
멕시코	83.4	5.9	26.6	하위
폴란드	33.3	2.4	24.7	
캐나다	28.3	2.0	13.6	
스위스	25.2	1.8	55.9	
노르웨이	13.0	0.9	63.5	
한국	12.9	0.9	4.7	
베네수엘라	11.3	0.8	-	
기타 25개국	54.8	3.9	-	
총액	1,411.0	100.0		

주: 1. AMS 감축의무가 있는 회원국은 35개국임.

2. 농업생산액은 회원국별 WTO 통보자료를 이용했으며, 기타 25개국 가운데 아이슬란드의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AMS 양허수준의 비율은 118.3%에 이름.

자료: WTO(2005a; 2005b)

농업생산액 대비 AMS 비율이 높으면서 더 낮은 구간에 배치되는 선진국은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이에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은 G10 제안을 통해 AMS를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EU는 감축률과 관련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U는 미국이 60% 이상 감축하면, 7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⁶ 이에 미국은 EU가 83% 감축한다면, 60% 감축하겠다고 대응하였다(WTD 2006a). 미국과 EU, G20 등 주요국의 제안을 정리하면, AMS 감축률은 상위 구간에 70~83%, 중위 구간에 60~70%, 하위 구간 37~60%를 적용할 수 있다.

나. 품목별 AMS 상한

품목별 AMS 상한이 설정된다. 이는 총 AMS가 줄어도, 품목 사이의 보조규모를 조정해 특정 품목에 대한 보조를 증가시키는, 이른바 품목 전환(product shift)을 억제하려는 조치이다. 품목별 상한은 기준기간의 평균 지급 수준을 기초로 설정될 것이다.⁷

기준 기간으로 G10, EU, G20 등은 UR 이행 기간인 1995~2000년, 미국은 보조 실적이 큰 1999~2001년을 선호하고 있다. G10은 기준 기간에 지급된 실적의 올림픽 평균을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품목별 AMS는 최근 연도 실적도 인정하되, 기준 기간에 지급실적이 없거나 최소 허용보조 수준 이하이면 농업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상한을 설정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G20은 기준 기간의 평균지급 실적을 기초로 하되, 개도국은 ① 1995~2000년과 1995~2004년 중 선택, ② 품목별 최소 허용보조 한도의 두 배, ③ AMS 한도의 20% 등 세 가지 대안 가운데 선택하도록 제안하였다.

⁶ 2006년 2월에 열린 G6 고위급 회의(Senior Officer Meeting: SOM)에서 EU는 75% 감축할 의사를 나타냈다(농림부 2006).

⁷ 2003년 하빈슨 초안은 품목별 AMS 상한설정 기준기간으로 1999~2001년을 제시하였다(WTO 2003).

다.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 DM)

최소 허용보조는 품목 특정과 품목 불특정 보조로 구성된다. 그 감축률에 관한 주요국 제안은 상이하다.⁸ 미국은 농업생산액의 2.5%(50% 감축), EU는 농업생산액의 1%(80% 감축)을 제안하였다. 개도국이 생계형 농가나 자원부족 농가 등 빈농에 지원하거나 AMS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보조 감축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라. 블루박스

2004년 8월에 채택한 기본 골격은 생산제한 조건이 없는 새로운 블루박스(Blue Box; BB)를 인정하였다. 그 규모 상한은 농업생산액의 5%이다. 이에 따라 협상 쟁점은 새로운 블루박스에 관한 세부 요건과 규율 설정이다.

미국이 2002년부터 도입한 가격보전 직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을 새로운 블루박스로 분류할 것을 견제하려고 G20, EU 등은 엄격한 규율 설정을 주장하고 있다.⁹ 특히 G20은 새로운 블루박스가 AMS 감축의 도피처로 오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① 기준 면적 및 생산량을 변동시키지 않을 것, ② 보조 지급이 생산 품목과 연계되지 않을 것, ③ 한 품목에 AMS와 블루박스를 함께 지급하지 않을 것, ④ 목표가격의 결정 기준을 마련할 것, ⑤ 소득 감소로 인한 가격 격차의 보상 수준을 제한할 것, ⑥ 품목별 상한을 설정할 것 등을 내놓았다(World Trade Online 2005). 또한 기존 블루박스의 품목별 상한 설정, 통보절차 강화, 개도국의 사용기준 마련 등도 제안하였다.

블루박스 상한은 농업생산액의 5%에서 2.5% 이하로 의견이 모아지고

⁸ 현재 품목 특정 보조의 상한은 연도별 해당 품목 농업생산액의 5%, 품목 불특정 보조는 농업생산액의 5%이다. 개도국에는 각각 10%가 적용된다.

⁹ 미국은 CCP를 WTO에 통보하지 않고 있어 그 분류가 불확실하다. 지금의 국내보조 규정의 분류에 따르면, CCP는 AMS나 최소 허용보조가 될 것이다.

있으나, 아직 견해 차이가 남아 있다(WTO 2006b). 감축이행 시기와 관련 해, G10과 EU는 DDA 이행 기간에, G20은 이행 첫해에 상한이 구속력을 갖도록 주장하고 있다.

마. 허용보조(Green Box; GB)

허용보조와 관련해서는 본래 목적대로 무역 왜곡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 논의의 주제이다. 특히 개도국들은 직불의 기준기간을 고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수출국인 케언스그룹과 G20은 허용보조의 무역 왜곡 효과에 대한 검토, 남용을 막기 위한 추가 규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허용보조를 많이 사용하는 G10, EU, 미국 등은 일부 규정의 개선은 논하되 재개정엔 반대하고 있다.

허용보조에 관한 캐나다, G20, 미국의 의견을 정리하면 <표 2-11>과 같다. G20과 캐나다가 제안한 개도국 우대 조치는 수용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일부 기준기간의 변경 금지요건에 대해서는 미국, EU, G10 등이 반대하고 있다.

2006년 4월에 팔코너 의장이 제시한 참고문서(reference paper)는 허용보조의 기본 틀 유지, 개도국을 위한 허용보조 요건의 완화, 생산자에 대한 직불(Direct payment to producers), 비연계 소득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 등에서 기준기간 자의적 변경 금지 등을 주요 논의 쟁점으로 제시하였다(WTO 2006c).

바. 무역 왜곡보조 총액(Overall Trade-Distorting Support; OTDS)

OTDS에 대한 규율은 전체 보조의 절대 규모 감축을 보장하고, 보조 사이의 전이(box shifting)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임송수 등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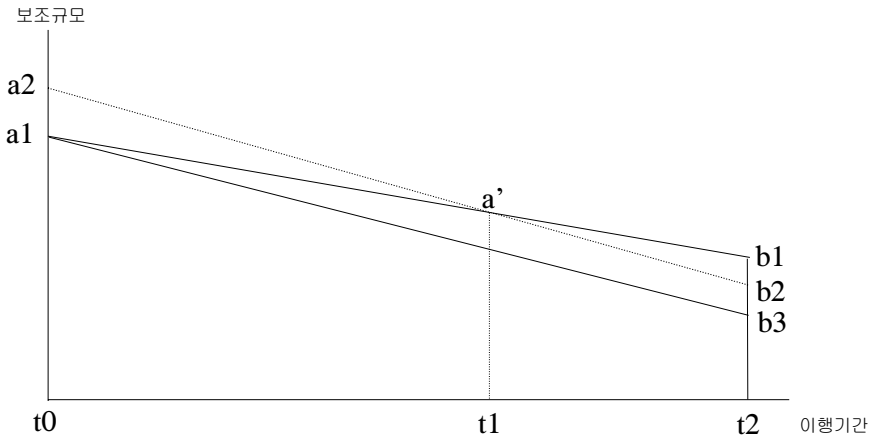
표 2-11. 주요국의 그린박스 제안 주요 내용

쟁점항목		G20	캐나다	미국
일반규범		유지	유지	유지
정부 서비스	일반서비스	개도국 우대 조항 추가 ·농지·토지 제도 개혁 및 식량안보, 생계 보장, 농촌개발 사업 등 관련 서비스 항목을 추가	유지	·농지·토지·제도개혁 서비스 추가 ·G-20 제안보다 포괄 적용
	식량안보 공공비축	개도국 저소득/자원부족 생산자 지원을 위한 식량비축용 구매 허용	유지	유지
	국내식량 원조	개도국 기아/농촌빈곤 퇴치 목적으로 저소득/자원부족 생산자로부터 관리가 격의 식량구매 허용	유지	유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기준기간, 지불기준 통보의무 강화	신규 직불 도입 기준 삭제	추후 조정가능
비연계 소득보조		·수혜 기준강화: 통보된 고정·불변 기준 기간의 소득·토지·생산에 의해 결정 ·기본원칙 강화: 생산 이외 토지·노동도 농업용도에서 배제 ·AMS와 블루박스를 연계한 상한 설정	추후 조정 가능	유지
소득보험 /소득안전망정책, 정부재정지원		·개도국 수혜기준 확대: 국내법에서 규정한 기준 적용 ·보상수준 조정: 소득손실의 70%미만을 소득의 70%로 조정 ·개도국 보상기준 추가: 국내법에 따른 생산자 소득의 일정비율	·수혜대상 명시: 농업경영체 ·보상수준 조정: 좌동 ·수혜 기준기간 확대: 좌동	
자연재해구호지원		·개도국 수혜기준 확대: 국내법에서 규정한 기준적용 ·보상기준 확대: 작물손실 추가	·자연재해 지원요건 세분화 ·보상기준 확대: 좌동	유지
탈농지원 (구조조정)		유지	유지	유지
휴경보상 (구조조정)		유지	유지	유지
투자보조 (구조조정)		·보상 기준 강화: 통보의무 강화 및 고정·불변 요건 추가 ·개도국 우대조항 추가: 기준기간의 융통성 부여	·지급기준 강화: 생산 이외 생산요소, 생산 투입요소 ·비연계 ·보상 기준 강화: 고정·불변	유지
환경보전지원		유지	·지급기준 강화: 의무이행에 따른 추가비용만 지급, 생산과 비연계	유지
지역지원하의 직접지불		·개도국 우대 조항 추가: 수혜자격 및 기준기간 완화 ·보상 기준 강화: 통보의무 강화 및 고정·불변 요건 추가	·기준기간 강화: 고정·불변 ·통보의무 강화	·개도국 우대조항 수혜자격 완화

자료: ICTSD(2005e; 2005f; 2006b); [Http://www.agtradepolicy.org/page/resource/wto.htm](http://www.agtradepolicy.org/page/resource/wto.htm)

#Member

그림 2-6. 무역 왜곡보조 총액(OTDS) 및 개별 보조의 감축 효과 비교



주: 1. t_0 - a_2 는 AMS, 최소 허용보조, 블루박스의 합계인 기준 연도 OTDS다. t_0 - a_1 은 이행 첫째 20%를 감축한 OTDS임.

2. OTDS는 이행 기간(t_0 - t_2)에 a_1 - b_1 이나 a_1 - b_3 의 계획에 따라 감축되며, 이때 전자보다 후자의 감축률이 더 크다고 가정함.

2004년 7월 말 기본 골격을 도출할 때 회원국들은 AMS, 최소 허용보조, 블루박스의 합으로 산출되는 OTDS는 구간별 감축공식에 따라 감축하되, 이행 첫째에 20%를 먼저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개별 보조의 감축과 OTDS 감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2-6>과 같다.

OTDS가 구속력을 지니려면, 보조별 감축결과와 합계(a_2b_2)보다 작아야 한다. OTDS가 (a_1 - b_1) 계획으로 감축된다면, ① (t_0 - t_1) 기간처럼 각각의 상한이나 감축률을 적용한 개별 보조의 합이 OTDS보다 크면($a_2a' > a_1a'$) 보조 규모는 해당 기간 OTDS 수준으로 제약되어 개별 보조를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② (t_1 - t_2) 기간처럼 OTDS가 개별 보조의 합보다 크면($a'b_1 > a'b_2$) 보조 규모는 개별 보조의 총액 수준으로 제약된다.

OTDS가 (a_1 - b_3)의 계획으로 감축된다면, (t_0 - t_2)의 이행 기간 내내 각각의 상한이나 감축률을 적용한 개별 보조의 합이 OTDS보다 크므로 보조 규모는 OTDS 수준으로 제약되어 개별 보조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OTDS의 감축 구간은 AMS와 마찬가지로 3개로 나뉘어 상위 구간에 EU,

중위 구간에 미국과 일본, 하위 구간에 기타 회원국이 속하게 된다. 제안된 구간별 감축률은 상위 구간이 70~80%, 중위 구간이 53~75%, 하위 구간이 31~70%이다.¹⁰

국내보조 분야에서 제안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12>와 같다.

표 2-12. 주요국의 국내보조 감축 제안 내용

		주요국별 감축 제안 내용			
		EU	미국	G-20	G-10
AMS	EU	70(75%)	83%	80%	70%
	미국·일본	60(65%)	60%	70%	60%
	기타	50(55%)	37%	60%	45%
OTDS	EU	70(75%)	75%	80%	75%
	미국·일본	60(65%)	53%	75%	65%
	기타	50(55%)	31%	70%	45%
최소허용보조		80% 감축 (상한 5%→1%)	50%감축 (상한 5%→2.5%)	AMS 없는 개도국 감축면제	AMS 없는 개도국 감축면제
블루박스		새 블루박스 기준 강화	농업생산액의 2.5%	블루박스 기준강화	새 블루박스 추가논의 필요
허용보조		현행 규정 유지	현행 규정 유지	개도국 관련 규정 완화	현행 규정 유지

주: 1. 개도국에는 선진국보다 더 긴 이행 기간과 낮은 감축률이 적용됨.

2. EU의 괄호 수치는 비공식적인 제안임.

¹⁰ EU는 2006년 2월 말에 열린 G6 고위급 회의에서 75%까지 OTDS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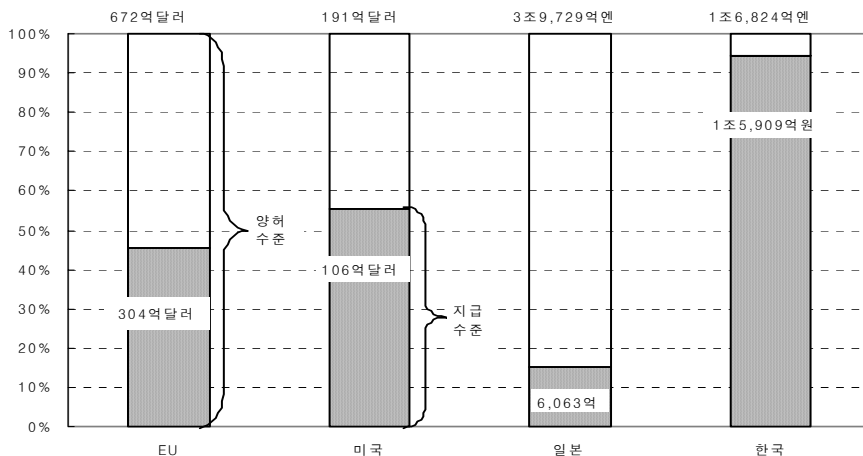
2.2.2. 협상안의 분석과 평가

가. AMS 감축

AMS 감축 수준은 보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EU, 미국, 일본 등이 자국 제안보다 얼마나 추가로 감축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회원국의 AMS 사용 현황을 보면 <그림 2-7>과 같다.

EU와 일본은 70~83%의 감축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2~04년에 EU는 양허수준의 45%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EU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CAP) 개혁을 통해 허용보조 중심으로 농정 수단을 전환하고 있다(임송수 등 2003a). 이런 추이라면 EU는 15~20%의 추가 감축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7. 주요국의 AMS 현황



주: 1. AMS 사용 실적은, 미국과 일본이 2003~05년 평균, EU 2002~04년 평균, 우리나라 2001~02년 평균(잠정치)임.

2. AMS 양허수준은, 미국, EU, 일본이 2000년, 우리나라가 2001~02년 기준임.

자료: WTO(2005c; 2006d), 농림부(2006)

일본은 1999년에 단행한 쌀 관세화와 양정 개편으로 AMS 사용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2003~05년에 AMS 실적은 허용된 수준의 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일본도 어렵지 않게 AMS 추가 감축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AMS 지급수준은 2003~05년에 양허수준의 55%이다. 중위 구간의 감축률 60~70%를 만족하려면 29~48억 달러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 또한 EU나 일본과 달리 지금까지 많이 사용한 불특정 최소 허용보조가 큰 폭으로 감축되면, AMS 감축은 미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더욱이 2005~06년에 CCP 지출이 40억 달러가 넘는 것도 보조 감축에 걸림돌이다<표 2-13>.

2002~04년에 9개 품목에 연평균 12억 달러가 CCP 아래 지급되었다. 2002~04년 평균 기준으로 쌀, 면화, 땅콩에 대한 CCP 지출은 품목별 농업생산액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이 품목들은 최소 허용보조로 분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감축할 수 있는 AMS는 CCP가 최소 허용보조로 분류되느냐 또는 블루박스로 분류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2000~01년에 AMS 한도의 97%를 사용했지만, 추곡 수매제 폐지와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으로 보조 환경이 변하였다. 이에 따라

표 2-13. 미국의 품목별 CCP 지급 실적(2002~04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04년 품목별 평균 지급실적								
					면화	옥수수	쌀	땅콩	대두	밀	수수	보리	귀리
203	2,301	1,122	4,074	4,185	692 (14.2)	194 (0.8)	166 (11.6)	116 (15.5)	23 (0.1)	9.3 (0.1)	7.8 (0.9)	1.8 (0.3)	0.1 (0.02)

주: 1. 괄호는 품목별 생산액 대비 지급액 비율임.

2. 2006년은 전망치임.

3. 1995~2000년 농업생산액의 2.5%는 48.5억 달러, 1999~2001년 농업생산액의 2.5%는 47.7억 달러임.

자료: Farm Subsidy database http://www.ewg.org:16080/farm/progdetail.php?fips=00000&progcode=total_cc

USDA <http://www.usda.gov/nass/pubs/agr05/acro05.htm>;

http://www.ers.usda.gov/briefing/farmincome/data/GP_T7.htm

AMS 감축에 따라 쌀 직불 규모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¹¹ 하위 구간에 선진국 감축률이 37~60%이므로, 개도국 2/3 규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축률은 25~4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품목별 AMS 상한의 설정

품목별 AMS 상한은 기준 기간의 사용 실적에 따라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UR 이행 기간의 AMS 사용 실적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1999~2001년에 사용실적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기준 기간으로 제시하였으나, EU와 우리나라는 1995~2000년을 주장하고 있다<표 2-14>.

표 2-14. 주요국의 품목별 AMS 사용 실적

국가/품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995~2000 평균	1999~2001 평균
미국(10억달러)	6.2	5.9	6.2	10.4	16.9	16.8	14.4	10.4	16.0
EU(10억유로)	50.0	51.0	50.2	46.7	47.9	43.7	39.3	48.2	43.6
한국(10억원)(A)	2,075	1,967	1,937	1,563	1,552	1,691	1,631	1,798	1,625
쌀(B)	2,016	1,910	1,884	1,510	1,503	1,647	1,583	1,745	1,578
보리	52	51	46	47	49	42	47	48	46
옥수수	6	6	6	6	-	-	-	4	-
유채	2	1	1	-	-	2	1	1	1
누에고치	-	-	0.0	-	0.1	-	-	-	0
B/A(%)	97.2	97.1	97.3	96.6	96.8	97.4	97.1	-	-

주: 우리나라의 2001년 자료는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잠정치임.

자료: WTO(2005c)

¹¹ 쌀 직불과 AMS의 관계 분석은 제4장에서 다룬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AMS의 97%를 쌀에 사용해 왔으며 나머지는 보리, 옥수수, 누에고치, 유채 등에 지급되었다. 품목별 상한이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적용되면 앞으로 AMS 대상 품목은 5개 품목으로 제한될 것이며, 시장개방의 확대로 피해가 늘어도 AMS 조치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품목별 AMS 상한 설정은 장래에 농정 신축성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상당히 불리한 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

최소 허용보조는 현재 수준의 50~80% 감축이 예상된다. 선진국의 기준에서는 농업생산액 대비 1~2.5%까지 감축하는 것이다. 미국의 2001년 최소 허용보조(품목 불특정)는 농업생산액 대비 3.4%였으므로 미국이 논의되는 수준의 감축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조를 새로운 블루박스 등 다른 조치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표 2-15>.

우리나라는 개도국 감축률인 30~50%를 적용하여 농업생산액 대비 5~7%까지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최소 허용보조 대상은 옥수수, 마늘, 소, 콩 등 30여 개 품목이다. 소, 옥수수, 마늘,

표 2-15. 주요국의 최소 허용보조 지급 현황

	미국 (백만 달러)	EU (백만 유로)	일본 (10억 엔)	한국 (10억 원)
최소 허용보조(A)	7,045	863	32	790
품목특정	217	290	11	287
품목불특정(B)	6,828	574	21	503
농업생산액(C)	198,503	246,418	9,130	33,428
B/C(%)	3.4	0.2	0.2	1.5
A/C(%)	3.5	0.4	0.4	2.4

주: 미국과 EU는 2001년, 일본은 2000년, 한국은 2002년(잠정치) 기준임.

자료: WTO(2005d); 농림부(2006)

유자, 맥주보리, 콩 등에 대한 보조가 품목별 생산액의 5%를 넘은 적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 미만이다<표 2-16>. 품목 불특정 보조도 1995~2002년 평균 농업생산액 대비 1.3%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최소 허용보조의 활용 실적을 볼 때 우리나라는 제안된 감축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입증대로 보조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조 상한의 설정은 부담 요인이 될 것이다.¹²

표 2-16. 우리나라의 최소 허용보조 사용 실적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품목 특정	1% 미만	맥주보리, 마늘, 사과, 배, 감귤, 밤, 인삼, 소, 돼지, 닭, 계란, 감자, 고구마, 양파, 파, 생강, 기타채소, 당근, 복숭아, 포도, 감, 대추, 생약, 화훼류, 버섯류	콩, 맥주보리, 마늘, 사과, 배, 감귤, 돼지, 감자, 고구마, 양파, 파, 생강, 기타채소, 당근, 복숭아, 포도, 감, 대추, 생약, 화훼류, 버섯류	맥주보리, 마늘, 사과, 배, 감귤, 돼지, 감자, 고구마, 양파, 파, 생강, 기타채소, 당근, 복숭아, 포도, 감, 대추, 생약, 화훼류, 버섯류	맥주보리, 마늘, 사과, 배, 감귤, 돼지, 감자, 고구마, 양파, 파, 생강, 기타채소, 당근, 복숭아, 포도, 감, 대추, 생약, 화훼류, 버섯류	사과, 배, 감귤, 소, 돼지, 닭, 계란, 감자, 고구마, 양파, 파, 생강, 기타채소, 당근, 복숭아, 포도, 감, 대추, 생약, 화훼류, 버섯류	사과, 배, 감귤, 소, 돼지, 닭, 계란, 감자, 고구마, 양파, 파, 생강, 기타채소, 당근, 복숭아, 포도, 감, 대추, 생약, 화훼류, 버섯류	맥주보리, 사과, 배, 돼지, 고구마, 기타채소, 당근, 참다래, 대추, 생약, 화훼류, 버섯류	맥주보리, 사과, 인삼, 돼지, 고구마, 기타채소, 당근, 참다래, 대추, 생약, 화훼류, 버섯류
	1~3% 미만	콩, 참다래	밤, 인삼, 소	콩, 밤, 참다래	밤, 양파, 인삼, 양파, 유자, 참다래	콩, 마늘, 밤, 인삼, 양파, 유자, 참다래	콩, 밤, 인삼, 양파, 참다래	마늘, 밤, 양파	마늘, 배, 밤, 소, 양파
	3~5% 미만	-	-	인삼	콩, 인삼	-	-	콩, 소	옥수수
	5~10% 미만	-	-	소, 유자	소	옥수수	옥수수, 마늘, 맥주보리	옥수수	콩
품목 불특정		0.96	1.03	1.34	1.77	1.27	1.3	1.22	1.51

주: 품목 특정 보조는 품목별 생산액의 비율 기준이고, 품목 불특정 보조는 전체 농업생산액의 비율 기준임.

자료: 농림부(2006), WTO 국내보조 통보자료 <http://www.wto.org>

¹² 1997년과 1998년의 소 수매(각각 9.3%와 8.7% 활용)와 2000년에 맥주보리와 마늘 수매(각각 7.5%와 8.2% 활용) 등 특수한 상황이 생겼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라. 블루박스에 관한 추가 규율

새로운 블루박스에 관한 추가 규율은 미국이 EU, G20 등 협상 상대국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미국이 AMS 감축률 60%를 제안한 것은 CCP를 새로운 블루박스로 분류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¹³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G20과 EU가 요구하는 추가 규율 설정을 수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¹⁴

블루박스는 WTO 149개 회원국 가운데 9개국이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보조다<표 2-17>.¹⁵ 그러나 새로운 블루박스의 설정으로 회원국의 블루박스 활용 가능성을 키웠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블루박스 조치를 사용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도 블루박스 형태의 직불에 관심을

표 2-17. 회원국들의 블루박스 활용 현황

국 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체코(백만 코루나)	-	-	-	-	-	-	613	788	-
에스토니아(백만 크룬)	-	-	-	-	-	214	196	191	-
EU(백만 유로)	20,846	21,521	20,443	20,504	19,792	22,223	23,726	-	-
아이슬란드(백만 크로나)	1,455	-	-	-	-	-	-	-	-
일본(10억엔)	-	-	-	50	93	93	-	-	-
노르웨이(백만 크로네)	7,117	7,246	7,375	7,880	7,674	7,669	7,330	-	-
슬로바키아(백만 코루나)	43	36	44	-	-	69	129	530	-
슬로베이나(1,000유로)	-	-	-	-	-	24,569	31,110	53,690	46,364
미국(백만 달러)	7,030	-	-	-	-	-	-	-	-

자료: WTO(2005e)

¹³ 물론 2007년 새로운 농업법이 CCP 개혁을 가져올 수도 있다.

¹⁴ 2005년에 미국의 CCP는 41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이는 농업생산액 2.5%(48억 달러)보다 적다.

¹⁵ 소수만이 블루박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① 정부의 큰 예산부담(공공재정 지출), ② 과일 생산에 직면한 국가만의 정책 조치(생산제한 전제), ③ 과도한 거래비용(관리, 평가) 소요 등에 기인한다(UNCTAD 2003).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2005년부터 도입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새로운 블루박스에 적합할지에 대한 검토와 이를 감안한 적절한 협상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

마. 허용보조 기준의 보완

허용보조와 관련된 쟁점은 개도국 우대조항의 신설과 기준 기간 변경에 관한 요건 강화 등이지만 이외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용보조는 우리나라 농정 수단의 중심을 차지한다. 보조 규모 면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농정개혁 과정에서 활용도가 늘고 있다<표 2-18>. 보조 규모는 1995~2002년에 연평균 6% 증가하였다. 1997년에 경영이양 직불제, 2005년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고정 직불 부분) 등 특히 생산자에 대한 직불 조치가 더해가고 있다.

개도국 우대 조항이 추가되면 우리나라에 유리하다. 특히 농업·농촌 개발 측면에서 정부의 일반 서비스 확대, 국내 식량 원조의 확충 등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기준 기간과 지불 요건에 관한 규율 강화는 특히 비연계 소득지불이나 투자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 지불 등의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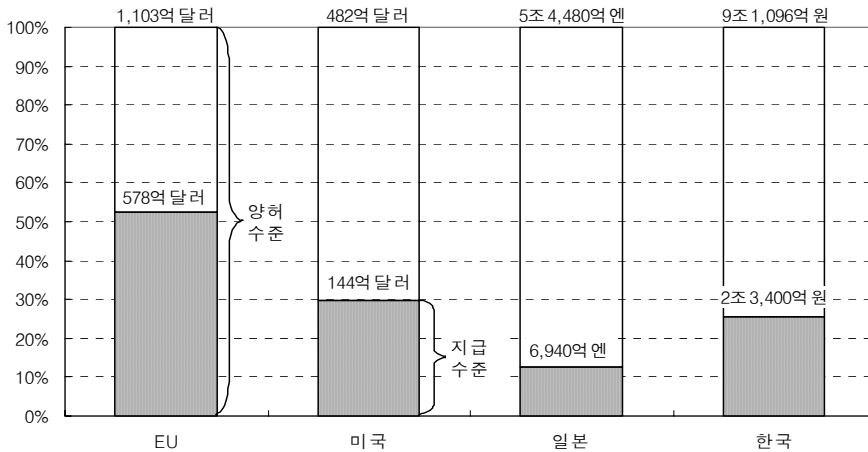
표 2-18. 우리나라의 허용보조 지급 동향

단위: 10억원,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정부의 일반 서비스	2,479 (61.8)	3,385 (64.9)	3,855 (66.1)	3,581 (66.2)	3,680 (66.7)	3,304 (64.7)	3,495 (60.9)	3,408 (55.9)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	1,511 (37.7)	1,798 (34.5)	1,742 (29.9)	1,784 (33.0)	1,776 (32.2)	1,750 (34.3)	2,173 (37.9)	2,628 (43.1)
개도국 우대보조	20 (0.5)	31 (0.6)	38 (0.7)	42 (0.8)	62 (1.1)	51 (1.0)	66 (1.2)	57 (0.9)
계	4,011 (100.0)	5,214 (100.0)	5,834 (100.0)	5,406 (100.0)	5,518 (100.0)	5,105 (100.0)	5,735 (100.0)	6,093 (100.0)

자료: 농림부(2006), WTO 국내보조 통보자료 <http://www.wto.org>

그림 2-8. 주요국의 무역 왜곡보조 총액(OTDS) 현황



주: 1. AMS 양허수준은 EU, 미국, 일본이 2000년, 우리나라가 2004년 기준임. 최소 허용보조와 블루박스의 기준 연도는 1995~2000년이고, EU, 미국, 일본이 농업생산액 대비 5%, 한국이 10%임.

2. 지급 수준 산출의 기준 연도는 EU 2004년, 미국과 일본 2005년, 한국 2002년임.

자료: WTO(2005a; 2006d)

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보조의 중복 지원에 대한 규제는 쌀의 고정 직불(허용보조)과 변동 직불(AMS 또는 새로운 블루박스)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바. 무역 왜곡보조 총액(OTDS)의 감축

OTDS는 상위 구간에서 75%까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75%까지 감축할 용의가 있으며, 미국도 시장접근 개선을 조건으로 70%까지 감축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WTD 2006a).

주요 회원국의 OTDS 양허수준과 지급 수준을 비교하면 <그림 2-8>과 같다. 양허수준 대비 지급 수준은 EU가 52%, 미국이 30%, 일본이 13%, 우리나라가 28%로 감축 부담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EU와 G20은 미국에게 53%보다 더 높은 70%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행연도 말 227억 달러(53% 감축시)에 달하게 될 OTDS를 EU와 G20의 요구를 받아들여 145억 달러(70% 감축시)로 추가 감축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이다<표 2-19>.

우리나라의 OTDS 규모는 기준 연도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다<표 2-20>. AMS 최종 양허수준, 품목특정 및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의 합계로 이루어진 OTDS는 기준 연도에 따라 개도국 기준 아래 9조 1,096억~9조 7,926억원으로 산출된다. 반면, 선진국 기준 아래 6조 617억~6조 4,715억 원으로 산출되며, 이는 개도국 기준의 60~70%에 머물게 된다.

표 2-19. 미국의 무역 왜곡보조 총액의 감축 시나리오

단위: 백만 달러

개별 보조		현행수준	허용수준	감축률	상한	양허수준
AMS		12,482	19,103	60%	-	7,641
DM	품목불특정	1,900	9,707	50%	2.5%	4,853
	품목특정	60	9,707	50%	2.5%	4,853
BB		-	9,707	50%	2.5%	4,853
OTDS		14,442	48,224	53%	-	22,665
개별 보조 감축의 합		-	-	-	-	22,202

주: 1. 현행수준은 2005년 기준임.

2. 양허수준의 기준 기간은 AMS는 2000년, 최소 허용보조와 블루박스 1995~2000년 평균임. 기준 기간을 1999~2001년으로 바꿔도 큰 차이는 없음.

자료: 농림부(2006), WTO(2006d)

표 2-20. 우리나라의 무역 왜곡 보조총액 추계

단위: 억 원

구 분		1995~2000	1999~2001	1995~2004
2004년 AMS 최종 양허수준(A)		14,900	14,900	14,900
최소허용보조 (B)		60,957 (30,478)	66,421 (33,210)	64,037
	품목특정(생산액의 10%)	30,478 (15,239)	33,210 (16,605)	32,019
	품목불특정(생산액의 10%)	30,478 (15,239)	33,210 (16,605)	32,019
블루박스(생산액의 5%)(C)		15,239 (15,239)	16,605 (16,605)	16,009
무역 왜곡보조 총액(A+B+C=D)		91,096 (60,617)	97,926 (64,715)	94,947
무역 왜곡보조 총액 실적치(E)		23,102	21,553	-
D/E(%)		394.3	454.3	-

- 주: 1. 괄호()는 선진국 기준임.
 2. 최소 허용보조의 기준은 품목 특정이면 품목별 생산액의 5%(선진국)와 10%(개도국), 품목 불특정이면 전체 농업생산액의 5%(선진국)와 10%(개도국)임.
 3. 블루박스는 농업생산액의 5%임.
 4. 무역 왜곡보조 총액의 실적치에서 블루박스는 실적이 없으므로 배제됨.

2.3. 수출경쟁 분야 주요 협상쟁점 및 시사점

수출경쟁은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 식량 원조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수출경쟁 관련 협상은, 수출신용과 식량 원조 규정에서 EU와 미국이 대립하고, 수출국영무역과 관련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대립하는 상황이다. 수출경쟁 분야는 다른 두 분야에 비해 논의 진전이 빠른 분야이다. 2004년 8월에 기본 골격에서 수출보조는 철폐하기로 하였고,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2013년까지 모든 수출보조를 철폐하기로 함

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은 쟁점은 수출신용과 수출 국영무역, 식량 원조 등에 대한 규율 설정이다.

수출보조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감축 후 철폐하되, 이행 기간 중간 시점인 2010년까지 상당 부분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개도국 수출보조의 철폐 시점은 설정하지 않았으나, 선진국처럼 이행 중간 시점까지 상당 부분을 줄인 후에 없애기로 하였다. 이행 중간 시점까지의 감축 수준에 대해서 EU는 50% 이상, 뉴질랜드, 브라질은 7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EU는 양허물량과 양허금액을 감축 기준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한 반면에 미국은 금액 기준만을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 우대 수출보조는 선진국의 수출보조를 완전히 철폐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 지위 아래 우리나라는 개도국 우대 수출보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¹⁶ 우리나라의 수출보조는 과일, 화훼, 채소, 김치에 대해서는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중 일부에 대한 지원과, 축산물의 포장비 지원을 포함한다<표 2-21>.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보험 프로그램 등 수출금융 지원이 수출보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면, 이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감축방식과 관련해 미국은 균등 감축, EU는 이행초기 상당 부분을 감축하는 방식(downpayment)을 주장하고 있다.

수출 국영무역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 왜곡 관행을 없애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철폐 시한과 감축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다. 미국과 EU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의 수출 국영무역 기업을 겨냥하여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출 국영무역 기업의 무역 왜곡 관행은 정부의 재정지원, 우대금리 제공, 가격차별, 가격 통합정산(pooling) 등이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관

¹⁶ 농업협정 9조 4항에 따르면, 개도국 우대 수출보조는 출하, 등급, 기타 부대비용, 국제 운송비 등 수출 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수출보조나, 수출 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를 국내수송 물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이다.

행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독점 방지를 통해 수출 국영무역 기업과 민간 기업이 공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개도국의 수출 국영무역 기업에 대해서는 식량안보, 소비자 가격 안정 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될 전망이다.

회원국들은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 원조는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식량 원조가 잉여 농산물의 처분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하였다.

남은 쟁점은 긴급 상황에 대한 식량 원조(Safe Box for Emergency Food Aid) 규정이다. 긴급 상황에 대한 정의, 긴급 식량 원조의 선언기관 선정 등이 협상 과제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식량 원조 수혜국과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포함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국제기구 등의 수요 평가를 근거로 UN이나 국제적십자연맹 등 국제기구의 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긴급 식량 원조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긴급 식량 원조와 관련된 또 다른 쟁점으로서 유상공여 여부나 현금화, 재수출 여부 등에 대해 회원국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표 2-21. 우리나라 수출보조 지급 현황

단위: 10억 원, 1,000톤

품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과일	1.04 (2.69)	2.09 (6.32)	2.67 (6.33)	3.03 (7.52)	3.05 (8.59)	5.72 (15.71)
화훼	0.14 (0.47)	0.31 (0.66)	0.37 (0.73)	0.58 (0.89)	4.35 (8.64)	5.36 (10.8)
김치	-	-	-	-	2.09 (20.0)	2.01 (21.19)
채소	-	-	-	-	41.91 (4.62)	36.06 (5.61)
축산물	-	-	-	-	0.76 (41.99)	0.38 (27.19)
합계	1.18 (3.16)	2.4 (6.98)	3.04 (7.06)	3.61 (8.41)	14.87 (121.13)	19.08 (110.95)

주: WTO에 통보된 수출보조 현황임. ()안은 물량기준임.

자료: WTO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agric_e.htm](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agric_e.htm)

이외에도 긴급 상황 이외의 식량 원조와 관련해 현물 식량 원조의 철폐 시점과 조건이 논의되고 있다.

3. 협상 중단의 원인과 시사점

3.1. 협상 중단의 원인 분석

DDA 협상이 중단된 원인은 크게 둘로 나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요 회원국 사이에 주고받기식의 타협이 실패한 것이다. 이른바 삼각 문제(triangular issues)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이다.¹⁷ 개도국들을 이끄는 G20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EU가 추가로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U는 쇠고기, 가금육, 낙농제품 등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하여 관세 감축 수준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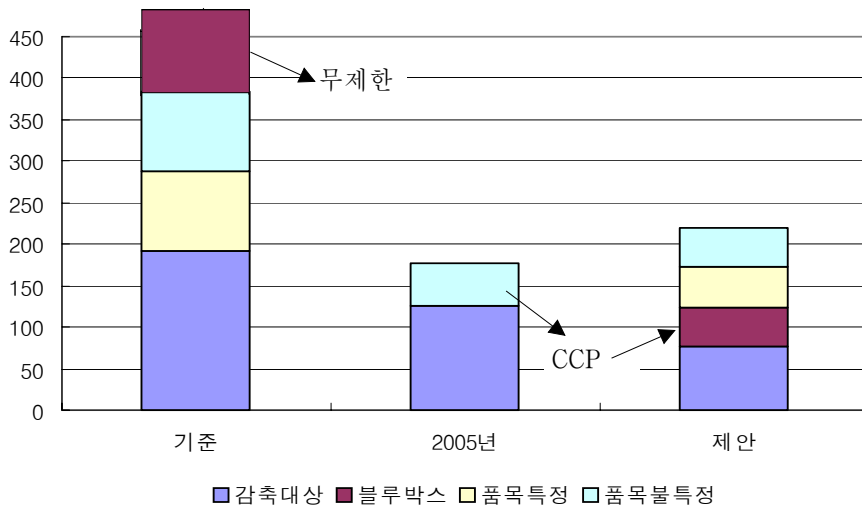
국내보조 분야에서 G20, EU, 농산물 수출국 등은 미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¹⁸ 그러나 미국은 2005년에 집행한 177억 달러보다 많은 220억 달러를 OTDS 상한으로 제시함으로써 보조 감축 의지가 있는지

¹⁷ 삼각 문제는 EU의 시장접근, 미국의 국내보조, 개도국의 비농산물 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등 세 분야에서 추가로 양보가 이루어져야 도하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관측에서 비롯된다.

¹⁸ 미국의 보조가 수출 덤프(dumping)으로 이어져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치며, 많은 개도국들의 수출과 국내농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이 지적된다(Oxfam 2005). 특히 브라질은 1999~2002년에 미국이 지급한 면화 보조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해 승소하였다(WTO 2005f; 2004). 면화 제소는 선진국의 주요 농업보조 수단에 대한 첫 번째 WTO 제소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WTO 평결은 WTO 협상에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농업보조 감축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2-9. 미국의 OTDS 집행액과 감축제안의 비교

단위: 10억 달러



자료: 임송수(2006)

의심을 낳고 있다<그림 2-9>.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에서는 개도국이 수세에 몰렸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관세 상한을 15%까지 낮춰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도국들은 30%를 고집하였다. 협상이 지연되면서 개도국의 제안은 오히려 40%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ICTSD 2006c).

삼각 문제를 해결하려고 WTO 라미(Lamy) 총장은 이른바 “마술숫자 20(magic number 20)”을 제안하였다(TWN 2006). 이 제안은 시장접근 분야에서 G20의 54% 관세 감축률을 채택하고, 미국의 무역 왜곡 국내보조를 200억 달러(\$20 billion)로 고정하며, 개도국의 NAMA 계수(coefficient)는 20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미의 마술숫자 20은 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라미의 제안대로라면 미국은 보조 수준을 줄이지 않아도 되지만 개도국은 공산품 관세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개도국들이 회의적으로 반응하였다(South Bulletin 2006).

개도국들 특히, G33이 SP와 SSM에서 신축성을 나타내지 못한 것도 협

상 진척을 어렵게 한 원인이다. 최소한 전체 세번의 20%까지 SP를 설정하고, SP에 대한 관세 감축은 최대 10%로 한다는 G33 제안은 선진국들과 수출 개도국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앞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가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개도국 시장에서 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도국간(South-South) 무역 확대가 개발에 기여할 것이므로 개도국이 무역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개도국간 무역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2005년에 3%에서 6%로 늘었으며, 연평균 상품무역 성장률은 12.5%로써 선진국간(North-North) 성장률 7%와 선진국과 개도국간(North-South) 성장률 9.8%보다 높았다(OECD 2006).

그러나 개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 규정과 이행 결과에 대한 불만 속에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형평성 회복,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 등에 협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농정개혁으로 무역장벽이 줄어들면 최빈개도국(LDC),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등이 누리던 특혜가 줄어들는 데 대한 우려도 개도국 사이에서 제기되었다(Alexandraki and Lankes 2004).¹⁹

둘째, 미국의 정치일정과 국내사정에 따른 협상 진척의 한계이다. 2005년 홍콩 각료회의가 DDA 협상 시한을 2006년 12월로 설정한 것은 미국 행정부의 무역협상권(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이 2007년 6월로 끝나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다.²⁰ 시한 설정은 긴장감을 높여 집중된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으로 주요 회원국만 참여하는 밀실협상(green room) 위주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개도국들은 이러한 배타적 논의 과정을 비판한다(Kwa 2006).

무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 TPA 연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나쁜 타협보다 타협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no deal is better than a

¹⁹ 개도국 특혜감소(preference erosion)에 직면한 품목은 면화, 설탕, 섬유 등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이 거론되고 있다(Lawrence and Rosito 2006).

²⁰ TPA는 정부가 대외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타결안에 대한 가감 없이 그 채택 여부만을 결정하는 조치이다.

bad deal)’는 의회와 농민단체의 요구는 미국의 협상입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2006년 11월의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은 큰 폭으로 농업보조를 줄이는데 동의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농업보조의 감축은 2007년에 제정될 농업법의 근본적인 수정을 뜻하기 때문이다.²¹

미국의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1994~2004년에 212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줄어들었다(EC 2006).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의 자리를 1999년부터 EU에 내어 주었다. 이 밖에도 브라질(콩, 쇠고기, 가금육), 아르헨티나(밀, 쇠고기, 콩), 호주(밀, 쇠고기) 등 수출경쟁 국가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전체 무역수지가 연간 8,00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DDA 협상에서 수출 확대의 교두보 마련은 미국에 중요한 과제이다. 협상에서 가장 큰 폭의 시장접근 개선안을 내놓고 타협하지 않는 미국의 행태(maximalist)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협상 중단 의 시사점

협상 중단으로 2006년 12월로 설정된 DDA 타결 시한은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첫째, 협상 중단은 UR 협정이 연장 적용됨을 뜻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행 의무는 각각 2000년과 2004년 수준에 고정된다. 그러나 협상이 지연될수록 내재된 감축수준(shadow reduction) 또한 커진다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도 회원국들은 이행할 의무가 없다. 예를 들면, 홍콩 각료회의가 확정된 LDC에 대한 선진국의 무관세와 무쿼터 수입 허용, 2013년까지 농산물 수출보조 폐지 등은 구속력이 없다. UR 때와 마찬가지로 DDA 협상도 일괄타결 방식(single undertaking) 아래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의제가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된

²¹ 미국 농민단체들은 2002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보조수단들을 선호하며, 2007년 농업법에도 같은 조치들이 지속되길 바라고 있다(Young 2005).

것이 아니다. 협상 중단은 또한 회원국들이 협상 과정에서 내놓은 자국 제안과 양보안을 거둬들이는 뜻한다.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각국이 양보한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²²

또한 협상 지연으로 미국의 2007년 농업법 향방이 DDA 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초반부터 활발하게 논의될 새 농업법이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보조 개혁을 담지 못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2007년 농업법에서 미국이 보조를 개혁할 것이란 관측은, ① 면화 보조사건에서 WTO 패널(panel)이 미국의 농업보조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결한 점²³, ② 농업협정 13조 평화조항(peace clause)이 이미 2003년에 종료되어 미국을 상대로 보조 관련 제소가 늘 수 있다는 점(Steinberg and Josling 2003),²⁴ ③ 예산이 부족하고 농업구조가 변해 농정 수단에 대한 일반인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한다.

반면에 미국은 농정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다. DDA 협상에서 모델리티가 제시될 때까지 2002년 농업법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협상제안이 관철된다면 현재 농정 수단의 유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융자율(loan rates)과 목표가격(target prices)의 감축, 우유와 설탕에 대한 가격지지 수준 축소, 새로운 블루박스로 CCP 분류 등이 필요하다(Westhoff 2005).

²² 그러나 신의(good faith)를 감안하면 이미 합의된 사항을 회원국이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

²³ 패널은 면화에 대한 가격보조뿐만 아니라, 직접 지불(direct decoupled payments)도 허용보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보조대상 농지에 과일과 채소를 심지 못하도록 제한한 요건 때문이다. 패널이 직접 지불 자체를 판결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패널의 해석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제소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Inside US Trade 2005).

²⁴ 브라질은 면화보조에 대한 WTO 결정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면서, 쌀, 콩, 옥수수 보조에 관해서도 제소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Inside US Trade 2006).

양자 간 무역자유화(Regional Trade Agreements; RTA 또는 Free Trade Agreements; FTA)가 DDA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협상 중단 후 주요 회원국들은 RTA/FTA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RTA/FTA가 효율 증대, 무역 확장, 외국의 직접투자(FDI) 유치, 정치적 신뢰구축, 손쉬운 접근성 등의 장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현재 GATT와 WTO에 통보된 RTA/FTA는 각각 50개와 147개로 WTO 출범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외교통상부 2006). 우리나라도 3개국(그룹)과 RTA/FTA를 체결하였으며, 2006년 2월부터 미국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표 2-22>.

그러나 RTA/FTA가 DDA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는데, 이는 ① 수출 확대 효과가 양자 간으로 제한되고, ② 선진국에 견주어 협상력이 취약한 개도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③ 보조를 규율하는 효율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표 2-22. 주요국의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국가	FTA 체결국	FTA 협상국(공동연구)
미국	칠레, 싱가포르, 중앙아메리카, 호주, 요르단, 바레인, 이스라엘, 모로코, 페루, 오만	우리나라,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파나마,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에콰도르, FTAA(아메리카), 아세안(ASEAN)
EU	ACP	중앙아메리카, Mercosur, Gulf Cooperation Council(GCC)
인도	스리랑카, 태국, 싱가포르, Mercosur	아세안, GCC, 방글라데시, 모리셔스,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UAE, 아세안, 이집트
중국	태국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칠레, SACU, GCC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우리나라, 태국, 필리핀, 아세안, 인도네시아
한국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일본, EU, Mercosur, 중국

자료: Mehta et. al(2006); 외교통상부(<http://www.fta.go.kr/>)

끝으로, 협상 지연에 따라 우리나라가 고려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우선은 쌀 관세화 유예와 관련된 것이다. 2004년 쌀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고, DDA 협상 결과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에 추가 부담 없이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다(정영일 2006).²⁵ 그러나 문제는 DDA 협상 지연(모델리티 부재)으로 관세 감축률이나 TRQ 증량수준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간에 관세화로 전환하는 실익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다.²⁶ 늘어나는 MMA를 관세화 권한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로 본다면 DDA 협상 지연은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도국 지위에 관한 사항이다. 개도국 지위 유지는 점진적인 농업개혁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협상 수단일 수 있다. UN의 개도국 정의를 빌려 쓰는 WTO가 스스로 개도국 재분류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모델리티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개도국에 대한 차별된 규율 설정도 예견할 수 있다. 이행계획서(C/S)에 관한 양자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UN이 자기선언 방식으로 개도국 지위를 인정해 왔더라도 객관적인 경제지표가 감안된다. 예를 들면, UN 경제사회 이사회의 개발정책위원회(ECOSOC/CDP)는 LCD 졸업 기준으로 1인당 GDP, 삶의 질 지수(Augmented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APQLI), 경제취약성 지수(Economic Vulnerability Index; EVI) 등을 사용한다(임송수, 김상현 2003).²⁷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지표는 개선된다. 예

²⁵ 관세화 유예의 대가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으로 2014년까지 408,700톤(기준 소비량의 7.96%)을 수입하는 것이다.

²⁶ 관세화로 전환할 때에 DDA 협상 결과가 반영된다. 먼저, 관세율은 UR 협정에 따라 산출하고, DDA 감축률을 적용한다. TRQ는 DDA 협상 결과와 전환 당시 물량 가운데 더 높은 수준을 채택한다.

²⁷ APQLI는 어린이 사망률, 칼로리 섭취량, 초중등교육 등록률, 성인 문맹률 등으로 산출된다. EVI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GDP 비중, 공산품 수출집약 지수, 농업 생산 불안정지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불안정 지수 등으로 구성된다(UNCTAD 2006).

를 들면, DDA가 출범한 2001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명목 기준으로 10,160달러였으나, 2005년에는 16,291달러로 세계 29위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06). 경제지표의 개선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논리 개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개도국으로서 경제(GDP) 규모가 큰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과 함께 우리나라도 농정개혁에 대한 더 큰 책임과 의무 분담을 WTO로부터 요구받을 수 있다.²⁸

개도국 세분화에 대한 WTO 논의가 없더라도 이미 선진국들은 거대 개도국인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이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²⁸ 2005년에 세계 GDP 순위에서 중국은 6위, 인도 10위, 브라질 11위, 한국 12위, 멕시코 13위 등을 기록하였다(통계청 2006).

1. 시장접근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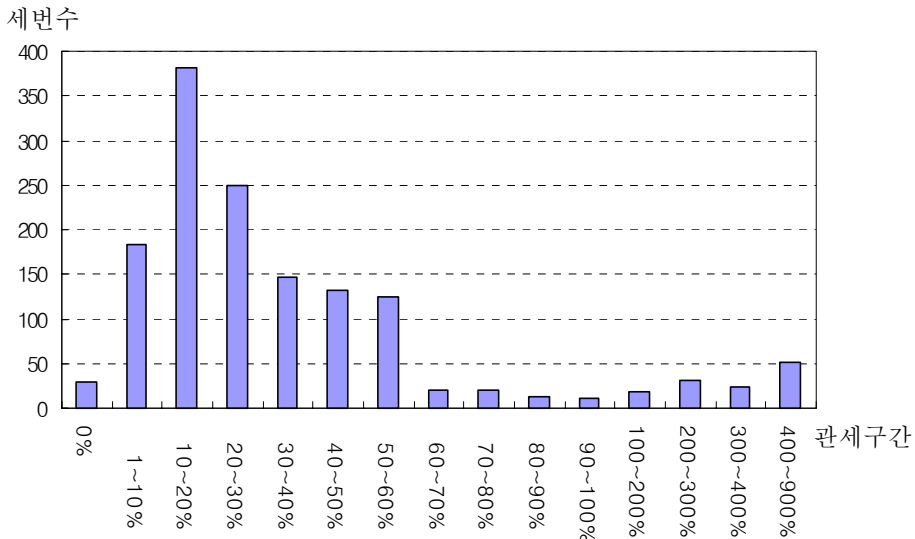
모델리티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미국, EU, G20 등 주요국의 제안을 기초로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²⁹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된 내용 중심으로, 요소별 효과를 계측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 가정을 세웠다.

1.1. 관세구조 개황

우리나라의 2004년 양허 관세율(이하 ‘초기 관세율’)은 평균 63.2%이다. HS 10 단위로 1,452개 세번(tariff lines)이 있으며, 이 가운데 관세화 유예 중인 쌀이 16개, 영세율 품목이 26개이다. 초기 관세율이 100%를 넘는 품목 비중은 8.8%이고 최고 관세율은 887%이다<그림 3-1>.

²⁹ 우리나라가 속한 수입국 모임 G10의 관세 감축 제안은 시나리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G10 제안이 협상에서 주목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감 품목의 비중을 설정하는 데에는 G10 제안도 고려하였다.

그림 3-1.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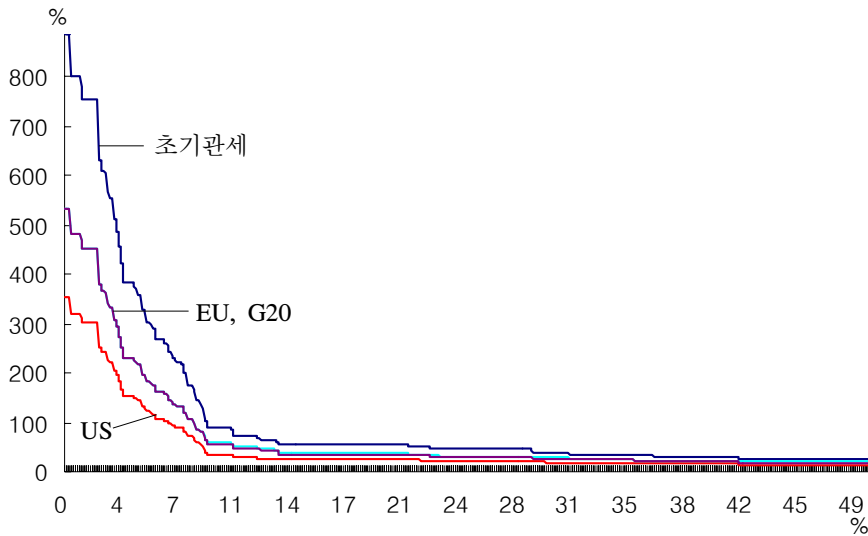
1.2. 개도국 시나리오 분석

1.2.1. 기준 감축 시나리오

초기 관세율에 US, G20, EU이 제안한 감축률을 적용하면 최종 이행 연도의 관세율 평균(이하 ‘최종 관세율’)은 각각 28%, 41%, 40%로 나타난다 <표 3-1>. 초기 관세율 63%와 견주면 미국 제안에 따른 관세 감축률이 56%로 나타나 가장 높다<그림 3-2>. G20과 EU 제안에 의한 감축률은 각각 35%와 37%로, G20 감축률이 2% 포인트 크다.

감축 후 전체 세번의 표준편차는 54(US), 81(G20, EU)로 초기 관세율의 표준편차인 136보다 낮다. 미국 제안이 관세분포를 가장 줄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2. 개도국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준 감축



- 주: 1.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 감축 시나리오의 결과임.
2. 관세 감축 효과를 쉽게 비교하려고 세번 중 관세율 상위 50%(초기 관세율 27~887% 구간)만을 나타냄.

미국 제안 아래에서는 높은 관세율의 감축 폭이 특히 큰데, 최고 초기 관세율 887%(매니옥)가 355%로 줄어든다. G20과 EU 제안에 따른 감축 후 최고 관세율은 532%이다. G20과 EU 사이의 감축률 차이는 초기 관세율 135% 이하 구간에서 나타나며, 그 차이는 품목별로 최대 2.2% 포인트이다.

표 3-1.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기준 감축

시나리오	민감품목 (개)	특별품목 (개)	US (%)	G20 (%)	EU (%)	비 고
1-1-1	0	0	28.0 (54)	40.9 (81)	39.9 (81)	기준 감축

주: 괄호는 전체 세번의 표준편차임.

12.2. 민감품목 시나리오

전체 세번의 1.5%, 6%, 10%를 민감품목의 비율로 가정하고, 민감품목을 선정하면 <표 3-2>와 같다.³⁰

표 3-2. 개도국 시나리오 가정: 민감품목의 세번 수

민감품목	쇠고기	낙농제품	고추	인삼	마늘	사과	양파	참깨	콩	포도	돼지	합계
1.5%	11	6	5	-	-	-	-	-	-	-	-	22
6%	20	44	6	4	4	1	-	-	-	-	-	87
10%	21	44	7	30	6	5	4	4	3	4	8	145

주: 민감품목은 서진교 등(2005a), 성진근(2006), 이상준 등(2006), 임송수 등(2003a), 한두봉(2006) 등을 참조해 선정함.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률은 일반 품목의 1/2로 가정하고, 민감품목의 선정 비율별 최종 관세율을 산출하면 최저 29%, 최고 44%로 나타난다<표 3-3>. 이를 감축률로 환산하면 최저 30%, 최고 55%이다. 미국 제안 아래 민감품목을 선정하면, 기준 감축률보다 최대 6% 포인트 덜 감축하는 효과를 얻는다. G20과 EU 제안 아래 줄어드는 감축률은 각각 5% 포인트로 같다.

미국 제안 아래 최종 관세율은 민감품목의 비율에 따라 4.7% 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관세 감축 구간이 일치하는 G20과 EU 제안 사이에 최종 관세율의 차이는 각각 3.09% 포인트와 3.13% 포인트로 비슷하다.

³⁰ 민감품목의 선정 비율은 선진국 기준으로 미국이 전체 세번의 1%, EU가 4%, G10이 최소 10% 등을 제안하였는데, 개도국 가정 아래 2/3 감축의무 규정을 적용하였다. 다만 G10이 제안한 비율은 협상동향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선진국 10%, 개도국 8%로 낮춰 설정하였다.

감축 후 전체 세번의 표준편차는 민감품목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커진다. 그만큼 관세 감축이 완화되면서 관세 분포는 평균으로부터 더 확산된다. 미국 제안 아래 표준편차의 변화가 가장 크다.

민감품목의 비율 1% 순증은 최종 관세율을 제안별로 최저 0.31% 포인트, 최대 0.47% 포인트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이제부터 이를 ‘한계효과’로 부른다). 민감품목의 비율이 1.5% 이하인 구간에서 한계효과는 0.27~0.41% 포인트, 1.5~6% 구간에서 0.21~0.32% 포인트, 6~10% 구간에서 0.44~0.67%로 나타났다. 구간에 따른 한계효과의 차이는 선정된 민감품목의 초기 관세율(각각 73%, 65%, 73%)과 제안별 구간 감축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³¹

민감품목의 비율 6% 아래 제안별 감축된 관세율과 초기 관세율을 견주면 <그림 3-3>과 같다.³²

표 3-3.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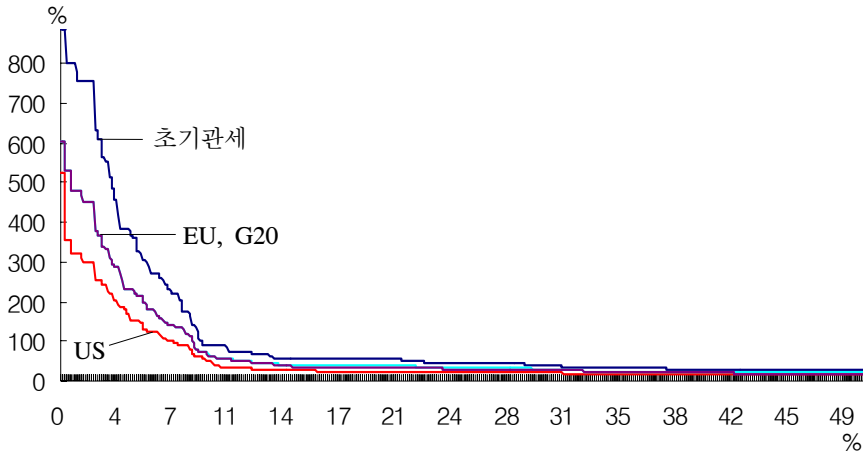
시나리오	민감품목 (개)	특별품목 (개)	US (%)	G20 (%)	EU (%)	비 고
1-1-2	22	0	28.6 (55)	41.3 (82)	40.4 (82)	민감품목 1.5%
1-1-3	87	0	30.0 (60)	42.2 (85)	41.3 (85)	민감품목 6%
1-1-4	145	0	32.7 (72)	44.0 (92)	43.1 (93)	민감품목 10%

주: 괄호는 전체 세번의 표준편차임.

³¹ 양허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많이 포함시킬수록 그 구간의 한계효과는 커진다.

³² 민감품목의 효과를 예시하려고 민감품목 비율 6%만 제시하였다.

그림 3-3.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의 비율 6%



주: 관세 감축 효과를 쉽게 비교하려고 세번 중 관세율 상위 50%(초기 관세율 27~887% 구간)만을 나타냄.

초기 관세율이 754%인 인삼(홍삼류)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하면, 감축한 관세율은 528%(미국 제안)와 603%(G20과 EU 제안)가 되어, 기준 감축의 결과(시나리오 1-1-1)보다 높다. 반면에 일반 품목으로 분류한 매니옥의 관세율은 기준 감축 결과인 355%와 같다. 이는 민감품목을 활용하면 고관세 품목의 관세 감축률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뜻한다.

1.2.3. 특별품목(SP) 시나리오

전체 세번의 6%, 10%, 20%를 특별품목으로 선정하면 <표 3-4>와 같다. 쌀은 관세화 유예 품목이나 언젠가는 관세화로 전환될 것이므로 특별품목으로 가정하였다.³³

³³ 특별품목에 관한 제안은 미국이 5개 세번, G33이 세번의 20%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별품목은 개도국을 위한, 개도국이 선호하는 조치이므로 미국 제안보다 큰 수준으로 합의되리라 예상된다. 또한 민감품목의 비율과 어느 정도 상관되리라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민감품목에 관한 미국 제안수준보다 높을 것이란

G33 제안에 따라 특별품목은 셋으로 나뉜다. SP1은 전체 특별품목 가운데 65%를 차지하며, 관세 감축에서 면제된다. 전체 특별품목의 25%인 SP2에는 5% 감축률이 적용된다. SP3은 나머지 10%로 감축률 10%가 적용된다.

특별품목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는 <표 3-5>와 같다. 최종 관세율은 최저 35%(SP 6%의 미국 제안), 최고 51%(SP 20%의 G20 제안)로 나타났다. 감축률로 환산하면 최저 20%, 최고 44%이다. 민감품목의 결과보다 최종 관

표 3-4. 개도국 시나리오 가정: SP 세번 수

비율	분류	쌀	쇠고기	낙농제품	고추	인삼	마늘	감귤	사과	양파	참깨	콩	포도	돼지고기	기타품목	합계
6%	SP1	16	11	13	5	4	4	3	1	-	-	-	-	-	-	57
	SP2	-	-	9		11	-	2	-	-	-	-	-	-	-	22
	SP3	-	-	-	1	4	-	1	1	-	-	-	2	-	-	9
	소계	16	11	22	6	19	4	6	2	-	-	-	2	-	-	88
10%	SP1	16	17	22	6	19	4	6	2	-	-	-	2	-	-	94
	SP2	-	3	3	1	8	2	2	3	4	4	3	3	-	-	36
	SP3	-	-	-	-	2	-	-	-	-	-	-	-	13	-	15
	소계	16	20	25	7	29	6	8	5	4	4	3	5	13	-	145
20%	SP1	16	20	46	7	27	6	8	5	4	4	3	5	23	15	189
	SP2	-	-	-	-	-	-	-	-	-	-	1	-	-	72	73
	SP3	-	-	-	-	-	-	-	-	-	-	-	-	-	29	29
	소계	16	20	46	7	27	6	8	5	4	4	4	5	23	116	291

주: 1. 위 SP는 민감품목 없이 선정하는 것이므로 이재옥 등(2005)과, 민감품목을 제안한 서진교 등(2005a), 성진근(2006), 이상준 등(2006), 임송수 등(2003a), 한두봉(2006) 등을 참조함.

2. SP별 세번 수의 소수점은 반올림 처리함.

예측 아래 특별품목의 비율은 6%, 10%, 20%로 가정하였다.

세율이 4~5% 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은 민감품목에 비해 특별품목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그 감축률은 낮기 때문이다.

특별품목 비율에 따른 최종 관세율의 차이는 미국 제안이 8.2% 포인트로써 G20의 5.1% 포인트와 EU의 5.4% 포인트보다 높다. 이는 민감품목의 경우처럼 미국이 제안한 감축률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특별품목의 한계효과는 제안별로 최저 0.49% 포인트, 최고 0.78% 포인트이다. 특별품목 비율의 구간별 한계효과는 6% 이하에서 0.78~1.22% 포인트, 6~10%에서 0.32~0.47% 포인트, 10~20%에서 0.39~0.63% 포인트로 추정된다.

특별품목과 민감품목 사이의 대우(관세 감축률) 차이로 인해 특별품목의 한계효과는 민감품목의 경우보다 높다. 또한 특별품목의 비율이 커질수록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품목이 특별품목의 비율이 높은 구간에 많이 포함되도록 가정한 결과이다. 어떤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선정하느냐가 한계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특별품목의 비율 10% 아래 제안별로 감축된 관세율과 초기 관세율을 비교하면 <그림 3-4>와 같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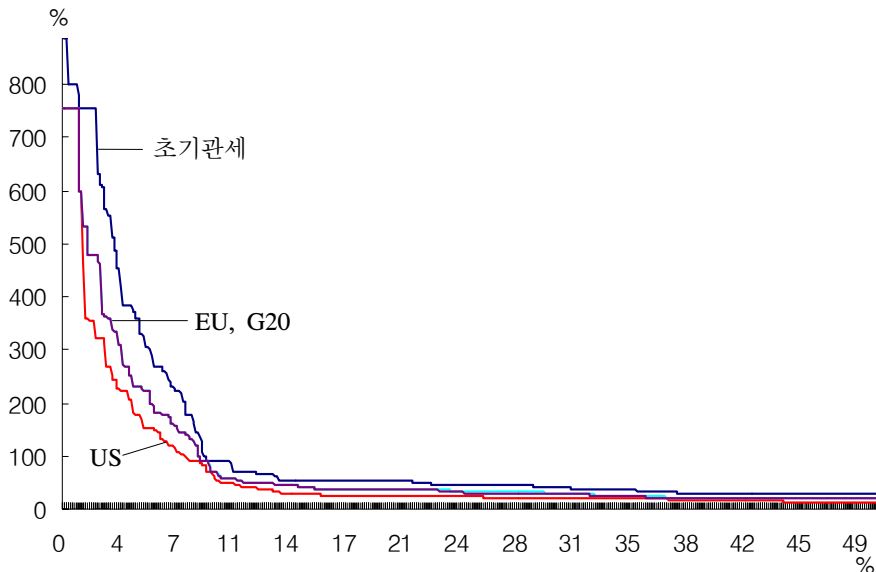
표 3-5.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특별품목(SP)

시나리오	민감품목 (개)	특별품목 (개)	US (%)	G20 (%)	EU (%)	비고
1-2-1	0	87	35.3 (88)	45.6 (101)	44.6 (101)	SP 6%
1-2-2	0	145	37.1 (94)	46.8 (105)	46.0 (105)	SP 10%
1-2-3	0	290	43.5 (106)	50.7 (113)	50.0 (113)	SP 20%

주: 괄호는 전체 세변의 표준편차임.

³⁴ SP에 따른 관세 감축 효과를 설명하려고 SP 10%만을 예시하기로 한다.

그림 3-4.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SP 비율 10%



주: 관세 감축 효과를 쉽게 비교하려고 세번 중 관세율 상위 50%(초기 관세율 27~887% 구간)만을 나타냄.

SP1로 분류된 인삼(홍삼류)이 754%로 가장 높다. 관세 감축에서 면제되어 초기 관세율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품목은 SP2로 분류된 참깨로 초기 관세율이 630%에서 598%로 줄었다.

전체 세번의 감축 후 표준편차는 94(US)와 105(G20과 EU)로 민감품목의 비율 10% 아래 72(US), 92(G20), 93(EU)보다 크다. 상대적으로 낮은 특별품목에 대한 감축률이 최종 관세율과 관세 분포 모두 덜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12.4. 민감품목과 특별품목 시나리오

협상 동향을 볼 때, 개도국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모두 사용하리라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비율은 각각 6%와 10%로 가정한다.³⁵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선정하면 <표 3-6>과 같다.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는 <표 3-7>과 같다. 최종 관세율은 미국 제안이 38%, G20과 EU 제안이 각각 48%와 47%이다. 이에 해당하는 감축률은 각각 39%, 25%, 26%이다. 특별품목의 비율 10%(시나리오 1-2-2)의 결과와 비교할 때 최종 관세율은 최대 1.2% 포인트(미국 제안)밖에 차이가 없다. 표준 편차도 2% 포인트가 세 제안 중에서 가장 큰 격차이다. 이는 특별품목 아래 민감품목의 감축률 완화와 관세 분포의 유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한계효과의 분석은 위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한다. 민감품목의 한계효과는 0.20% 포인트(미국 제안)와 0.13% 포인트(G20과 EU 제안)이다. 이는 민감품목만을 감안한 결과치(시나리오 1-1-1~1-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관세가 높은 품목들이 특별품목에 먼저 포함되어 민감품목에 의한 추가 효과가 미미한 까닭이다.

표 3-6. 개도국 시나리오 가정: 민감품목과 SP 세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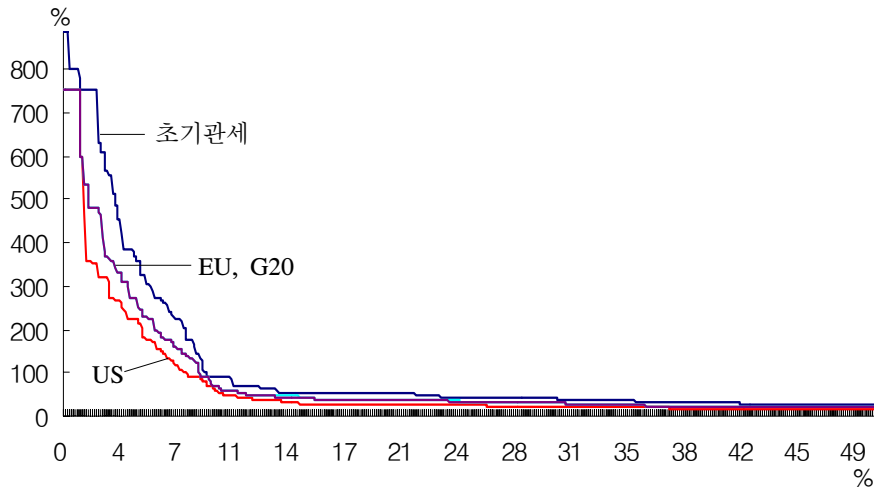
비율	분류	쌀	쇠 고 기	낙 농 제 품	고 추	인 삼	마 늘	감 귤	사 과	양 과	참 깨	콩	포 도	돼 지 고 기	기 타 품 목	합계
민감 6%	-	-	-	19	-	-	-	-	-	-	-	1	-	9	58	87
특별 10%	SP1	16	17	22	6	19	4	6	2	-	-	-	2	-	-	94
	SP2	-	3	5	1	6	2	2	3	4	4	3	3	-	-	36
	SP3	-	-	-	-	2	-	-	-	-	-	-	-	13	-	15
	소계	16	20	27	8	27	6	8	5	4	4	3	5	13	-	145

주: 1.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은 서진교 등(2005a), 성진근(2006), 이상준 등(2006), 이재욱 등(2005), 임송수 등(2003a), 한두봉(2006) 등을 참조로 선정함.

2. SP별 세번 수의 소수점은 반올림 처리함.

³⁵ 앞서 협상 동향에서 밝혔듯이, 특히 특별품목에 관한 비율이 어느 수준으로 합의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비율로서 각각 6%와 10%로 가정한 이 시나리오는 한 예시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림 3-5.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6%, 특별품목 10%



주: 관세 감축 효과를 쉽게 비교하려고 세번 중 관세율 상위 50%(초기 관세율 27~887 구간)만을 나타냄.

제안별로 감축된 관세율을 초기 관세율과 비교하면 <그림 3-5>와 같다. 특별품목 비율이 10%인 시나리오 1-2-2와 감축 효과가 비슷하므로 감축 후 관세구조도 거의 같다. 다만, 민감품목에 포함된 일부 고관세 품목의 영향으로 두 시나리오 사이에 관세 격차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초기 관세율이 514%인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는 민감품목에 포함되어 205%(미국 제안)로 산출되지만, SP 10% 아래에서는 360%(미국 제안)이다.

표 3-7.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과 특별품목

시나리오	민감품목 (개)	특별품목 (개)	US (%)	G20 (%)	EU (%)	비고
1-3-1	87	145	38.3 (96)	47.6 (106)	46.8 (106)	민감품목 6% 특별품목 10%

주: 괄호는 전체 세번의 표준편차임.

12.5. 관세 상한 시나리오

우리나라를 비롯해 G10, ACP 등 일부 회원국들은 관세 상한 설정을 반대하지만, 미국과 EU, G20 등 많은 국가들이 관세 상한 도입을 제안한 형편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에 관세 상한은 상당히 불리한 규정일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부분별 시나리오에 관세 상한을 덧붙여 그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개도국에 적용되는 관세 상한은 150%로 가정한다.

가. 민감품목

민감품목의 시나리오 1-1-1~1-1-4에다 관세 상한 150%를 적용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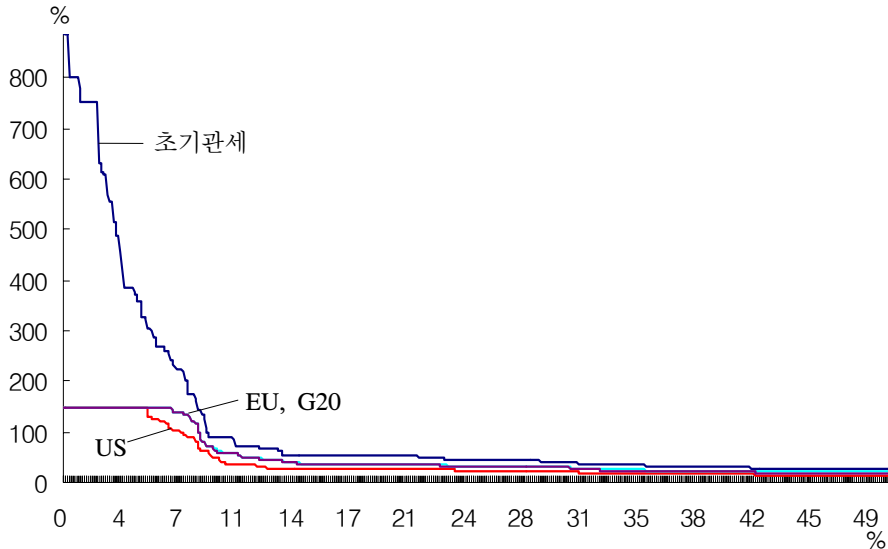
최종 관세율은 최고 31%(G20 제안), 최저 24%(미국 제안)이다. 이를 감축률로 환산하면 각각 51%와 63%이다. 관세 상한의 도입으로 관세가 큰 폭으로 주는 결과이다. 표준편차도 관세 상한이 없을 때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 또한 고관세들이 관세 상한에 묶이기 때문이다.

표 3-8.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관세 상한 150%

시나리오	민감품목 (개)	특별품목 (개)	US (%)	G20 (%)	EU (%)	비 고
1-4-1	0	0	23.4 (33)	30.2 (37)	29.3 (37)	민감품목 0%, 관세 상한
1-4-2	22	0	23.9 (33)	30.4 (37)	29.5 (37)	민감품목 1.5%, 관세 상한
1-4-3	87	0	24.4 (33)	30.7 (37)	29.8 (37)	민감품목 6%, 관세 상한
1-4-4	145	0	24.9 (33)	30.9 (37)	30.0 (37)	민감품목 10%, 관세 상한

주: 괄호는 전체 세번의 표준편차임.

그림 3-6.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6%, 관세 상한 150%



주: 관세 감축 효과를 쉽게 비교하려고 세번 중 관세율 상위 50%(초기 관세율 27~887% 구간)만을 나타냄.

시나리오 1-4-3 아래 감축 후 제안별 세번의 구조를 초기 관세율과 비교하면 <그림 3-6>과 같다. 세 제안에서 모두 최종 관세율의 최고치는 150%이다. 감축률과 구간 차이로 G20과 EU 제안 아래 감축 후 관세율이 150%인 품목은 미국 제안보다 11개(전체 세번의 1.2%) 많다.

관세 상한 아래 민감품목의 한계효과는 최고 0.15% 포인트, 최저 0.07% 포인트로 관세 상한이 없을 때의 1/4~1/3에 불과하다. 관세 상한이 적용되는 한 민감품목의 비율을 10%까지 늘려도 최종 관세율은 많아야 1.5% 포인트 늘 뿐이다.

나. 특별품목

특별품목 시나리오 1-2-1~1-2-3에다 관세 상한을 추가한 결과는 <표 3-9>와 같다.³⁶ 최종 관세율은 최고 46%(G20 제안), 최저 32%(미국 제안)

이다. 이에 상응하는 관세 감축률은 각각 49%와 27%이다. 특별품목에는 관세 상한이 면제된다고 가정하므로 민감품목의 경우처럼 감축 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표준편차의 감소 폭도 적다.

관세 상한 아래 특별품목의 한계효과는 최고 0.89% 포인트, 최저 0.78% 포인트로 나타난다. 고관세 품목을 특별품목에 많이 포함시킬수록 감축 폭은 줄기 때문이다. 관세 상한이 없을 때보다 한계효과의 크기는 많게는 0.29% 포인트까지 오히려 높다. 관세 상한에서라면 특별품목의 감축률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뜻이다. 민감품목과 달리 특별품목에 관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나리오 1-4-1~1-4-4와 반대되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시나리오 1-5-2에 따라 감축한 후, 제안별 관세 구조를 초기 관세율과 비교하면 <그림 3-7>과 같다. 세 제안 모두에서 특별품목으로 가정한 인삼(홍삼류)이 초기 관세율과 같은 754%를 유지하였다. 관세 상한에 구속된, 관세율 150%인 세번 수는 미국 제안에서 43개, G20과 EU 제안에서 각각 64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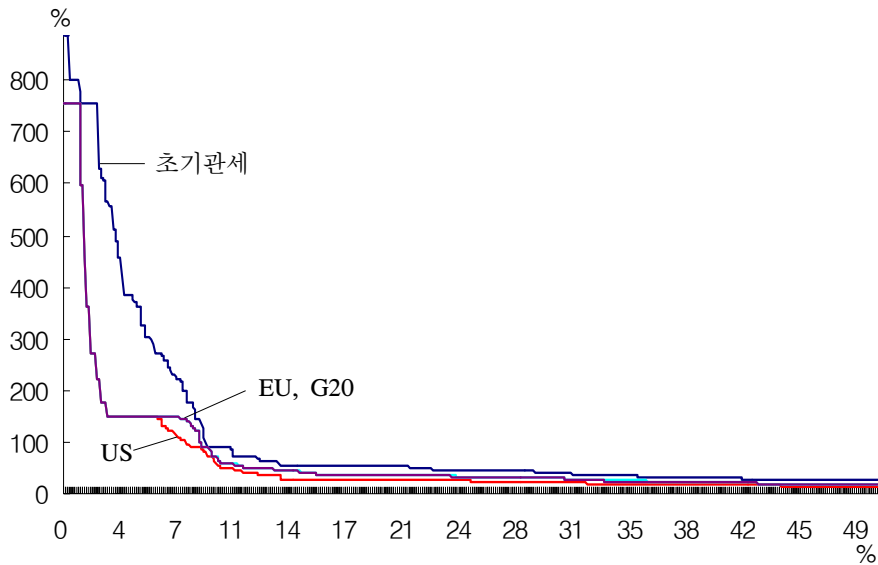
표 3-9.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특별품목(SP), 관세 상한 150%

시나리오	민감품목 (개)	특별품목 (개)	US (%)	G20 (%)	EU (%)	비 고
1-5-1	0	87	32.3 (82)	38.2 (82)	37.3 (82)	SP 6%, 관세 상한
1-5-2	0	145	34.4 (88)	40.0 (89)	39.2 (89)	SP 10%, 관세 상한
1-5-3	0	290	41.3 (102)	45.9 (102)	45.1 (102)	SP 20%, 관세 상한

주: 괄호는 전체 세번의 표준편차임.

³⁶ 특별품목에는 관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림 3-7.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특별품목 10%, 관세 상한 150%



주: 관세 감축 효과를 쉽게 비교하려고 세번 중 관세율 상위 50%(초기 관세율 27~887% 구간)만을 나타냄.

다. 민감품목과 특별품목

민감품목의 비율 6%와 특별품목의 비율 10%에다 관세 상한을 부여하면 <표 3-10>과 같다. 최종 관세율은 G20 제안이 40%로 가장 높고, 미국 제안이 35%로 가장 낮다. 이는 초기 관세율에 비해 각각 36%와 45%로 준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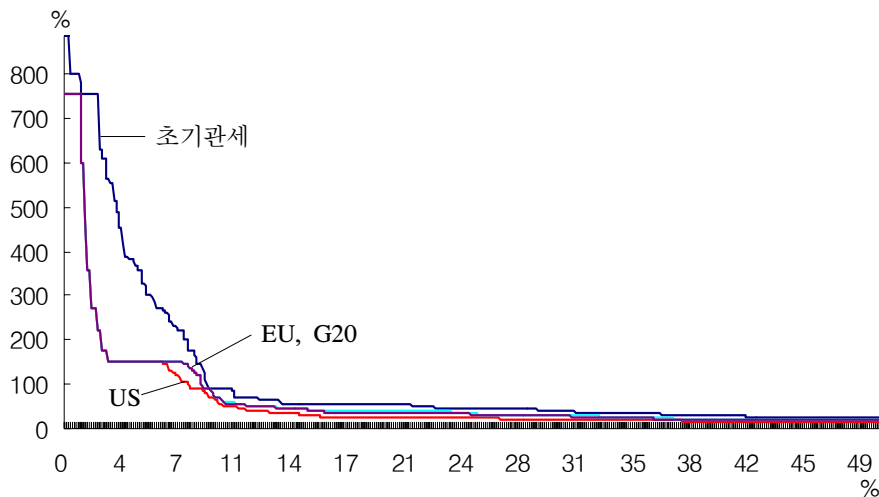
특별품목 10%에다 관세 상한을 적용한 시나리오 1-5-2보다 최종 관세율은 최대 0.3% 포인트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관세 상한 아래에서 민감품목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표준편차도 민감품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시나리오 1-5-2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3-8>에서 보듯이 감축 후 관세구조도 비슷하다.

표 3-10.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6%, SP 10%, 관세 상한 150%

시나리오	민감품목 (개)	특별품목 (개)	US (%)	G20 (%)	EU (%)	비 고
1-6-1	87	145	34.7 (88)	40.2 (89)	39.3 (89)	민감품목 6%, 특별품목 10%, 관세 상한

주: 괄호는 전체 세번의 표준편차임.

그림 3-8.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6%, SP 10%, 관세 상한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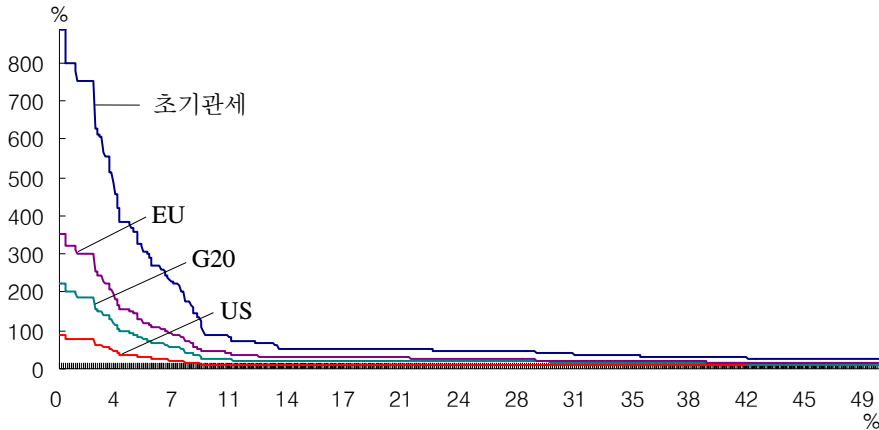
주: 관세 감축 효과를 쉽게 비교하려고 세번 중 관세율 상위 50%(초기 관세율 27~887% 구간)만을 나타냄.

1.3. 선진국 시나리오 분석

1.3.1. 기준 감축 시나리오

US, G20, EU가 제안한 감축률에 따르면 최종 관세율은 각각 10%, 20%, 30%로 나온다<표 3-11>. G20 제안은 미국과 EU 제안 사이에 정확하게

그림 3-9. 선진국 시나리오 결과: 기준 감축



주: 관세 감축 효과를 쉽게 비교하기 위해 세번 중 관세율 상위 50%(초기 관세율 27~887% 구간)만을 나타냄.

중간 값을 내놓는다.³⁷ 초기 관세율과 비교하면, 관세율이 각각 84%, 68%, 53%나 감소한 결과이다.

표준편차도 미국 제안대로라면 130에서 13으로 급락한다. 초기 관세율 가운데 가장 높은 매니옥 887%가 89%로 떨어지는 까닭이다<그림 3-9>. 반면에 EU의 제안에 따라 감축하면 최고 관세율은 355%가 된다. 미국과 EU 제안 사이에 최대 266% 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이다.

표 3-11. 선진국 시나리오 결과: 기준 감축

시나리오	민감품목 (개)	특별품목 (개)	US (%)	G20 (%)	EU (%)	비 고
2-1-1	0	0	10.3 (13)	20.4 (33)	29.9 (54)	기준 감축

주: 괄호는 전체 세번의 표준편차임.

³⁷ 선진국 시나리오에서는 G20과 EU의 관세 감축 구간과 구간별 감축률이 뚜렷하게 다르다.

13.2. 민감품목 시나리오

민감품목의 비율을 1%, 4%, 8%로 상정하고 품목을 선정하면 <표 3-12>와 같다.

민감품목이 전체 세번의 1%인 경우에는 1,452의 1%에 해당하는 15개 세번만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쌀 16개 세번 중 15개만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민감품목의 수가 전체 세번의 4%, 8%로 늘어날 때에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품목 수를 늘리고, 품목 내에서는 신선 또는 1차 가공된 세번을 우선 선정하였다.

민감품목의 비율별 최종 관세율을 구한 결과가 <표 3-13>이다.³⁸ 최종 관세율은 최저 10%(미국 제안), 최고 34%(EU 제안)이다. 이를 감축률로 환산하면, 각각 84%와 46%이며, G20 제안에 기초한 감축률은 59~68%에 속한다. 최종 관세율이 기준 감축 시나리오의 결과와 같은 것은 관세화 유예가 적용되는 쌀 16개 품목 가운데 15개를 민감품목으로 가정한 까닭이다.³⁹

표 3-12. 선진국 시나리오 가정: 민감품목의 세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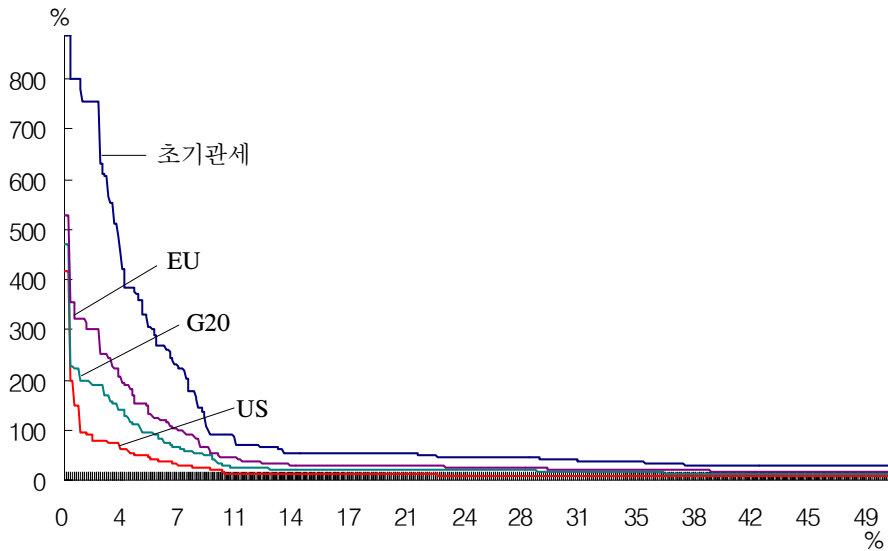
민감 품목	쌀	쇠고 기	낙농 제품	고추	인삼	마늘	감귤	사과	양파	참깨	콩	포도	합계
1%	15	-	-	-	-	-	-	-	-	-	-	-	15
4%	16	11	13	5	4	4	4	1	-	-	-	-	58
8%	16	20	23	7	19	6	9	4	4	3	2	3	116

- 주: 1. 민감품목은 서진교 등(2005a), 성진근(2006), 이상준 등(2006), 임송수 등(2003a), 한두봉(2006) 등을 참조해 선정함.
2. 쌀은 관세화 유예 품목이나, 언젠가 관세화로 전환될 것이므로 민감품목으로 가정함.

³⁸ 민감품목의 대우는 개도국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일반 감축률의 1/2로 가정한다.

³⁹ 쌀에는 양허된 관세율이 없으므로 감축률과 무관하다.

그림 3-10. 선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주: 관세 감축 효과를 쉽게 비교하려고 세번 중 관세율 상위 50%(초기 관세율 27~887% 구간)만을 나타냄.

민감품목의 비율이 커지면서 표준편차도 함께 증가한다. 민간 품목의 활용 덕으로 감축 후 최고 관세율은 415%(미국 제안), 471%(G20 제안), 528%(EU 제안)로 인삼류(홍삼)가 차지한다<그림 3-10>.

표 3-13. 선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시나리오	민감품목 (개)	US (%)	G20 (%)	EU (%)	비 고
2-1-2	15	10.3 (13)	20.4 (33)	29.9 (54)	민감품목 1%
2-1-3	58	13.0 (29)	22.6 (42)	31.7 (60)	민감품목 4%
2-1-4	116	17.1 (48)	26.0 (59)	34.4 (72)	민감품목 8%

주: 괄호는 전체 세번의 표준편차임.

민감품목의 비율 1%의 증가가 최종 관세율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US, G20, EU의 제안 아래 각각 0.85% 포인트, 0.70% 포인트, 0.55% 포인트다. 감축률이 클수록 민감품목의 한계효과가 커짐을 나타낸다. 구간별로 보면, 4% 이하 구간이 0.58~0.89% 포인트, 4~8% 구간이 0.67~1.02% 포인트이다. 민감품목의 비율이 높은 구간에서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인삼, 참깨 등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품목들이 8% 비율 아래 민감품목으로 선정된 결과이다. 또한 민감품목의 한계효과가 개도국 시나리오 1-1-2~1-1-4의 결과보다 높은 것은 선진국에 대한 감축률이 큰 탓이다.

13.3. 관세 상한 시나리오

관세 상한 100%를 적용하면 최종 관세율은 <표 3-14>와 같다. 최종 관세율은 최저 10%(미국 제안), 최고 24%(EU 제안)에 이른다. 이는 초기 관세율에서 최저 63%, 최고 84% 감축된 결과이다. 민감품목의 비율 1% 가정 아래 미국 제안을 적용하면, 관세 상한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축률은 84%가 된다. 이는 미국이 제안한 감축률이 충분히 커, 관세 상한 100%가 구속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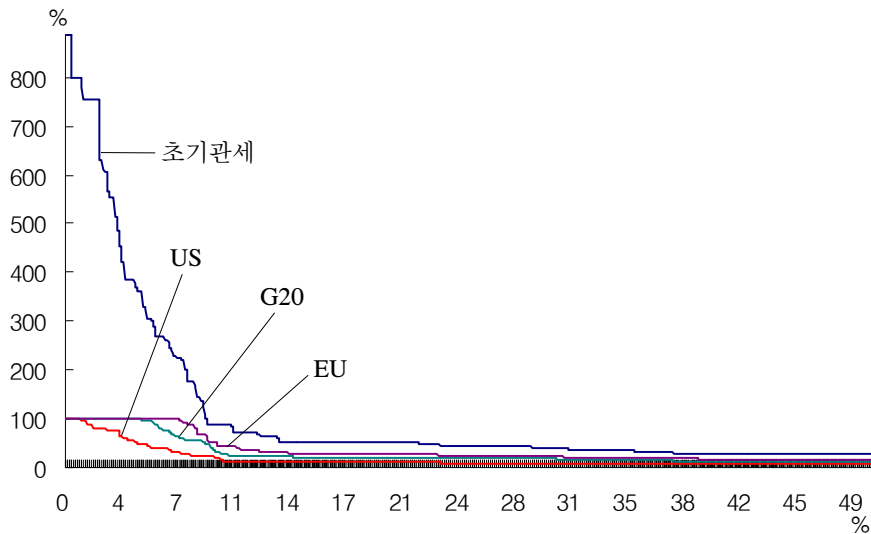
표 3-14. 선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관세 상한 100%

시나리오	민감품목 (개)	US (%)	G20 (%)	EU (%)	비 고
2-2-1	15	10.3 (13)	17.8 (21)	22.8 (24)	민감품목 1%, 관세 상한
2-2-2	58	11.7 (16)	18.6 (23)	23.2 (25)	민감품목 4%, 관세 상한
2-2-3	116	12.7 (19)	19.1 (23)	23.6 (25)	민감품목 8%, 관세 상한

주: 괄호는 전체 세번의 표준편차임.

⁴⁰ 민감품목의 비율 1%부터 관세 상한이 조금씩 구속력을 발휘한다.

그림 3-11. 선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4%, 관세 상한 100%



주: 관세 감축 효과를 쉽게 비교하려고 세번 중 관세율 상위 50%(초기 관세율 27~887% 구간)만을 나타냄.

민감품목의 비율 4% 가정 아래 관세 상한이 구속력을 발휘하는 품목 수는 US, G20, EU 제안별로 각각 13개, 67개, 101개이다<그림 3-11>. 관세 감축률과 관세 상한의 구속력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관세 상한 아래 민감품목의 한계효과는 US, G20, EU 제안별로 각각 0.10% 포인트, 0.16% 포인트, 0.30% 포인트이다. 이는 관세 상한이 없는 시나리오 2-1-2~2-1-4에 견주어 1/6~1/3에 불과한 규모다. 민감품목에도 관세 상한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으므로, 고관세 민감품목들이 관세 상한에 구속된 결과이다. 다만, 앞서 지적한 대로 민감품목의 비율 1% 이하 구간에서 한계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1.4.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s; MCS)

1.4.1. 시뮬레이션 설정

2001년 DDA 농업협상이 시작된 후에 회원국들은 다양한 협상 제안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한 시나리오 분석은 우리나라의 최종 관세율이 개도국 가정 아래 24~51%, 선진국 가정 아래 10~34%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회원국 사이에 모델리티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 수백 개의 시나리오 설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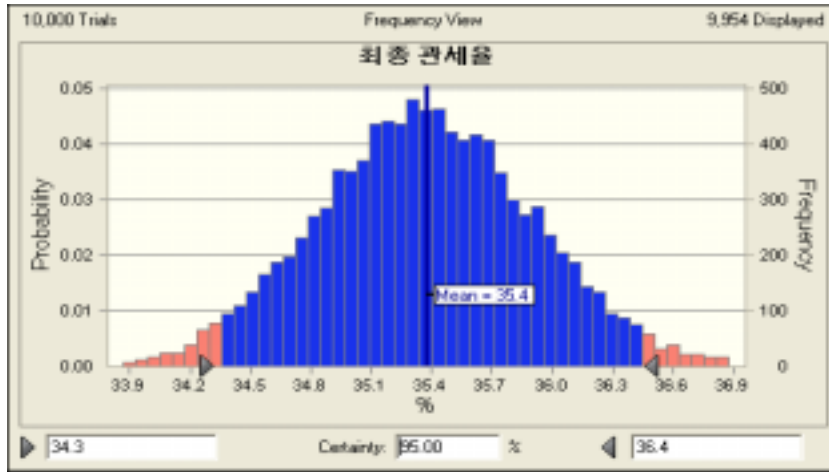
관세 감축률과 관련해 미국과 EU 제안 사이에 놓인 G20 제안을 타협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다.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선 협상 변수들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다.

모델리티 변수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MCS는 확률 요소들에 대한 실험을 통해 의사 결정을 돕는 수단이다. MCS는 모델리티 변수들의 확률분포를 가정하고, 적절한 난수의 집합을 할당한 후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실험하는 것이다(문 조나단 2005). 앞에서 제시한 시나리오 분석은 모델리티의 확률요소들이 같은 확률분포(uniform probability distribution)를 가진다는 가정 아래 영향을 추정한 것이다. 개별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이 같다고 가정한 결과이다. 반면에 MCS는 시나리오 분석에 의해 제시된 결과를 일정한 확률분포 형태를 지닌 것으로 가정하고, 반복된 실험을 통해 협상 결과(영향)를 예측한다.

먼저 세번별 평균 관세율은 삼각형(triangle) 확률분포를 지닌 ‘가정(assumption)’으로 설정한다. ‘예측변수(forecast)’는 최종 관세율(산출된 개별 관세율의 평균)이다. 개도국 지위 아래 확률분포의 최소치는 민감품목의 비율 1.5%와 관세 상한 150%, 최고치는 관세 상한 없이 특별품목의 비율 20%,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견되는 중간치는 관세 상한 아래 민감품목의 비율 6%와 특별품목의 비율 10% 등으로 가정한다.⁴¹

⁴¹ 관세 감축률과 구간은 미국(최소치), G20(최대치), G20(중간)의 제안을 따른다.

그림 3-12. 시뮬레이션 결과: 개도국



선진국 지위 아래 가정의 확률분포에서 최소치는 민감품목의 비율 1%와 관세 상한 100%, 최고치는 민감품목의 비율 4%와 관세 상한 100%, 중간치는 민감품목의 비율 4%와 관세 상한 100% 등으로 가정한다.⁴² 시뮬레이션은 MS 엑셀(Excel) 환경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모형을 10,000회씩 반복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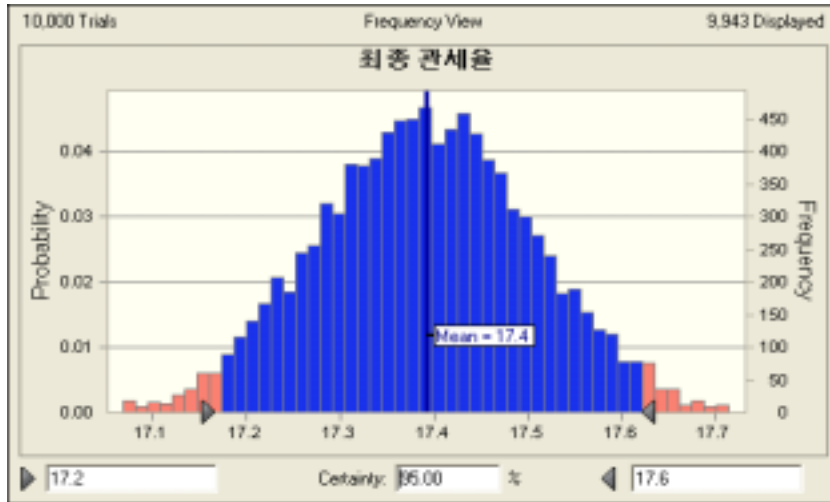
1.4.2.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개도국 지위 아래 최종 관세율은 35.4%이다<그림 3-12>. 이는 초기 관세율에서 44%나 감축된 수준이다. 최종 관세율의 95% 신뢰구간은 34.3~36.4%이다.

이는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국의 협상 제안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최종 관세율이 35% 안팎, 또는 감축률 44% 정도가 될 것이란 예측이다. 감축 규모를 완화하려면 관세 상한의 설정을 배제하는 일이 중요하다. 충분한 수준으로 특별품목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이다. 그러나 특별품목의 비율을 시뮬레이션에 반영된 10% 이상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⁴² 관세 감축률과 구간은 미국(최소치), EU(최대치), G20(중간)의 제안을 따른다.

그림 3-13. 시뮬레이션 결과: 선진국



선진국 가정 아래 최종 관세율은 17.4%로 나타난다<그림 3-13>. 초기 관세율과 견주어 73%나 감소한 결과이다. 산출된 최종 관세율의 95% 신뢰구간은 17.2~17.6%이다. 이 결과는 만약 우리나라가 DDA에서 선진국으로 재분류되면 큰 폭의 관세율 감축이 불가피함을 잘 나타낸다.

2. 국내보조 분야

2.1. 시나리오 설정

시나리오는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선진국 가정 아래 감축률을 이행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감축률은 미국, EU, G20 제안을 근거로 <표 3-15>와 같이 가정한다. AMS와 OTDS 감축은 하위 구간의 감축률에 따른다고 가정

한다. 개도국의 감축률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으면, 선진국 하위구간 감축률의 2/3를 적용한다.

최소 허용보조(DM)는 선진국 가정 아래 감축률 50~80%를 적용한다. 이는 현행 농업생산액 대비 10%(현재 개도국 아래 양허수준)인 최소 허용보조 상한이 선진국으로 전환되면서 1~2.5%로 감축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개도국 가정 아래 최소 허용보조는 30~50% 감축되어, 현행 농업생산액의 10%로 설정된 상한이 5~7%로 감축된다고 가정한다.

블루박스(BB)의 한도는 농업생산액의 5%에서 2.5%로 감축된다고 가정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에 동일한 감축 기준이 적용된다.

표 3-15. 국내보조 분야의 시나리오 설정

구분	개도국			선진국		
	시나리오 I (미국 제안)	시나리오 II (EU 제안)	시나리오 III (G20 제안)	시나리오 I (미국 제안)	시나리오 II (EU 제안)	시나리오 III (G20 제안)
AMS	25%	33%	40%	37%	50%	60%
DM	7%	5%	5%	2.5%	1%	1%
BB	2.5%	2.5%	2.5%	2.5%	2.5%	2.5%
OTDS	20%	33%	47%	31%	50%	70%

2.2. 개도국 시나리오 분석

개도국 가정 아래 초기 OTDS 수준(감축 기준)은 9조 1,096억 원이다. 이는 AMS 양허수준 1조 4,900억 원, 최소 허용보조 6조 957억 원, 블루박스 1조 5,239억 원의 합과 같다<표 3-16>.

시나리오 I(미국 제안)에서 OTDS(7조 2,877억 원)는 개별 감축률이 적용된 보조의 합(6조 1,464억 원)보다 크다. 이에 따라 OTDS 감축률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국내보조는 보조별 감축에만 제약된다.

시나리오Ⅱ와 Ⅲ에서도 OTDS 감축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다만 시나리오 Ⅲ 아래 OTDS와 개별보조 합계 사이의 격차가 1,243억 원으로 작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시나리오 Ⅱ(EU 제안)는 가장 큰 격차인 1조 2,953억 원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협상에서 개별보조 감축률에 우선순위를 두되, G20 제안이 채택되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두 값의 격차가 작아 개별 감축률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보조 합계로 산출한 보조 감축률은 시나리오 I 은 33%, 시나리오 II 는 47%, 시나리오 III은 48%이다. G20 제안이 가장 큰 감축 결과를 낳으며, G20 제안과 EU 제안 사이의 값 차이는 1,04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단위: 억원

구분	감축기준	시나리오 I (미국 제안)	시나리오 II (EU 제안)	시나리오 III (G20 제안)
OTDS		72,877	61,034	48,281
AMS①		11,175	9,983	8,940
DM②		42,670	30,478	30,478
	품목특정	21,335	15,239	15,239
	품목불특정	21,335	15,239	15,239
BB③		7,620	7,620	7,620
개별보조 합계 (①+②+③)		61,464	48,081	47,038

주: DM과 BB의 감축 기준은 1995~2000년 평균 농업생산액 대비 10%와 5%임.

2.3. 선진국 시나리오 분석

OTDS 감축 기준은 개도국 지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므로 개도국 시나리오와 같은 9조 1,096억 원이다<표 3-17>.

감축 후 OTDS는 2조 7,329억~6조 2,856억 원으로 개도국 시나리오의 결과보다 최대 2조 952억 원(G20 제안)이 적다. 개별 보조의 합계는 1조 9,675억~3조 2,246억 원으로 감축 후 OTDS보다 적다. 이에 따라 개도국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OTDS 감축률은 구속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개별보조 합계의 감축률은 시나리오 I 65%, 시나리오 II 77%, 시나리오 III 78%이다. 개도국 감축률과 비교하면 선진국 감축률은 EU 제안과 G20 제안 아래 각각 30% 포인트, 미국 제안 아래 32% 포인트 높은 결과이다. 개도국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G20 제안이 가장 큰 폭의 보조 감축률을 요구한다.

표 3-17. 선진국 시나리오 결과

단위: 억원

구분	감축기준	시나리오 I (미국 제안)	시나리오 II (EU 제안)	시나리오 III (G20 제안)
OTDS	91,096	62,856	45,548	27,329
AMS①	14,900	9,387	7,450	5,960
DM②	60,957	15,239	6,096	6,096
	품목특정	30,478	7,620	3,048
	품목불특정	30,478	7,620	3,048
BB③	15,239	7,620	7,620	7,620
개별보조 합계 (①+②+③)	91,096	32,246	21,165	19,675

주: DM과 BB의 감축 기준은 1995~2000년 평균 농업생산액의 10%와 5%임.

2.4.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CS)

2.4.1. 시뮬레이션 설정

시뮬레이션의 예측변수는 각각 AMS, 최소 허용보조(DM), 블루박스(BB)와, 이들의 합계인 무역 왜곡보조 총액(OTDS)이다. 개도국 지위 아래 보조별 중간치를 가정으로 설정하고, 그 삼각형 확률분포를 제시하면 <표 3-18>과 같다. 선진국의 확률분포는 <표 3-19>이다.

표 3-18. 보조별 확률분포 가정: 개도국

국내 보조	최소치	중간치	최대치
AMS (양허수준 대비 감축률)	40%	33%	25%
DM (농업생산액 비중)	2.5%	5%	7%
BB (농업생산액 비중)	1%	2.5%	5%

주: 1. 농업생산액은 1995~2000년 평균임.

2. 최소 허용보조의 최대치 7%은 협상에 제시된 제안보다는 분석을 위해 가정한 것임.

표 3-19. 보조별 확률분포 가정: 선진국

국내 보조	최소치	중간치	최대치
AMS (양허수준 대비 감축률)	60%	50%	37%
DM (농업생산액 비중)	1%	2%	2.5%
BB (농업생산액 비중)	1%	2.5%	5%

주: 농업생산액은 1995~2000년 평균임.

2.4.2. 시뮬레이션 결과

개도국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3-14>와 같다. 모의실험 결과 AMS는 1조 25억 원, 최소 허용보조는 2조 9,518억 원, 블루박스는 8,6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합계로 산출되는 OTDS는 4조 8,166억 원이다.⁴³

보조별로 95%의 신뢰구간도 제시하였다.⁴⁴ 이 가운데 규모가 큰 최소 허용보조의 신뢰구간이 가장 넓다. OTDS의 95% 신뢰구간은 3조 5,909억 원부터 5조 9,893억 원이다.

OTDS가 그 구성 요소인 AMS, 최소 허용보조, 블루박스 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모형에서 전체 민감도는, ① OTDS가 보조 요소들에 대한 가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 ② 보조 요소 자체의 불확실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민감도 분석 결과는 <그림 3-15>와 같다. 보조 규모가 크고 95% 신뢰구간이 넓은 최소 허용보조가 OTDS 변동의 83%를 설명한다. 최소 허용보조에 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AMS가 OTDS의 변동을 설명하는 부분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AMS 변동에 OTDS가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블루박스에 관한 OTDS의 민감도도 16%로 크지 않다.

⁴³ 시뮬레이션 결과는 확률분포를 근거로 반복된 실험에서 얻는 것이므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마다 조금씩 결과가 다를 수 있다.

⁴⁴ 가정한 확률분포에 근거하면 보조별 협상 결과가 산출된 신뢰구간에 속할 확률이 95%라는 뜻이다.

그림 3-14. 무역 왜곡보조에 관한 모의실험 결과: 개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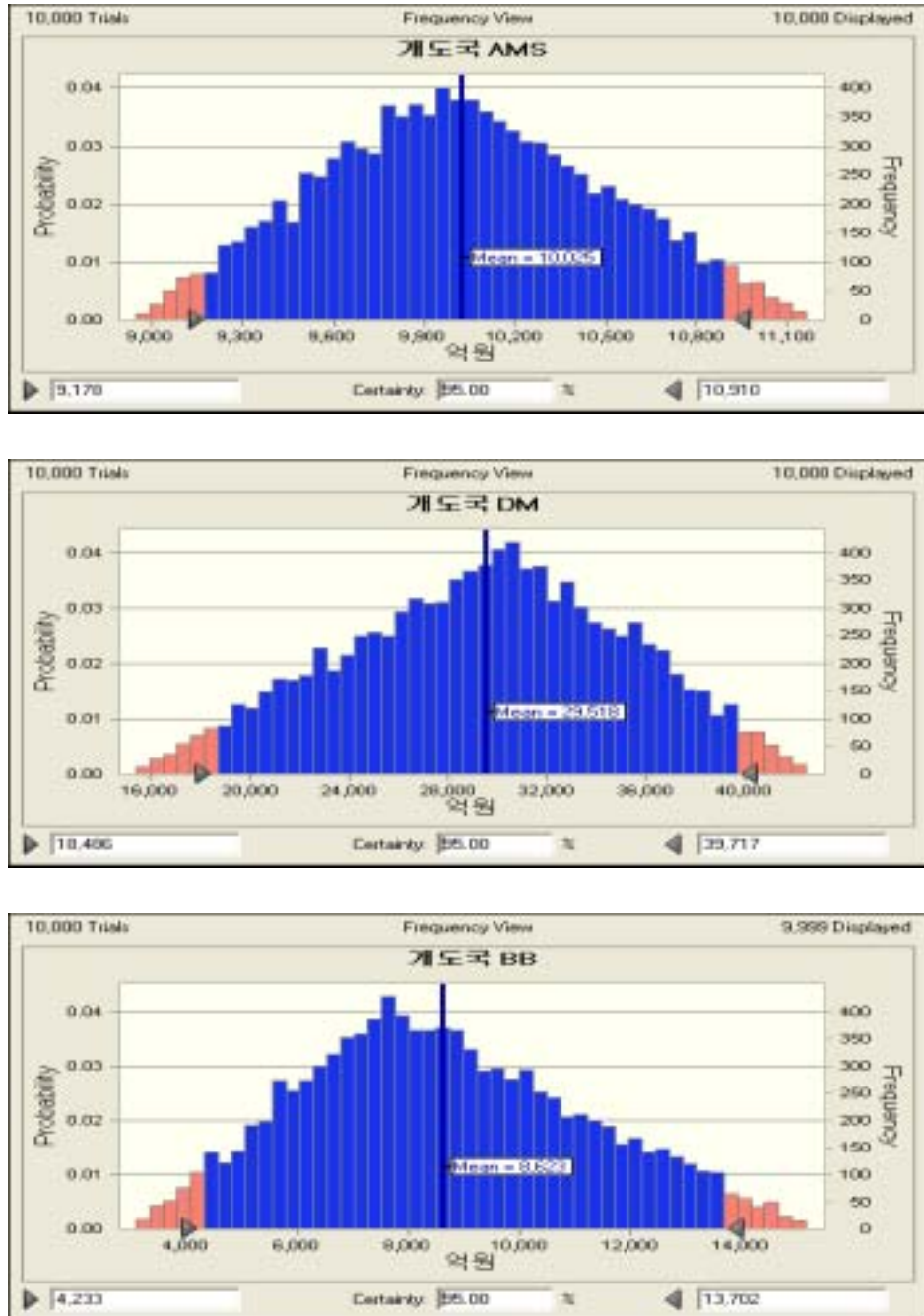


그림 3-14. 무역 왜곡보조에 관한 모의실험 결과: 개도국(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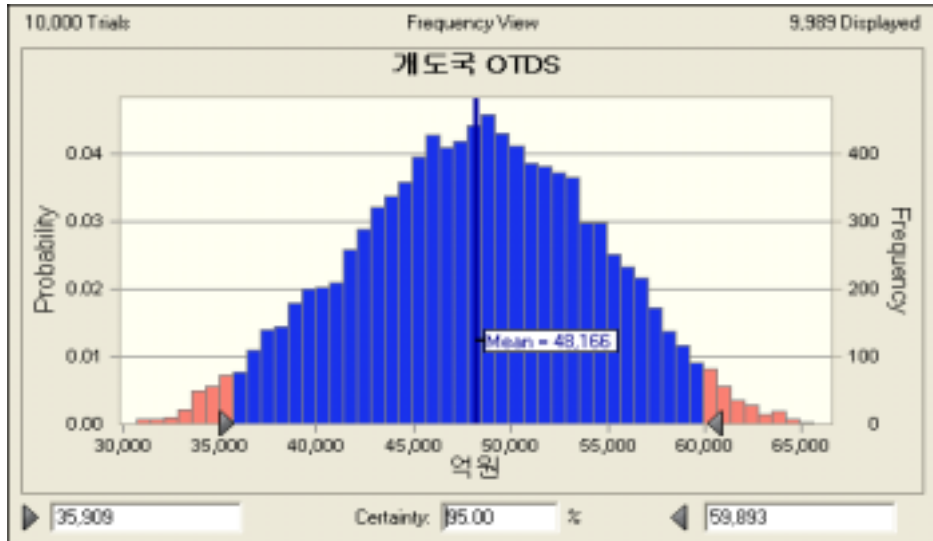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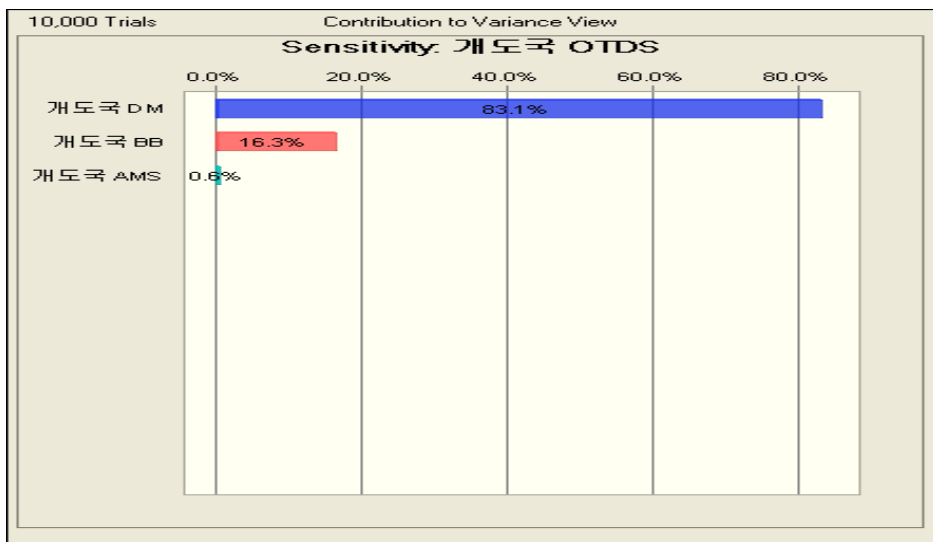


그림 3-15. OTDS의 민감도 분석: 개도국



선진국 가정 아래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3-16>과 같다. 평균값으로 AMS는 7,590억 원, 최소 허용보조는 1조 1,180억 원, 블루박스는 8,670억 원이다. 이들의 합으로 산출된 OTDS 평균은 2조 7,420억 원이다.

보조별로는 95% 신뢰구간에서 블루박스가 4,265억 원과 1조 3,755억 원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크다. OTDS의 95% 신뢰구간은 2조 1,236억 원과 3조 3,841억 원 사이로 6,184억 원의 격차를 보인다.

민감도 분석 결과는 <그림 3-17>과 같다. 보조 요소 가운데 신뢰구간의 폭이 가장 큰 블루박스가 OTDS 변동의 63%를 설명한다. 개도국의 경우와 달리 선진국의 가정 아래에서는 OTDS가 블루박스의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소 허용보조의 설명력은 33%, AMS는 4%이다. AMS에 대한 OTDS의 민감도는 개도국의 경우보다 커졌으나, AMS의 불확실성에 의한 OTDS의 변동 정도는 여전히 가장 낮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정 아래 얻은 시뮬레이션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표 3-20>과 같다. OTDS의 격차는 2조 원이 넘는다. 개도국 지위로 OTDS 2조 원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이다. OTDS 격차의 88%가 최소 허용보조에서 비롯된다. 개도국이나 선진국 사이에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률 차이가 OTDS의 규모를 사실상 결정하는 것이다.

블루박스 감축률은 개도국과 선진국에서 모두 같게 가정했으므로 그 규모의 차이는 없다. 표에서 나온 47억 원의 차이는 시뮬레이션 반복에 따른 오차이다.

AMS의 격차는 2,435억 원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정 아래 공통되게 OTDS가 AMS의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으나, AMS가 두 OTDS 보조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변수로 작용한다.

그림 3-16. 무역 왜곡보조에 관한 모의실험 결과: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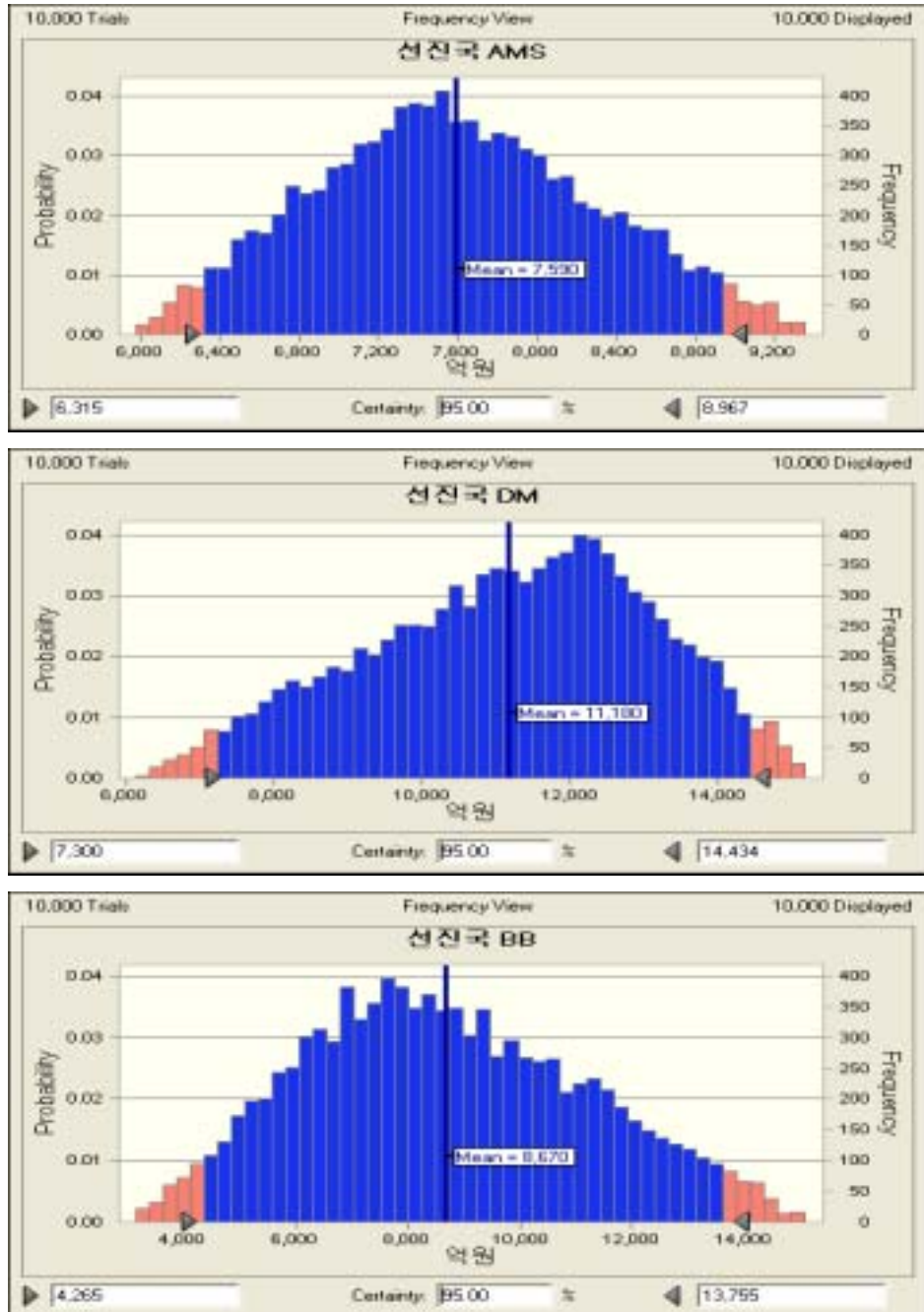


그림 3-16. 무역 왜곡보조에 관한 모의실험 결과: 선진국(계속)



그림 3-17. OTDS의 민감도 분석: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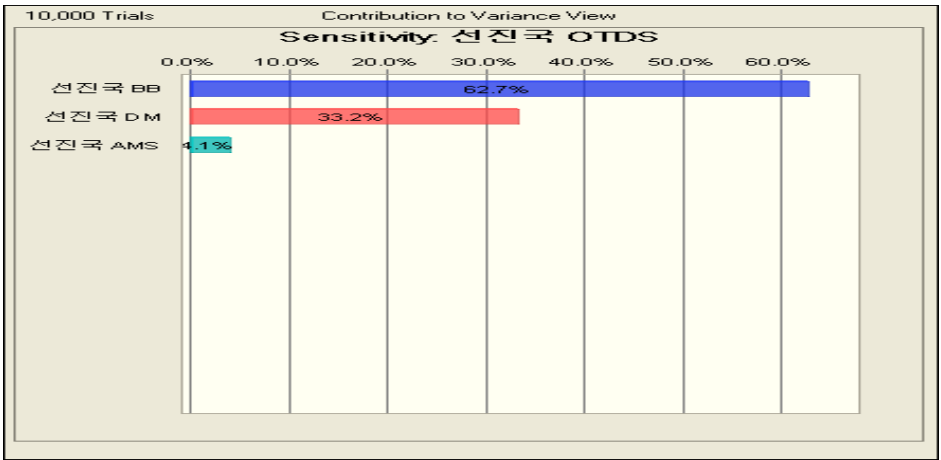


표 3-20. 개도국과 선진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단위: 억 원

분류	AMS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	OTDS
개도국	10,025	29,518	8,623	48,166
선진국	7,590	11,180	8,670	27,420
격 차	2,435	18,338	-47	20,746

1. 모델리티 협상 전망

협상은 당사자들의 다양하고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하는 과정이다. 2005년 12월 현재 WTO 회원국 수는 149개국이며, 10년이 지나면 170개국에 다다를 것이다.⁴⁵ 회원국 수가 늘고 의제가 복잡해지면서 회원국 간, 의제 간, 양허의 균형(balance of concession)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있다.⁴⁶ 개도국의 참여와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도국 우대 조치, 선진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국내보조 감축 등이 강조되고 있다.⁴⁷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더 이상 내줄 것이 많지 않다는 점도 협상 진척을 방해하는 요인이다(Schott 2004).

DDA 협상은 2006년 4월과 7월의 모델리티 협상 타결 시한을 거둬 지키지 못하였고, 10월 현재 그 논의가 점정 중단된 상태이다. 2006년 9월 초 G20 각료회의, 9월 말 케언스 그룹 각료회의와 미국과 EU의 양자회담 등

⁴⁵ 회원국 심사를 신청한 국가들을 감안한 예측이다.

⁴⁶ 협상 상대국들이 서로 내놓은 양허안 사이의 균형을 말한다. 양허의 균형은 WTO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 호혜주의(reciprocity)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일부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산물 시장을 개도국에 더 개방하는 대신에 개도국들이 투자규정(rule on investment)과 같은 새로운 의제를 수용하도록 요구하면서, 양허의 균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⁴⁷ WTO 회원국의 2/3 이상이 개도국이며, 신규 회원국들 대부분이 개도국이다.

을 통해 많은 회원국들은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자세한 협상 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낙관적인 전망은 2006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2007년 4월까지 논의를 진척시켜 모델리티를 타결한다는 것이다. 이 일정이라면 2007년 7월에 종료되는 미국 행정부의 TPA 연장도 가능하다.⁴⁸ 협상 타결의 선결과제는 G6 사이에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일이다. 또한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비관적인 전망은 미국의 부시(Bush) 대통령이 물러나는 2008년까지 협상이 지연되다가 2009년에 가서야 모델리티가 타결되는 것이다. 그러면 협정 이행은 2010년 후부터나 가능하다. 2008년부터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존 일정보다 2년 가량 늦춰지는 결과이다.

1.1. 시장접근 분야

일반 품목에 관한 관세 구간과 감축률은 G20 제안 수준을 시작점으로 타협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에 적용되는 감축률은 G20 제안과 EU 제안이 서로 비슷하다. 선진국의 경우 G20 제안은 미국 제안과 EU 제안의 중간 수준에 해당된다.

민감품목의 수는 선진국 4% 미만, 개도국 6% 미만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민감품목에 관한 대우로서 관세 감축률은 일반 감축률의 50% 안팎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⁴⁹ TRQ 확대 기준으로는 소비량과 수입량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TRQ 증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수출국의 요구에 따라 최근 소비량 기준이 유력하다.

특별품목(SP)의 수와 대우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어 예견하기 어

⁴⁸ 지금까지는 TPA 연장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⁴⁹ 구간별 접근방식(tiered approach)에 따라 민감품목의 감축률은 일반 감축률의 일정 범위(x%에서 y% 사이)로 제시될 수도 있다.

렵다. 다만, 농업협상 팔코너(Falconer) 의장의 말처럼, G33이 제안한 전체 세번의 20%보다 상당히 줄 것으로 전망된다.⁵⁰ 감축률도 G33이 제시한 수준보다 클 것이다. 다양한 개도국 여건을 고려할 때 협상에서 특별품목의 선정 지표들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시된 기준, 또는 예시된 지표 안에서 개도국 스스로 특별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모든 농산물이 특별 수입구제조치(SSM) 대상일 수는 없다. SSM 대상은 경제 및 사회경제 측면의 중요도(예: 시장 안정, 구조전환 촉진, 농촌개발 등)에 의해 정당화할 수 있는 품목에 한정될 것이다. SSM 발동은 물량 기준으로는 SSG보다 낮은 수준, 가격 기준으로는 SSG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물레이션을 통해 전망하면, 우리나라의 최종 관세율은 개도국일 경우 35% 안팎, 선진국일 경우 17% 안팎이 될 것이다. 최종 관세율에는 특히 관세 상한과 특별품목의 수와 대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국내보조 분야

AMS 양허수준에 내재된 허수(water)로 인해 개도국의 AMS가 30% 이상 감축될 전망이다.⁵¹ 이는 허수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 불리하다. 품목별로는 AMS 상한이 설정된다면 쌀 위주로 AMS를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쌀 이외 품목에 대해 AMS 조치를 도입하지 못할 것이다.

⁵⁰ 2006년 10월에 노르웨이, 캐나다, 칠레, 인도네시아, 케냐, 뉴질랜드 등 6개국이 새로이 G6를 결성하였다. 인도네시아와 케냐는 G33을, 노르웨이는 G10을 대변하는 구성이다. 새로운 G6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등에 특별품목 2~6%만 인정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WTD 2006b).

⁵¹ UR 협상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AMS를 설정하면서 실제 사용 수준(현행 AMS)보다 크게 한도(양허 AMS)를 정하였다. 그 격차를 허수라 부른다. 참고로, 관세율에서 허수는 양허 관세율과 실행 관세율의 차이를 말한다.

무역 왜곡보조로서 최소 허용보조는 50% 이상 감축될 전망이다. 다만 생계 농업이 많은 일부 개도국(예: 인도)에 감축 우대가 허용될 것이다.

블루박스 상한은 농업생산액 대비 2% 안팎이 유력하다. 미국의 농정조치를 겨냥하여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의 보전율, 품목별 상한 등의 추가 규율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OTDS는 허용된 최소 허용보조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최대 40% 가까이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OTDS가 품목의 보조 전환(box shift)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면 위와 같은 감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허용보조는 UR 농업협정의 틀(부속서 2)을 유지하면서 일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될 전망이다. 다만, 비연계 소득지불, 투자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 지불 등의 기준기간을 고정하고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등이 부가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러면 생산 여건, 소득수준의 변화에 대응한 신축적인 조치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개도국 가정 아래 우리나라의 OTDS는 4조 8,166억 원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금까지 협상에서 제시된 전체 OTDS에 대한 최대 감축률 47% 또는 4조 8,281억 원보다 낮다. 이에 따라 OTDS 자체의 감축은 구속력이 없게 된다. AMS, 최소 허용보조, 블루박스 등의 개별 감축률만 적용하면 된다.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인 2조 7,420억 원은 OTDS 최대 감축률 70% 또는 1조 8,185억 원보다 크다. 이에 따라 전체 OTDS 감축이 구속력을 지니며, OTDS를 구성하는 개별 보조의 합계는 OTDS 감축 상한 안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OTDS 감축률 55%에서 OTDS 전체 감축과 보조별 감축의 합산 결과가 일치한다.

2. 모델리티 협상 전략⁵²

2.1. 시장접근 분야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관세 상한 150% 부과가 민감품목 6%와 특별품목 10%를 포함하더라도 관세 상한이 없는 경우보다 최종 관세율을 최대 8% 포인트 낮춤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관세율 감축을 최소화하려면 관세 상한 배제에 우선순위를 뒤야 할 것이다. 관세 상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① 관세 상한의 상향 조정(150% 이상), ②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상한 면제, ③ 관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품목 비중의 확대 등 차선택을 강구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듯이, 특별품목의 비율 확대가 최종 관세율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최대 0.78% 포인트로 민감품목의 한계효과인 최대 0.47% 포인트보다 높다. 따라서 충분한 수의 특별품목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관세 상한 아래 민감품목의 한계효과는 관세 상한이 없는 경우보다 최대 1/4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에 특별품목의 한계효과는 0.89% 포인트까지 오히려 늘었다. 따라서 관세 상한이 설정되더라도 민감품목보다 특별품목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관세 상한 100%의 부과는 민감품목의 한계효과를 최대 0.85% 포인트에서 0.24% 포인트까지 떨어뜨려 민감품목 비율의 확대 효과를 희석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세 상한의 설정으로 인한 음(-)의 영향을 상쇄하려면 ① 관세 상한의 상향 조정, ②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상한 면제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⁵² 협상 전략은 주로 제3장의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다른 협상 전략들은 서진교 등(2005a, 2005b; 2004), 이재욱 등(2005), 조규대 등(2005)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2.2. 국내보조 분야

품목별 AMS 상한 설정은 장래에 농정 신축성을 제한하므로 경계할 대상이다. 지금과 같은 시나리오라면 OTDS 자체 감축률은 우리나라에 구속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OTDS 감축률이 더 커지면, 이중으로 국내보조를 줄여야 하므로 감축률이 높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뮬레이션과 연계한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도국의 경우 최소 허용보조의 불확실성이 OTDS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필요한 수준의 OTDS를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최소 허용보조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력해야 한다.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 완화나 면제 가능성도 타진함으로써 품목별 AMS 상한 도입이라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 가정 아래에서는 OTDS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블루박스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다. 더욱이 앞으로 점진적인 농정개혁 과정에서 블루박스를 활용하려면, 보조 규모뿐만 아니라 그 요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품목 집중 제한, 가격차 보전비율 등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⁵³

3.1. 민감품목의 선정

선행 연구들은 민감품목의 선정 기준으로 농업 부가가치, 자원의 유희화(재배면적과 재배 농가 수), 고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영양 섭취량, 발전 가능성과 구조조정 방향, 관세장벽의 유효, 관세조화, 관세 감축과 TRQ 증량 관계 등을 제시한다(서진교 등(2005a, 2005b); 성진근(2006); 이상준 등(2006); 임송수 등(2003a); 최세균(2000); 한두봉(2006)).⁵⁴ 그러나 민감품목 선정 여부에 따른 수입 증감에 대한 선행 연구의 분석은 국내외 가격 차이와 양허관세 비교,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자 잉여변화, 관세와 수입 물량 상당치 비교 등에 의존한다. 협상에서 제시된 제안별(조건별)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려고 민감품목으로 선정될 때의 TRQ와 일반 품목으로서 수입량을 산출해 비교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품목들은 현재 TRQ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하였다. TRQ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TRQ가 새롭게 설정된다고 가정한다. 사과, 배, 감귤 등 신선과실은 식물 검역조치로 현재 수입되지 않으나, 이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⁵³ 모델리티 없이 C/S 작성방향을 논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상 동향과 분석 결과를 기초로 선행 연구가 다루지 않은 부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⁵⁴ 선행 연구가 제시한 민감품목 또는 특별품목은 제3장의 시나리오 분석에 이미 반영됐으므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표 4-1. 민감품목의 TRQ와 일반 품목의 수입량 비교

단위: 톤

품목	구 분	미국	EU·G10	G20
고추	민감품목 TRQ 증량(A)	14,402	406	5,819
	일반 품목 수입량 증가(B)	11,907	8,820	8,820
	차이(A-B)	2,495	-8,414	-3,001
마늘	민감품목 TRQ 증량(A)	38,521	978	14,675
	일반 품목 수입량 증가(B)	61,639	59,927	59,927
	차이(A-B)	-23,118	-58,948	-45,252
양파	민감품목 TRQ 증량(A)	84,377	2,736	32,143
	일반 품목 수입량 증가(B)	109,605	73,070	73,070
	차이(A-B)	-25,229	-70,335	-40,927
쇠고기	민감품목 TRQ 증량(A)	25,679	17,030	15,722
	일반 품목 수입량 증가(B)	15,543	10,913	9,921
	차이(A-B)	10,137	6,117	5,801
돼지고기	민감품목 TRQ 증량(A)	41,387	8,957	31,236
	일반 품목 수입량 증가(B)	16,313	7,983	8,677
	차이(A-B)	25,075	974	22,559
닭고기	민감품목 TRQ 증량(A)	16,960	4,959	12,800
	일반 품목 수입량 증가(B)	11,072	6,366	6,920
	차이(A-B)	5,888	-1,407	5,880
사과	민감품목 TRQ 증량(A)	38,190	1,896	18,331
	일반 품목 수입량 증가(B)	17,755	11,055	10,050
	차이(A-B)	20,435	-9,158	8,281
배	민감품목 TRQ 증량(A)	27,093	1,345	13,004
	일반 품목 수입량 증가(B)	13,983	8,706	7,915
	차이(A-B)	13,110	-7,361	5,090
감귤	민감품목 TRQ 증량(A)	50,932	1,590	19,403
	일반 품목 수입량 증가(B)	67,770	45,180	45,180
	차이(A-B)	-16,838	-43,590	-25,778
포도	민감품목 TRQ 증량(A)	39,436	1,958	18,929
	일반 품목 수입량 증가(B)	11,562	7,199	6,545
	차이(A-B)	27,873	-5,241	12,384
땅콩	민감품목 TRQ 증량(A)	3,249	1,454	1,494
	일반 품목 수입량 증가(B)	1,118	745	745
	차이(A-B)	2,131	709	749

주: 일반 품목의 수입량 증가는 김윤식(2006)의 산출방법을 적용함.

EU·G10 공동제안에 따르면, 쇠고기와 땅콩을 빼 품목들의 수입량은 민감품목의 TRQ 아래 더 적게 나온다. 민감품목으로 선정하면 수입량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규모 측면에서 양파, 마늘, 감귤의 보호 효과가 크다.

미국 제안 아래 민감품목의 선정 효과는 마늘, 양파, 닭고기, 감귤로 국한된다. 수입 제한효과의 규모도 다른 제안보다 적다. G20 제안에서는 고추, 마늘, 양파, 감귤에서 민감품목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민감품목의 선정 효과가 상대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고추,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배, 포도 등은 제안에 따라 수입효과가 다르다.

수입량 최소화가 목표라면, TRQ 공식에 사용되는 변수 등 수입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를 일반 품목의 수입량과 견주어 효과가 확인되면, 이행계획서에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특별품목과 특별 수입구제조치(SSM)

특별품목과 SSM에 관한 정의나 대우에 관한 모델리티 없이 C/S 작성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특별품목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G33이 예시한 기준으로 개도국 스스로 특별품목을 선정한다면, 우리나라에 관련 품목이 많다.⁵⁵

둘째, 특별품목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다. G33 제안대로 특별품목을 전체 세번의 20%까지 선정할 수 있더라도, 특별품목의 기준 검정(test)이나 C/S 양자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용권한이 제약될 수

⁵⁵ 이재욱 등(2005)은 특별품목으로서 쌀, 고추, 우유/낙농, 감귤, 쇠고기 등 전체 세번의 3.3%(48개)를 제안하였다.

있기 때문이다.⁵⁶ 이에 따라 ① 특별품목으로 보호가 필요한 품목의 선정과 이에 관한 공감대 형성, ② 관세라인별(예: HS 10단위) 순위 설정, ③ 특별품목과 민감품목 사이의 우선권 설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SSM은 특별품목과 민감품목 위주로 선정한다. 이로써 수입 급증 또는 가격 급락에 따른 국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SM 발동 요건은 가격과 수입량에 관한 과거 자료의 이동평균 등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자료 확보도 필요하다.

4. 국내 농정 대응 방향

WTO 국내보조 규정은 우리나라 농정조치의 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DDA 농업협정이 마련되면, 필요한 경우 농정조치 전환이나 새로운 개혁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2005년 7월부터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된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관심대상이다. 쌀이 주곡일 뿐만 아니라 쌀 정책은 AMS와 직접 지불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4.1. 공공비축제

공공비축제는 식량안보 조치이다. 사전에 정해진 목표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쌀을 구매하고, 시장가격으로 방출하므로 허용보조(green box)에 속한다. 농업협정 부속서 2에 따르면, 시장가격(market price)보다 높게 설정된 정책가격(administration price)으로 구매할 경우 정책가격과 시장가격의

⁵⁶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나 개도국 세분화에 근거한 의무 차별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는 AMS 산출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공공비축제 규정은 DDA에서도 변화 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지금의 공공비축제는 그 요건 변화 없이 허용보조로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4.2.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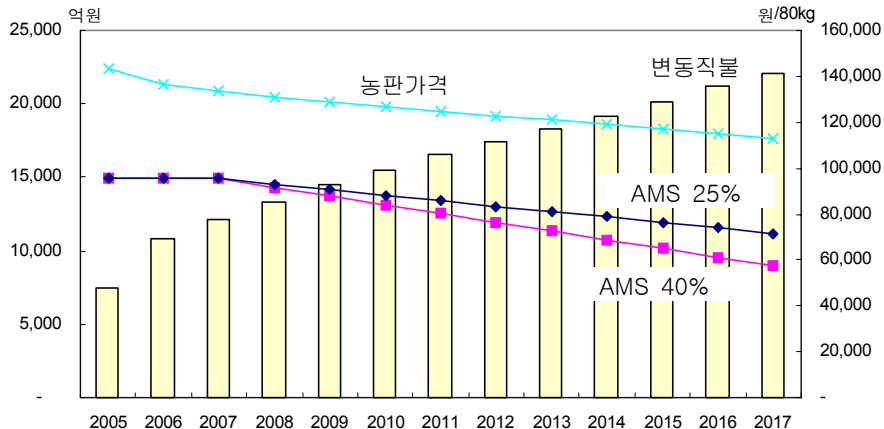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이제부터 ‘쌀 직불’이라고 부름)는 사전 설정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격차를 변동 직불과 고정 직불로 보전하는 조치이며 보전율은 가격 차이의 85%이다. 대상은 1998~2000년에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대상 면적에 상한은 없다. 수혜자는 실제 경작자이다.⁵⁷ 목표가격은 3년 단위로 설정되며, 국회 동의 아래 변경된다. 목표가격은 2005~07년 산이 80kg에 17만 83원이다. 2005년산에 적용되는 고정 직불의 단가는 진흥지역이 ha당 64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51만 2,000원으로 평균 60만원이다. 고정 직불의 단가는 2006년에 ha당 평균 70만원으로 올랐다.

2005년에 지출된 직불 규모는 고정 직불 6,038억원, 변동 직불 9,015억원 등 모두 1조 5,053억원이다. 쌀 80kg당 기준으로 고정 직불 9,836원, 변동 직불 15,710원 등 모두 25,546원이 지급된다.

고정 직불은 허용보조에 해당된다. 생산이나 가격과 상관없이 고정된 기준 면적을 기준으로 지불하고 논에 쌀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해도 지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ha당 지급액이 논 농업 직불로서 2001~03년에 평균 40만 원과 2004년에 50만 원, 쌀 직불로서 2005년에 60만 원과 2006년 70만 원 등으로 늘어왔다. 이에 따라 고정 직불은 허용보조가 아니라 AMS란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보상을 조정을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반응으로 본다면, 쌀 직불은 가격과 연동된 조치로 간주될 수 있는 까닭이다.

⁵⁷ 쌀 직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산출 사례는 농림부(2005) 참조

그림 4-1. 쌀 변동 직불의 규모와 AMS 상한 비교



변동 직불은 시장가격의 수준에 따라 지급규모가 변하기 때문에 AMS 조치에 해당된다. 2005년에 지급된 변동 직불은 양허수준 1조 4,900억원 대비 61% 수준이다.

쌀 직불이 DDA 농업협정에 부합할지를 가늠하려고 분석한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KREI 베이스라인에 따라 2005~2017년에 쌀의 농가 판매 가격이 80kg당 143,195~113,150원인 것으로 가정한다.⁵⁸ DDA 농업협정은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행하며, 목표가격과 대상 면적은 2005년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AMS 감축률 25%와 40% 아래 AMS 상한이 소진되는 쌀 가격은 2007년 기준으로 80kg당 각각 12만 9,431원과 13만 349원이다. 2017년 기준으로는 각각 13만 5,547원과 14만 134원이다<표 4-2>. 쌀 가격이 이처럼 떨어지면 AMS로서 변동 직불을 사용할 수 없다.

변동 직불의 소요 규모는 2009년부터 AMS 상한을 초과한다. 개도국 지위 아래 AMS 양허수준이 1조 4,900억원에서 각각 25%와 40% 감축된다고 가정하면 2009년에 변동 직불은 AMS 한도를 각각 295억원과 742억원

⁵⁸ 가격은 2000년대 들어 1인당 소비량이 연간 2% 감소하는 반면에 수입량은 늘면서 공급과잉 기조가 이어짐을 반영한 결과이다.

초과한다.

쌀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AMS로서 변동 직불을 계속 활용하려면 2009년부터 ① 목표가격 축소, ② 고정 직불 비율 확대 등의 조정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⁵⁹ AMS 상한에 맞는 목표가격은 2017년 기준으로 가마당 14만 3,099원이다.

그러나 ① 목표가격, 기준 단수, 기준 면적 등 변동 직불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허용보조인 고정 직불과 연계되므로 자주 변경할 수 없고, ② 목표 가격뿐만 아니라 목표 가격과 시장 가격 사이의 격차에 대한 보상률 85%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AMS 한도 안에서 변동 직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인다.

변동 직불을 미국의 가격보전직불(CCP)처럼 새로운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① 직불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요건을 수정해야 하고, ② 충분한 규모의 블루박스 확보가 필요하다. 가격과 관련되지만 생산과 비연계된 새로운 블루박스 자격을 갖추려면 변동 직불은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할 것이다.⁶⁰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처럼 개도국 가정 아래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표 4-2. AMS 상한 소진에 이르는 변동 직불의 변수 값

결정 변수	초기값	연도	AMS 25% 감축	AMS 40% 감축
'05 농판가격	143,195원/80kg	2009	129,431	130,349
		2017	135,547	140,134
'05 목표가격	170,083원/80kg	2009	169,478	168,561
		2017	147,686	143,099

⁵⁹ 기준 단수나 기준 면적 조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정책 현실성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⁶⁰ 지금의 변동 직불은 생산을 전제로 지급된다. 휴경지는 변동 직불 대상이 아니다.

블루박스 규모는 8,6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AMS 40% 감축된 수준보다 오히려 적은 규모이므로 활용할 여지가 크지 않다.

끝으로, 같은 품목에 대해 복수의 보조수단으로 지원하는 것(예: AMS와 블루박스로 쌀 지원)에 대한 규율 강화가 예상된다. 그러면 보조 분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래 농정개혁의 주요 과제는 농정 목표에 따라 허용보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일일 것이다.

1. 모델리티 협상안의 평가와 분석

2001년 DDA 협상이 출범한 이래 모델리티 협상은 진전과 교착 상태를 거듭해 왔다.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고, 최빈 개도국(LDC)에 무관세·무쿼터 수입을 제공하도록 합의한 것은 성과이다. 그러나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분야에서 회원국 사이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06년 7월에 DDA 협상 중단이 선언된 가장 큰 원인도 회원국 사이에 양허의 균형을 찾지 못한 탓이다. 미국의 국내보조 감축, EU의 관세율 감축, 개도국의 시장접근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

시장접근 분야에서 주된 쟁점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한 규율이다. 먼저, 민감품목의 후보군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량(TRQ)을 산출한 결과 EU·G10 공식이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와 수입량 관계를 명시한 무역이론에 맞춰, 소비량보다 수입량을 TRQ 공식에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만의 권한인 특별품목은 우리나라의 협상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특별품목은 특별 수입구제조치(SSM)와 더불어 급격한 시장개방 파급 영향을 완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내보조 분야의 쟁점은 무역 왜곡보조의 감축률과 새로운 블루박스에 대한 규율 등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큰 폭의 AMS 감축과 품목별 AMS 상한 설정 농정의 신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다양한 협상안(미국, EU, G20 제안들)을 평가하고 영향을 계측하였다. 먼저, 시장접근 분야의 65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미국 제안보다 G20 제안이나 EU 제안이 우리나라에 유리하다.
- 2) 민감품목을 활용하면 고관세 품목을 보호하는데 유용하지만, 관세 상한이나 특별품목 아래에서 민감품목의 효과는 급감한다.
- 3) 관세 상한 150%의 적용은 큰 폭의 관세 감축 결과를 가져오지만, 관세 상한 아래 특별품목의 한계효과는 상대적으로 증가해 감축규모를 완화한다.
- 4) 선진국 가정 아래 관세 감축률은 최대 84%가 될 수 있다.

국내보조 분야 시나리오 분석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무역 왜곡보조 총액(OTDS)의 감축 계획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이에 따라 AMS, 최소 허용보조, 블루박스 등 개별 보조의 감축이 중요하다.
- 2) 선진국 기준에 따른 감축 결과는 개도국 기준의 값에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는 국내보조 측면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2. 모델리티 협상 전망과 대응 방향

쟁점이 많아 협상 타결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 협상 결과를 예측하였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얻은 세번별 관세율을 기초로 삼각형의 확률분포를 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최종 관세율은 개도국 가정 아래 35%(관세 감축률 44%), 선진국 가정 아래 17%(관세 감축률 73%)로 나타났다.

국내보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개도국 가정 아래 AMS 1조 25억

원, 최소 허용보조 2조 9,518억 원, 블루박스 8,623억 원, 무역 왜곡보조 총액(OTDS) 4조 8,166억 원이다. 선진국 가정 아래 AMS 7,590억 원, 최소 허용보조 1조 1,180억 원, 블루박스 8,670억 원, OTDS 2조 7,420억 원이다.

시장접근 분야 협상에서 우선순위(개도국 지위 전제)는 충분한 수의 특별품목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또한 관세 상한의 배제가 중요하다. 관세 상한을 피할 수 없다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한 상한 면제, 관세 상한의 상향 조정 등 차선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내보조 분야 협상에서는 OTDS 감축을 경계해야 한다. OTDS가 구속력을 가진다면 개별 보조 감축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의 민감도 분석 결과가 나타내듯이, 개도국 가정 아래에서는 최소 허용보조가 OTDS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최소 허용보조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는데 협상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행계획서(C/S)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은 제안별·TRQ 공식별로 민감품목의 수입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고추를 민감품목으로 선정해 미국 제안을 적용하면, 공식에 따라 양허한 TRQ가 일반 품목 가정 아래 수입량보다 오히려 큰 결과가 나온다. EU와 G20 제안 아래에서는 그 반대이다.

DDA 농업협상은 국내 농정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면, AMS 감축은 쌀 직불제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AMS가 20%와 40% 감축한다는 시나리오 아래 쌀 직불 목표가격(명목가격 기준)은 현재 가마당 17만 83원에서 2017년에 각각 14만 7,686원과 14만 3,099원으로 감소해야 AMS 한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구 과제

앞으로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을 선정하려면 품목 간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품목 안에서 세번별 우선순위도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우선순위 선정에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 2) 더욱 정확한 협상안의 계량 평가를 위해 품목별 수입수요 탄성치, 교차탄성치 등의 정보가 갖춰져야 한다. 끝으로, 농정개혁에 관한 선명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으나, 논의 동향을 감안할 때, 큰 폭의 보조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농정개혁 방향의 설정과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돕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록 1

민감품목 대우에 관한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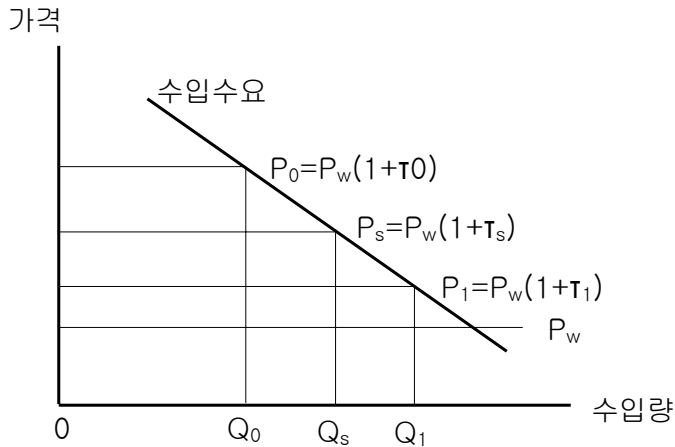
1. 관세 감축률과 TRQ의 관계

민감품목에 대해 일반 관세 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TRQ를 확대하게 된다<부도 1>.

일반 품목의 관세는 구간별 감축률을 적용해 현재 τ_0 에서 τ_1 로 낮아지며, 이에 따라 수입량은 Q_0 에서 Q_1 로 늘어난다. 일반 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이 적용되는 민감품목의 경우 관세는 τ_s 가 되고($\tau_0 < \tau_s < \tau_1$), 이때에 수입량은 Q_s ($Q_0 < Q_s < Q_1$)로 결정된다.

민감 감축률이 일반 감축률보다 작을수록 일반 품목과 민감품목 사이의 관세 격차($\tau_1 - \tau_s$)는 커지며 이에 상응하는 수입량의 차이($Q_1 - Q_s$)도 늘어나게 된다. 이는 일반 품목과 민감품목에 서로 다른 관세 감축률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량 격차($Q_1 - Q_s$)는 가격기준의 감축률 격차와 동등한 물량기준의 TRQ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도 1. 관세 감축과 TRQ 증량의 관계



주: P_w =국제가격; τ_0 =현행 관세율; τ_1 =일반품목 관세율; τ_s =민감품목 관세율;
 Q_0 =현행 수입량; Q_1 = 일반 품목 관세율 아래 수입량; Q_s =민감품목 관세율 아래 수입량

이에 따라 일반 감축률은 민감 감축률에다 TRQ 증량을 합한 수치와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감축률과 민감 감축률이 차이가 클수록 TRQ 증량 폭은 커지게 된다.

$$\text{일반 감축률} \approx \text{민감 감축률} + \Delta \text{TRQ}$$

관세율과 동등한 TRQ를 실제로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TRQ는 비관세장벽으로서 관리와 운용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출 개도국들(G20)과 미국은 TRQ 품목이 아닌 민감품목에 대해 TRQ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비관세 장벽을 확대함으로써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EU, G10 등 수입국들은 TRQ 신설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감축에 대한 TRQ 동등치는 산출에 필요한 기술적인 한계(뒤에서 논할 탄성치 도출 등)와 더불어 TRQ에 의한 수입효과나 관리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실용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나 일반 무역이론에 근거한 개념으로 협상을 진척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민감품목의 TRQ 결정요인

하나의 상품만 존재하는 부분균형 모형에서 수입수요 탄성치(import demand elasticities)는 국내가격 변화에 따른 수입량의 변화로 나타낸다 <식 1>.

$$\eta_Q = - \left(\frac{\Delta Q}{Q_0} \right) / \left(\frac{\Delta P}{P_0} \right) \dots\dots\dots <1>$$

η_Q : 수입수요 탄성치; Q_0 : 초기 수입량; P_0 : 초기 국내가격; $\Delta Q/Q_0$: 수입량 변화율; $\Delta P/P_0$: 가격 변화율

국내가격을 세계가격과 관세율로 표현하여 정리하면 <식 2>와 같다.

$$\frac{\Delta P}{P_0} = \frac{\Delta \tau}{1 + \tau_0} \dots\dots\dots <2>$$

τ_0 : 초기 관세율; $\Delta P = P_1 - P_0$, $P_0 < P_1$; $\Delta \tau = \tau_1 - \tau_0$, $\tau_0 < \tau_1$

<식 2>를 <식 1>에 대입해 수입량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식 3>과 같다.

$$\Delta Q = - \eta_Q \cdot Q_0 \cdot \left(\frac{\Delta \tau}{1 + \tau_0} \right) \dots\dots\dots <3>$$

<식 3>에서 ΔQ 를 민감 감축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TRQ로 정의하면 <식 4>와 같다. 수입수요 탄성치(η_Q)가 클수록, 민감품목과 일반 품목 사이의 관세율 격차($\tau_s - \tau_1$)가 클수록 TRQ_s는 늘어나게 된다.

$$TRQ_s = \eta_Q \cdot Q_0 \cdot \left(\frac{\tau_s - \tau_1}{1 + \tau_0} \right) \dots\dots\dots <4>$$

TRQ_s: 민감품목의 TRQ; $\tau_s - \tau_1$: 민감품목과 일반 품목 사이의 관세율 격차

TRQ_s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수요 탄성치(η_Q), 관세율 격차($\tau_s - \tau_1$), 초기 관세율(τ_0)이 필요한데, 수입수요 탄성치는 계측해야 한다. 무역재의 경우 수입량은 국내 수요와 국내 공급의 차이로 결정되며, 수요와 공급은 각각 국내 가격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식 5>.

$$Q = D(P) - S(P) \dots\dots\dots <5>$$

<식 5>를 가격에 대한 미분의 형태로 전환하고 양변에 P/Q를 곱하면 <식 6>을 얻게 되며, 식의 좌변은 수입수요 탄성치가 된다.

$$\frac{\Delta Q}{\Delta P} \cdot \frac{P}{Q} = \frac{\Delta D}{\Delta P} \cdot \frac{P}{Q} - \frac{\Delta S}{\Delta P} \cdot \frac{P}{Q} \dots\dots\dots <6>$$

<식 6>의 우변에 각각 D/D와 S/S를 곱해 탄성치로 표시하면 <식 7>과 같다. 수요 탄성치와 공급 탄성치가 클수록 수입수요 탄성치도 높아진다. 국내 수요량과 공급량에서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율 곧 수입 침투율이 낮을수록 수입 탄성치는 커진다.

$$\eta_Q = \frac{\eta_d}{Q/D} - \frac{\epsilon_s}{Q/S} \dots\dots\dots <7>$$

η_Q : 수입수요 탄성치; η_d : 수요 탄성치; ϵ_s : 공급 탄성치; Q: 수입량; D: 국내 소비량;
S: 국내 생산량

$\eta_Q < 0$, $\eta_d < 0$, $\epsilon_s > 0$

<식 3>과 <식 7>에서 주어진 관세 감축률 아래 국내 자급률의 수준에 따라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주어진 관세 감축률 아래 국내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의 경우 <식 7>에 따라 수입수요 탄성치가 높게 산출될 것이며, 이는 <식 3>에서 수입량 변화(ΔQ)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민감품목의 TRQ 산출방법을 적용하는데 가장 민감한 변수는 수입수요 탄성치(η_Q)이다. 수입수요 탄성치는 수식을 통해 도출해야 하며, 그 크기에 따라 TRQ 수준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품목별 수입수요 탄성치는 연구에 따라 다른 값으로 계측되는 것이 보통이며, 탄성치가 전혀 제시된 적이 없는 품목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수준의 탄성치 가운데 어떤 값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므로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한 평균이나 그 범위를 정해 활용하기도 하였다.

3. TRQ 증량 기준

민감품목에 대한 TRQ 증량 기준으로 국내 소비량, TRQ 양허수준(UR 기준), 실제 수입량 등이 제안된 상태이나, 실제 수입량이 기준으로 타당하다. 일반 무역이론에 따라 도출한 <식 3>과 <식 4>에서 보듯이, 관세 감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는 총 수입량이다.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 국내 소비량 사이에 직접 연계가 없으므로 소비량을 기준으로 TRQ를 증량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한편 TRQ 양허수준은 UR 당시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의 경우 MMA로, 소비량 대비 일정 비율이 쿼터로 배정된 반면에 수입이 있는 경우 현행접근 방식(Current Market Access; CMA)이 쿼터 기준이 된다. 특정 품목이 최소접근 쿼터와 현행접근 쿼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TRQ 양허수준과 실제 수입량은 차이가 나게 되며, 이에 따라 민감품목의 쿼터는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될 것이다.

관세율의 변화는 총수입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총수입량은 쿼터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쿼터를 기준으로 민감품목의 TRQ 증량을 결정하는 것은 비대칭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부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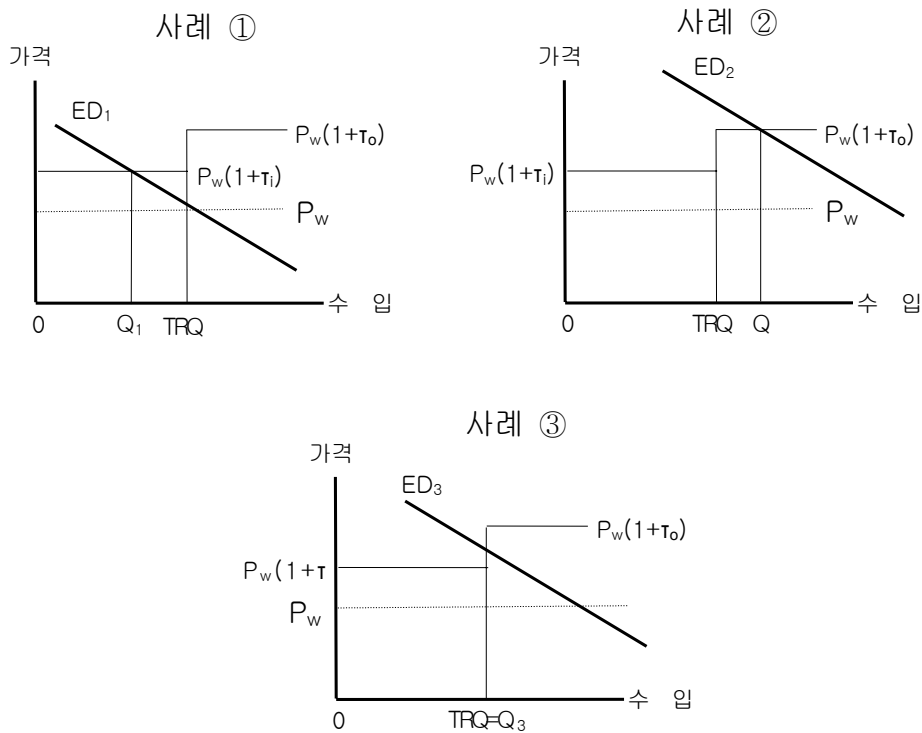
사례 ①은 수입수요가 낮아 TRQ보다 수입량(Q_1)이 적은 경우로 국내가 격은 세계가격에다 쿼터 내 관세율(in-quota rate)을 더한 수준에서 형성된다. 쿼터만을 증량한다면 수입량에는 변화가 없게 될 것이다.

사례 ②는 수입수요가 높아 쿼터 밖 관세율(out-of-quota rate)이 적용된 가격으로도 수입이 이루어져 Q_2 가 TRQ보다 큰 경우이다. 쿼터가 현재 수입량 Q_2 이상으로 증량돼야 수입량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사례 ③은 수입량과 쿼터가 일치함($Q=TRQ$)으로써 쿼터 충족률(fill rate)이 100%인 경우이며 쿼터 증량은 수입량 증대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TRQ 양허수준이나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민감품목의 TRQ를 증량하는 것은 공평함보다는 협상의 편리함이나 TRQ 증량 폭의 증감에 초점을 둔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부도 2. 수입량과 TRQ의 관계



주: ED: 수입수요; P_w : 세계가격; τ_i : 쿼터 내 관세율; τ_o : 쿼터 밖 관세율; Q:수입량

부록 2

DDA 농업협상 관련 용어 정의

가격보전 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 미국의 2002년 농업법이 도입한 조치임. 목표가격과 현재 시장가격의 격차를 고정된 직접지불과 CCP로 보전하는데, 기준 면적과 기준단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됨. CCP는 시장가격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므로 감축 대상보조에 해당됨. 미국은 CCP를 새로운 블루박스로 분류하려고 함.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 보통 개도국들에 GATT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시켜 주는 것과 같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조치를 뜻함. WTO 농업협정 제15조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인식을 상기시키면서 개발도상국은 감축 약속의 이행 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최빈개도국에는 감축약속 이행을 면제하고 있음.

관세 할당(Tariff Rate Quota: TRQ) 특정품목의 수입에 이중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임. 정해진 수입량에는 저율 관세(In-Quota-Tariff Rate, IQTR)를 부과하고, 그 초과 수량에는 고율 관세(Out-of Quota-Tariff Rate, OQTR)가 적용됨. 수입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됨.

기본 골격(Framework) 관세와 보조 감축 등에 대한 모델리티의 전단계로 WTO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담고 있음. 모델리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긴급 수입구제조치(Special Safeguard: SSG) 농산물 관세화에 따른 보완 장치의 일환으로써 관세 상당치의 감축 이행 과정에서 세계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수입량이 급증할 때에 관세 인상을 허용한 조치임. UR 때 관세화한 농산물에 한해 적용되는 피해 구제제도임.

모델리티(Modality) 관세와 보조 감축 등에 관한 의무 사항을 명시하며, 자세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규정임. 모델리티에 근거해 회원국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CS)를 작성하여 WTO에 제출하고 회원국들에 의해 검증을 받게 됨.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일반 품목에 비해 관세 감축을 완화할 수 있는 품목으로, 큰 폭의 관세 감축으로 국내 경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지칭함. 민감품목은 관세 감축률이 낮지만, TRQ를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음.

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농업협정이 명시한 감축 대상 보조로, 정책에 의해 집행된 보조를 계량한 값임(화폐단위로 표기). 생산을 촉진하거나, 농산물이나 투입재 가격을 지원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보조임.

블루박스(Blue Box) 생산제한 계획(휴경) 아래 지원되는 직접 지불임. 무역 왜곡 효과가 작아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보조로 상한은 없음. 기준 면적이나 사육두수를 근거로 지불하며, 우리나라는 블루박스의 사용실적이 없음.

비연계 소득지원(Decoupled Income Support) 농업협정 부속서 2에 규정된 허용보조(Green Box)의 하나로서 생산과 관계없이 소득을 보조하는 정책조치임.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UR 농업협상에서 다루었던 시장접근, 국내보조와 함께 3대 의제 중의 하나로서,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기업, 식량 원조 등을 포함함.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각종의 지원조치에 대한 규정을 다룸.

최소 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 UR 농업협정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임. 관세화 품목의 기준 연도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이면 저율관세로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임. MMA는 이행 기간에 3%에서 5%까지 증량됨.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 “법률은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 관여치 않는다”는 원칙으로, UR 협정 관련 덤핑과, 농업 보조의 감축의무 면제 등에 적용됨. 농업과 관련 품목특정과 품목 불특정으로 나뉘며, 전자는 해당 농산물 생산액의 5% 이하(개도국 10%), 후자는 농업생산액의 5% 이하(개도국 10%)의 경우 감축 의무가 면제됨.

케언스 그룹(Cairns Group)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라과이, 필리핀, 남아공화국, 태국, 우루과이 등 농산물 수출국을 의미함.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 개도국들의 식량안보, 농촌개발, 생계보전 등에 중요한 품목을 가리킴.

허용보조(Green Box) WTO 농업협정상의 농업보조금 분류방식으로 생산 및 무역 왜곡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어서 농업보조 중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을 의미함.

특별 수입구제조치(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SSM은 개도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수입으로 국내 농산물

의 가격이 떨어지면 한시적으로 관세를 올려 수입을 억제하게 할 수 있도록 DD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임. 기본 틀은 UR의 SSG와 비슷함. 수입 물량이 과거와 비교해 일정 수준 이상 늘면 관세를 더 높일 수 있는 조치임. 증가 폭이 크면 클수록 관세 증가 폭도 더 커짐. 그리고 수입이 늘어 국내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관세를 높일 수 있음. 이 제도는 개도국들이 빈곤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려는 것으로, G33이 주장하고 있음.

ACP 그룹(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EU가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이들 국가와의 협조 및 원조를 목적으로 체결한 로메협약의 상대국들로 구성된 66개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들이며 이들 대부분이 최빈국에 속함.

현행 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 CMA) WTO 농산물 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 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 연도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UR 이행 기간 기준 연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임.

G10(Group of 10) 한국, 중국, 대만,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을 의미함.

G20(Group of 20)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중국, 쿠바, 에콰도르,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라과이, 필리핀, 남아공화국, 태국,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농산물 수출 개도국을 의미함. 미국과 EU 양대 체제에 대응하는 제3그룹으로 협상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함.

G33(Group of 33) 안티과 바브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베냉, 보츠와나, 중국, 콩고, 코트디부아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

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대한민국,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세네갈, 스리랑카, 수리남, 탄자니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 잠비아, 짐바브웨 등임. 개도국 특별품목(SP)과 특별 수입구제조치(SSM)를 주장하는 모임임.

ABSTRACT

An Evaluation of the Doha Agricultural Negoti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examines trade and policy concerns raised during agricultural negotiations unde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and evaluates their potential impacts on domestic agriculture and farm policies. By analyzing key negotiation proposals tabled by major memb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G20 developing countries, this research investigates modality issues on market access, domestic support and export competition.

The results of market access scenario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U and the G20 proposals would have Korea cut its tariffs less than the case of the US proposal. Second, the designation of sensitive products would attenuate a sharp cut in tariffs. But, the advantages of tariff cuts by designating sensitive products would be vanished if tariff capping is placed on. Third, special products could be a practical way to ward off tariff capping on most sensitive and high tariff products. Regardless of their scope, special products is likely to bring about far significant benefits than sensitive products.

As for domestic support, Korea may not be bound by the Overall Trade Distorting Subsidies (OTDS). But, the reduction obligation of the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de minimis* and Blue Box would restrain policy flexibilities in the future.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are envisaged to ensure gradual policy reform.

Monte Carlo simulations are utilized to forecast possible outcomes of modalities. Korea's average tariff rate (currently 63%) is forecast at 35% under a developing country status. The total AMS is expected to fall from 1.5 to 1.0 trillion won. The *de minimis* support is likely to be 2.9 trillion

won and blue box payments would be capped by 862 billion won. With developed country's commitments, the average tariff rate would be 17%. And the domestic support is forecasted at 759 billion won for the total AMS, 1.1 trillion won for *de minimis*, and 867 billion won for Blue Box.

To fully take advantage of developing country's status,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the securement of enough number of tariff lines as special products. In addition, tariff capping must be abrogated. If inevitable, tariff capping should not apply neither to sensitive products nor to special products.

As shown in the sensitivity analysis, the OTDS support would be greatly influenced by a permitted level of *de minimis* support. Hence, any cuts in *de minimis* support must be minimiz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OTDS support and policy flexibilities.

Researchers: Song Soo Lim, Sang Hyun Kim, So Yeong Lim

E-mail address: songsoo@krei.re.kr

표 차례

제2장

표 2- 1.	민감품목에 관한 주요국 제안의 비교	7
표 2- 2.	주요 수입국의 고관세 현황	9
표 2- 3.	SSM의 발동 기준과 추가 관세: G33 제안	10
표 2- 4.	주요 수출국의 수출 품목과 주요 수입국의 관세율	11
표 2- 5.	주요국 제안별 관세 감축 결과 비교	12
표 2- 6.	수입수요 탄성치별 TRQ 증량 수준	14
표 2- 7.	G20 감축률과 주요국 제안별 TRQ 증량 수준	15
표 2- 8.	주요국 감축률과 제안별 TRQ 증량 수준	17
표 2- 9.	주요 수입국의 고관세 품목 현황	19
표 2-10.	AMS 양허수준에 따른 구간 배분	22
표 2-11.	주요국의 그린박스 제안 주요 내용	26
표 2-12.	주요국의 국내보조 감축 제안 내용	28
표 2-13.	미국의 품목별 CCP 지급 실적(2002~2004년 평균)	30
표 2-14.	주요국의 품목별 AMS 사용 실적	31
표 2-15.	주요국의 최소 허용보조 지급 현황	32
표 2-16.	우리나라의 최소 허용보조 사용 실적	33
표 2-17.	회원국들의 블루박스 활용 현황	34
표 2-18.	우리나라의 허용보조 지급 동향	35
표 2-19.	미국의 무역 왜곡 보조 총액의 감축 시나리오	37
표 2-20.	우리나라의 무역 왜곡 보조 총액 추계	38
표 2-21.	우리나라 수출보조 지급 현황	40
표 2-22.	주요국의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46

제3장

표 3- 1.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기준 감축	51
표 3- 2.	개도국 시나리오 가정: 민감품목의 세번 수	52
표 3- 3.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53
표 3- 4.	개도국 시나리오 가정: SP 세번 수	55
표 3- 5.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특별품목(SP)	56
표 3- 6.	개도국 시나리오 가정: 민감품목과 SP 세번 수	58
표 3- 7.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과 특별품목	59
표 3- 8.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관세 상한 150%	60
표 3- 9.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 특별품목(SP), 관세 상한 150%	62
표 3-10.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 민감품목 6%, SP 10%, 관세 상한 150%	64
표 3-11.	선진국 시나리오 결과: 기준 감축	65
표 3-12.	선진국 시나리오 가정: 민감품목의 세번 수	66
표 3-13.	선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67
표 3-14.	선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관세 상한 100%	68
표 3-15.	국내보조 분야의 시나리오 설정	73
표 3-16.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74
표 3-17.	선진국 시나리오 결과	75
표 3-18.	보조별 확률분포 가정: 개도국	76
표 3-19.	보조별 확률분포 가정: 선진국	76
표 3-20.	개도국과 선진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82

제4장

표 4- 1.	민감품목의 TRQ와 일반 품목의 수입량 비교	90
표 4- 2.	AMS 상한 소진에 이르는 변동 직불의 변수 값	95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 1. DDA 농업협상의 흐름	4
그림 2- 2. 구간별 관세 감축 제안: 선진국 적용	6
그림 2- 3. 구간별 관세 감축 제안: 개도국 적용	6
그림 2- 4. 관세 감축률과 관세 상한 사이의 등가곡선	18
그림 2- 5. 일반 품목, 민감품목, 특별품목 수의 관계	21
그림 2- 6. 무역 왜곡보조 총액(OTDS) 및 개별 보조의 감축 효과 비교	27
그림 2- 7. 주요국의 AMS 현황	29
그림 2- 8. 주요국의 무역 왜곡보조 총액(OTDS) 현황	36
그림 2- 9. 미국의 OTDS 집행액과 감축제안의 비교	42

제3장

그림 3- 1.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구조	50
그림 3- 2. 개도국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준 감축	51
그림 3- 3.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의 비율 6%	54
그림 3- 4.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SP 비율 10%	57
그림 3- 5.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6%, 특별품목 10%	59
그림 3- 6.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 민감품목 6%, 관세 상한 150%	61
그림 3- 7.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 특별품목 10%, 관세 상한 150%	63
그림 3- 8. 개도국 시나리오 결과 : 민감품목 6%, SP 10%, 관세 상한 150%	64
그림 3- 9. 선진국 시나리오 결과: 기준 감축	65

그림 3-10. 선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67
그림 3-11. 선진국 시나리오 결과: 민감품목 4%, 관세 상한 100% ...	69
그림 3-12. 시뮬레이션 결과: 개도국	71
그림 3-13. 시뮬레이션 결과: 선진국	72
그림 3-14. 무역 왜곡보조에 관한 모의실험 결과: 개도국	78
그림 3-15. OTDS의 민감도 분석: 개도국	79
그림 3-16. 무역 왜곡보조에 관한 모의실험 결과: 선진국	81
그림 3-17. OTDS의 민감도 분석: 선진국	82

제4장

그림 4- 1. 쌀 변동 직불의 규모와 AMS 상한 비교	94
---------------------------------------	----

부록 1

부도 1. 관세 감축과 TRQ 증량의 관계	102
부도 2. 수입량과 TRQ의 관계	106

참 고 문 헌

- 김경덕, 정학균, 송우진, 한우석. 2002. 『과일, 과채, 채소, 축산 수급 및 반응함수 추정』. M0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명환 등. 2000. 『주요 채소, 과일의 수급함수 추정』. M0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명환, 김혜영. 2004. 『논콩 재배사업 및 콩 수매제도의 발전 방안』. C2004-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등. 2001. 『WTO 체제하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방안 연구』. R4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한석호, 홍승지. 2003. “주요 양념채소의 DDA 농업협상 파급효과 분석.” 『농촌경제』 26(4).
- 김윤식. 2006. “부분균형모델에서 대체 효과를 고려한 FTA효과 분석.” 『농업경제연구』 49(3). 한국농업경제학회.
- 농림부. 2006.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대응 방향』. 협상 참고자료.
- _____. 2005. 『2005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 지침서』. <<http://www.maf.go.kr>>.
- 문 조나단. 2005. 『시물레이션을 이용한 미래형 리스크분석』. 이레테크.
- 서진교 등. 2004. 『DDA 농업분야 Modality 협상 결과분석 및 C/S 작성방향에 관한 연구』. C2004-5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진교 등. 2005a. 『2005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 R4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진교, 임소영. 2005b. 『DDA 농업 분야 모델리티 협상 쟁점 분석과 협상 대책: 시장 접근 분야 중심』. C2005-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진근. 2006. 『민감품목 선정을 위한 연구의 결론 유도를 위한 검토』. 농업통상대책 연구협의회 토론회자료.
- 송주호 등. 2005. 『우유 수급 전망과 조절방안에 관한 연구』. R4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등. 2005.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R5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 등. 1999. 『육류 소비구조의 변화와 전망』. R4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상준, 권오상, 임정빈. 2006. 『WTO/DDA 협상에 따른 원예 산업의 민감품목 분석』.

내부자료.

- 이용선, 심송보. 2006. 『농업관측 품목모형 KREI-COMO 2005 개발, 운용』. W0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재옥 등. 2005. 『개도국 특별품목 및 특별수입구제조치 관련 협상 대책』. C2005-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재옥. 2005. 『WTO 농업협상의 전개 과정과 평가』. 연구총서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중웅. 1999. 『포도 수급 전망과 정책 과제』. R4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등. 2003a.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 방향』. C2003-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김상현. 2003b. 『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 대응 방향』. P6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등. 2004. 『농업협상 기본 골격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KREI 농정연구속보. 2004-7(제10권).
- 임송수. 2006a. 『DDA 협상중단의 의미와 전망』. KREI 농정연구속보. 제34권.
- 임송수. 2006b. 『DDA 세부 원칙 초안의 메시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제314호. 2006년 6월.
- 정경수, 이병오, 이종인. 2006. 『한미 FTA 협정이 한국 쇠고기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한국축산경영학회.
- 정민국 등. 2005. 『Quarterly Livestock Model』. M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영일. 2006. 『관세화유예기간 연장 이후의 쌀정책 과제』. 농정연구센터 152회 월례세미나 자료. <http://krdf.or.kr/htm/data3_files/no152.pdf>.
- 조규대 등. 2005. 『DDA 농업협상 국내보조 분야 협상 전략』. C2005-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덕래, 조재환. 1992. 『주요 과실류의 수급 분석 및 전망. 재배면적 반응함수』. R26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성열, 김배성, 이병훈. 2004.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4 운용 개발 연구』. W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등. 2000. 『농산물 시장개방이 국내농업에 미친 영향』. C2000-4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양부 등. 1993. 『UR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파급영향 분석』. P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2006.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
- 허덕 등. 2001.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 방안』. R4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두봉. 2006. 『평점 방식을 활용한 민감품목 선정』. 농업통상대책 연구협의회 토론 자료.
- Alexandraki. K. and H. Lankes. 2004. "The Impact of Preference Erosion on Middle-Income Developing Countries." IMF Working Paper No. WP/04/169. <<http://ssrn.com/abstract=878994>>.
- European Communities[EC]. 2006. "The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s of Major WTO Players." Monitoring Agri-Trade Policy No. 01-06.
- Farm Subsidy database. <http://www.ewg.org:16080/farm/progdetail.php?fips=00000&progcode=total_cc>.
- ICTSD. 2005a. "Making Hong Kong a Success: Europe's Contribution."
- _____. 2005b. "G-20 Proposal On Market Access."
- _____. 2005c. "G-10 Proposal On Market Access."
- _____. 2005d. "G-20 Proposal On Sensitive Products: Selection and Treatment."
- _____. 2005e. "G-20. Review and Clarification of Green Box Criteria." G20/DS/Greenbox.
- _____. 2005f. "Canada. Green Box: Clarification and Review of Criteria."
- _____. 2005g. "G-33 Proposal on the modalities for the designation and treatment of any agricultural product as Special Product(SP) by any developing country members." WTO document JOB(05)/304. <<http://www.agtradepolicy.org/index.htm>>.
- _____. 2005h. "ACP Proposal In Market Access In Agriculture."
- _____. 2005i.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PRODUCT-SPECIFIC AMS Note by the Secretariat. Revision." TN/AG/S/15/Rev.1.
- _____. 2006a. "G-10 Proposal On the Treatment of Sensitive Products." WTO document JOB(06)/88.
- _____. 2006b. "United States Communication on Domestic Support. Annex 2. Domestic Support: The Basis for Exemption From the Reduction Commitment.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JOB(06)/80.
- _____. 2006c. "NAMA: Chair Calls for Non-Stop Negotiations to Bring Modalities Within Reach." Bridges 10(4).

- _____. 2006d. "United States Communication On Special Products." WTO document JOB(06)/137.
- _____. 2006e. "United States Communication On Special Agricultural Safeguard(SSG) And The Special Safeguard Mechanism(SSM)." WTO document JOB(06)/120.
- _____. 2006f. "G-33 Proposal On Article [...] Special Safeguard Mechanism For Developing Countries." WTO document JOB(06)/64.
- _____. 2006g. "Thailand Paper on Special Product."
- Inside US Trade. 2006. "Brazil to Ask for WTO Cotton Compliance Panel in September." August 18. 2006.
- _____. 2005. "Outcome of Doha Round. WTO Cases Likely to Shape 2007 Farm Bill." September 9. 2005.
- Kwa. Aileen. 2006. "WTO Members Question Process, Yet Again." Focus on the Global South. Available at <<http://www.focusweb.org/wto-members-question-process-yet-again.html>>.
- Lawrence. R. and T. Rosito. 2006. "A New Compensation Mechanism for Preference Erosion in the Doha Round." Prepared for the Blue Sky Conference organized by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t the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Cambridge MA. September 9th 2006. Available at <http://www.cid.harvard.edu/bluesky/papers/Lawrence_compensation_0609.pdf>.
- Mehta. P., P. Kumar and R. Lodha. 2006. "Suspension of Doha Round Talks." Briefing Paper SAFIT 2/2006. CUTS International.
- OECD. 2006. "South-South Trade: Vital for Development." Policy Brief. August 2006.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taoecd/30/50/37400725.pdf>>.
- Oxfam. 2005. "Truth or Consequences: Why the EU and the USA Must Reform Their Subsidies or Pay the Price. Oxfam Briefing Paper 81.
- Schott. Jeffrey. 2004. "Reviving the Doha Round." Speeches, Testimony, Paper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vailable at <<http://www.iie.com/publications/papers/paper.cfm?ResearchID=207>>.
- Steinberg. R. and T. Josling. 2003. "When the Peace Ends: The Vulnerability of EC and US Agricultural Subsidies to WTO Legal Challenge." *Journal of*

- International Economic Law* 6(2): 369-417.
- TWN[Third World Network]. 2006. "Lamy Outlines Process for 'Mini-Ministerial' This Week." 29 June 2006. <<http://www.twinside.org.sg/title2/twninfo441.htm>>.
- UNCTAD. 2003. "An Analysis of the Agricultural Domestic Support under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The Blue Box." UNCTAD/DITC/COM/2003/6.
- _____. 2006. "Indicators Entering the Formulation of the Economic Vulnerability Index(EVI)." Available at <http://www.unctad.org/sections/lcd_dir/docs/lcd_highlight001evi_en.pdf>.
- USDA. NASS. *Agricultural Statistic 2005*. <<http://www.usda.gov/nass/pubs/agr05/acro05.htm>>.
- _____. ERS. <http://www.ers.usda.gov/briefing/farmincome/data/GP_T7.htm>.
- _____. Farm Income and Cost. <http://www.ers.usda.gov/briefing/farmincome/data/GP_T7.htm>.
- USTR. 2005. "U.S. Proposal- WTO Agriculture Negotiations." <www.ustr.gov>.
- Washington Trade Daily(WTD). 2006a. "A Crucial Mandelson-Schwab Meeting" Monday.
- _____. 2006b. "The New 'G-6' Takes Shape." Oct. 23. 2006.
- _____. 2006c. "Lamy Seeks May Meeting After Ministerial Fails to Advance Doha Round."
- World Trade Online. 2005. "G-20 Draft Elements for discussion on Domestic Support."
- Westhoff. Pat. "Boxed In? Implications of WTO Rules and Rulings for Farm Policy" Presented in the Conference on the 21st Century Farm Polic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ctober 30-31. 2005. Fargo. North Dakota. Available at <<http://www.ag.ndsu.nodak.edu/capts/documents/WESTHOFF-farmpolwto1005.pdf>>.
- Young. Robert. 2005. "Stay the Course. No New Taxes, Thousand Points of Light." Presented in the Conference on the 21st Century Farm Polic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ctober 30-31. 2005. Fargo. North Dakota. Available at <<http://www.ag.ndsu.nodak.edu/capts/documents/ROBERTYOUNG-Staythecourse.pdf>>.

- WTO. 2003. "Negotiations of Agriculture First Draft of Modalities for the Further Commitments.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1/REV.1.
- _____. 2004. "United States-Subsidies on Upland Cotton." WT/DS267/R. Available at <<http://docsonline.wto.org/>>.
- _____. 2005a.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Note by the Secretariat. Addendum.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S/13/Add.1.
- _____. 2005b.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S/21.
- _____. 2005c.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TN/AG/S/13.
- _____. 2005d. "De Minimis Support. Note by the Secretariat." Committee on Agriculture. TN/AG/S/16.
- _____. 2005e. "BLUE BOX SUPPORT. Note by the Secretariat."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S/14.
- _____. 2005f. "United States-Subsidies on Upland Cotton." WT/DS267/AB/R. Available at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267abr_e.doc>.
- _____. 2005g. "Doha Work Programme: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WTO document WT/MIN(05)/DEC.
- _____. 2005h. "Report b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Ambassador Falconer to the TNC." WTO document JOB(05)/306.
- WTO. 2006a. "Chair's Reference Paper: Special Products." <www.wto.org>.
- _____. 2006b. "Chair's Reference Paper: Blue Box.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Domestic Support."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refpapers_apr06_e.htm>.
- _____. 2006c. "Chair's Reference Paper: Green Box.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Domestic Support."
- _____. 2006d. "Agriculture Domestic Support Simulation: European Communitie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16. May. 2006.
- _____. 2006e. "Chair's Reference Paper: Sensitive Products." <www.wto.org>.
- _____. 2006f. "Chair's Reference Paper: Special Safeguard Mechanism."

임송수 songsoo@krei.re.kr

- 고려대 농경제학과, 미국 텍사스주립대 농업경제학 박사
- 『2004년 쌀 재협상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2004)
『OECD 회원국 농업농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유지 논리 개발』(2005)

김상현 ksh3615@krei.re.kr

- 건국대 경제학과, 건국대 경제학 석사
- 『DDA 농업분야 모델리티 협상 쟁점 분석과 협상 대책』(2005)
『DDA 농업협상 국내보조분야 협상전략』(2005)

임소영 lsyjr@krei.re.kr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서울대 경제학 석사
- 『DDA 농업분야 모델리티 협상 쟁점 분석과 협상 대책』(2005)
『DDA 농업협상 국내보조분야 협상전략』(2005)

연구보고 R538

DDA 농업 모델리티 협상안의 평가와 대응 방향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6. 11.

발 행 2006. 11.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크리디자인

전화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

ISBN 978-89-6013-037-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